

---

#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김명아





#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Regulation Reform for the Regulatory Sandbox  
implementation

연구자 : 김명아(연구위원)  
Kim, Myoung-Ah

2017. 10. 31.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산업에 대한 금융감독방식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

- 핀테크 관련 규제개선 요청이나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각국 금융감독당국은 새로운 감독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영국은 원칙중심규제를 기초로 핀테크육성사업(Project Innovate)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며, 금융규제에 대한 안전공간으로서의 “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하여 Sandbox 참가기업에 대하여서는 금융감독작용에 대한 일정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2015년부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핀테크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전규제방식의 금융감독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 등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Regulatory Sandbox와 같이 다양하고 폭넓은 범위의 금융감독 시범사업으로서의 새로운 유형의 감독조치 적용에 어려움이 큼

# KLRI

- ▶ 현재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도입하고 있는 ‘Virtual Test-Bed’ 방식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현행 금융법 체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한된 금융감독조치(비조치 의견서,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가기업 모집방식도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금융감독 시범사업으로 수행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용 방식과 범위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테스트베드에 적용할 수 있는 각 금융감독조치와 금융당국의 권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도입이 시급함

- 특히, 완결성이 높은 체계화된 규정들을 도입함으로써 핀테크분야에 적용되는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서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제상의 문제점을 금융감독당국과 테스트베드 참가기업, 참가소비자, 전문가 등이 함께 인식하고, 관련 규제개선 입법안을 준비하는 절차가 법제화되어야 할 것임

- ▶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외의 운용 사례를 소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각 관계자의 관련 입법 수요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개선방안의 정확한 방향성을 검토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II. 주요 내용

▶ 해외 각 국가들은 금융감독조치가 Regulatory Sandbox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규제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규제유예기간 연장이나 조건변경 등의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고 있는 각 국가에서는 신청기업의 승인 평가기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혁신성/소비자편익/준비성/안전조치 등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별로 금융업에 대한 이익/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도/분쟁해결절차의 수립/배상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영국은 참가기업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코호트방식을 통하여 혁신성/소비자편익/안전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면 평가를 통하여 참가기업을 선정하고, 규제완화 타당성 기준으로 규제장벽/안전조치/법적안정성 등의 평가요소를 채택하여 FCA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규제유예나 규제 면제, 한정인가, 특별인가, 특례적용 등 다양한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호주는 인허가면제 조치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을 행위제한 방식으로 두고 있으며, 테스트 결과보고 내용에는 고객규모나 고객 통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외에도 “규제적(Regulatory)” 관련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소비자 이익’ 외에도 ‘금융업 이익’ 개념을 함께 평가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내 금융시장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경우 비공식적 조정(Informal Steer) 방식의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테스트 종료 후의 상업화 성공계획을 평가기준에 포함하고 있음

# KLRI

- 홍콩의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제도 운용사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서는 현행의 제도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핀테크기술업체의 참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운영상 필요한 각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각 단계별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조직의 개입을 통하여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제도 운영 가능성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는 참가기업과 금융당국, 참가소비자, 전문가들이 신청단계부터 서로 교감하면서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민원과 규제요소를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 개선 및 입법 작업이 우호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임
- ▶ **금융감독 시범사업 방식의 성격을 가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실시한 수요조사에서는 테스트베드 참가기업 선정요건으로 ‘혁신성’을 꼽았으며, 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에 필요한 조치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안내 등의 의견이 높게 나와 향후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와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정량조사의 설문항목은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와 미도입조치에 대한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 참가사업자 선정기준과 안전장치, 참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테스트 종료 후 성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정성조사에서는 이러한 정량조사 결과에 대한 핀테크업계 실무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학계, 전문가 업체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 설문평가에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인지 여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음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의 찬반에 대하여는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핀테크 기업의 대부분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음
-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서비스’, ‘지정대리인 자격부여’ 순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정책 이외에도, 보충적 금융감독 조치로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가 과반수 넘게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특별법 제도를 통해 도입되어야 할 제도로 ‘한정인가’, ‘특례적용’, ‘인허가 면제’, ‘규제면제’ 등을 과반수 넘게 찬성하였음
-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 요건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어떠한 직간접적인 수혜를 제공하는지’와 ‘기존의 상용화된 서비스에 비해 얼마나 혁신성을 지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함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 판단 요건으로는, 기술력, 운영능력, 개발인력 등 테스트베드를 시행하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들이 응답율이 높음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테스트베드 선정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테스트베드 과정에서 소비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분쟁 조정·보상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응답

# KLRI

- 테스트베드 운영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하는 항목으로는 위험관리계획, 사업자 선정 방식의 공정성, 자산 손실에 대한 보상 장치 등 테스트베드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방안이 높은 응답율을 차지
-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 애로점으로는 ‘기존 금융업자들이 테스트베드 업체에 대한 협업 없이는 테스트 자체가 어려움’, ‘테스트베드 종료 후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업역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 테스트베드 이외의 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때,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기존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는 의견보다 높은 응답율을 차지
- 테스트베드 종료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중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모니터링’이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항목으로 선택
-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참가 종료 후 참여기업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점으로는 ‘시범사업 종료 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시 발생하는 손실’을 응답
-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가 반대한다는 견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기업의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규제 유예기간 연장’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찬성
- 핀테크 업체들이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기술력 등으로 후발업체의 차별화 및 방어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테스트베드로 인해 혁신성을 잃어버릴 염려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테스트베드 사업 운영 평가시 평가항목으로 ‘사업운영의 투명성’, ‘사업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정도’, ‘금융시장 발전 등 국민경제 기여 정도’ 등이 많이 응답되었음
- 신금융서비스 활성화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에 적용 받는 규제가 여러 법에 중첩되어 있다’는 의견을 꼽음

▶ 이번 연구의 수요조사에서는 핀테크기술기업 등의 규제테스트베드 참여주체와 금융당국 간 의사소통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향후 금융당국의 진행모니터링 기제와 제도 시행 담당부서의 감독 기능 강화를 통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본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선정/운영/평가/제도개선에 필요한 각각의 독립적·객관적인 심의·의결 기구가 필요할 것임
  - 투명한 제도 운영을 통하여 각 과정별 판단의 독립성을 해당 기구에 부여하고, 관련 솔루션의 테스트베드 사안별로 참가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와 금융감독방식 적용상의 규제상 한계 및 법제 개정 사항을 객관적으로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향후 기존 법률의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의 방식으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① 신기술 발전의 동력 확보나 ② 특별인가, 규제유예(기간 연장 포함), 규제면제, 개별특례적용 등 각각의 특례 규정, 각 운용 절차에 필요한 ③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④ 각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조직의 구성 방안, 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상의 문제 파악 과정과 ⑥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 ⑦ 손실 발생에 대한 소비자보호 조치로서의 배상보험 가입 의무, ⑧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기업과 참가소비자, 전문가 등이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입법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다양한 규정의 채택이 필요할 것임

### Ⅲ.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Regulatory Sandbox 제도 운용사례 소개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운용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향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적용될 다양한 금융감독조치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규제환류 체계의 구축 등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주제어 : 금융감독 시범사업,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금융감독조치, 혁신성, 소비자보호 안전조치, 규제환류체계, 법적 지위 확보

## Abstract

### I. Backgrounds and Purposes

- ▶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various financial services based on PinTech technology around the world, financial supervision methods for the PinTech industry are also changing.
- ▶ The ‘Virtual Test-Bed’ as financial regulation test bed introduced by Korea’s financial authorities(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the restricted financial supervision(No Action Letters, Designated Agent, Consignment test) that can be legally applied within the current financial system. Also, recruitment of participating companies(Cohort) is limited to specific fields.
- ▶ To establish an improvement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ion project, this study focuses on introducing overseas operation cases and drawing implications, investigating the relevant legislative demand of each concerned person and reviewing and suggesting the correct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plan for improving Financial Supervisory Measures and Financial Regulatory Test Bed System in Korea

## II. Major Content

- ▶ To address various regulatory issues arising from the process of applying to the regulatory sandbox, the other countries have a dedicated agency for actively responding to requests for extension of the grace period or change of conditions
- ▶ In the demand survey in order to collect opinions from various circles on the financial regulation test bed system having the nature of the pilot supervision business method, "Innovation" was chosen as the criteria for selecting test bed participation companies. Discussions and legislative efforts will be needed to institutionalize the measures such as obligation to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and disclosure procedures as consumer protection safeguards.
- ▶ In the demand survey of this study, there is a need for a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regulators and fin tech companies. In the future, through the monitoring mechanism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and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function of the department in charge of system implementati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relevant system to continuously establish a pre- and post-management system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as confirmed
  - To ensure the credibility of the financial regulatory test bed operating procedures, as indicated in the text, institutional improvement on each independent and objective deliberative and voting mechanism necessary for selection / operation / evaluation will be required.

- In the event that the legal basis of the financial regulatory test bed system is laid down in the form of revision of existing laws or establishment of special laws in the future, the following provisions should be included:
  - ① Secure the driving force of new technology development, ② Special Exception (Tailored Authorization and Waivers, Licensing exemption etc.), ③ Materialized evaluation criteria, ④ Operational organization that can secure the integrity and objectivity, ⑤ Identify technical issues, ⑥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for Complaints, ⑦ Compensation insurance, ⑧ Opportunity to coordinate opinions for Participating innovation companies

### III. Expected Effects

- In this study, we tried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hrough introduction of overseas regulatory sandbox system operating cas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help to understand the purpose and purpose of financial regulation test bed system.
  - Through the demand survey for the financial regulation test bed system operation, we tries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various financial supervision measures to be applied to future financial regulation test be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present directions on issues to be discus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tory reflux system.
- ▶ **Key Words** : Financial Supervisory Pilot Project, Financial Test-Bed, Financial Supervision Measures, Innovation, Consumer Protection Safeguards, Feedback System of Legislation Process in Financial Regulatory Reform, Ensuring Legal Status



# 목차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	3
Abstract .....	11

## 제1장 서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5
1. 연구의 범위 .....	25
2. 연구의 방법 .....	27

## 제2장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도입 배경 / 39

제1절 기존 금융감독 규정 적용의 한계 .....	41
1. 핀테크산업의 발달과 금융규제 개선의 필요성 .....	41
2.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개선 노력 .....	60
3. 금융당국의 규제·제도 혁신 관련 정책 방향성 .....	63
제2절 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도입 .....	68
1. 금융감독 분야 시범사업의 필요성 .....	68
2.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	69
3.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의 의의와 문제점 .....	83

## 제3장 해외의 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 91

제1절 영 국 .....	93
1. 도입 배경 및 제도의 장점 .....	93
2. 참가 절차 .....	95
3. Regulatory Sandbox 참가 요건 .....	96

4. Regulatory Sandbox 참가기업에 대한 FCA의 금융감독 관련 조치 .....	98
5. 소비자보호 장치 .....	101
6. 업계권장사항 .....	104
7.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조치(option) .....	107
8.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 .....	110
9. 적용사례(Regulatory Sandbox 1차~3차 코호트) .....	110
제2절 호주 .....	116
1. 호주의 Regulatory Sandbox 개관 .....	116
2. 기존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인허가 면제 .....	123
3.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ASIC의 핀테크 조건부 인허가 면제 제도 .....	127
4. 핀테크 인허가 면제 제도의 적용 요건 .....	134
5. 테스트 결과 보고 .....	137
6. 테스트 기간 연장 또는 조건 변경 .....	137
7. 개별면제(Individual relief) .....	139
제3절 싱가포르 .....	141
1.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배경 .....	141
2. 규제 샌드박스 접근법 .....	141
3. 샌드박스의 목표 및 원리 .....	142
4. 샌드박스 평가기준 .....	143
5. 샌드박스 기간의 연장 및 종료 .....	144
6. 신청 및 승인 절차 .....	145
7. 규제 완화의 예 .....	146
8. 샌드박스 적용례 .....	147
제4절 말레이시아 .....	149
1. 금융기술 Regulatory Sandbox의 목표 및 원칙 .....	149
2. 참가 신청지원 대상 회사 및 제도 개시일 .....	150
3. 샌드박스 자격기준 .....	151
4. 잠재적 위험 및 안전장치 .....	152
5. 신청 요건 .....	153

6. 보고서 제출 및 확인 .....	155
7. 승인 만료 (Expiry of approval) 및 연장 .....	156
8. 승인 취소 (Revocation of approval) .....	156
제5절 홍 콩 .....	158
1. 도입 배경 .....	158
2. 핀테크 규제 안전공간 제도 운용의 원칙과 특징 .....	159
제6절 시사점 .....	160
1. 각국 Regulatory Sandbox 운용방식의 특징과 평가 .....	160
2. 우리나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운용에 대한 시사점 .....	162

## 제4장

###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요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 165

제1절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의 정도 .....	170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인지 여부 .....	170
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 찬반 .....	172
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 .....	173
4. 보충적 금융감독조치 활용가능성 .....	179
5. 미도입 제도에 대한 찬반 .....	185
6.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	193
제2절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소 .....	197
1. 규제테스트베드 운영상 중점 대처 사항 .....	197
2.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되는 실무상의 애로사항 .....	199
3. 신금융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제도상 애로사항 .....	201
4.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3
제3절 금융감독 시범사업 적용 대상/범위 .....	211
1. 업체 선정 요건 .....	211
2.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 .....	213
3.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22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224
1. 금융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	224
2.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26
제5절 시범사업 수행상의 고려 사항 .....	230
1. 테스트베드 종료 시 중점적 대처사항 .....	230
2. 테스트베드 종료시 업체의 우려점 .....	232
3.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여부 .....	234
4. 테스트베드 평가 항목 기준 .....	238
5.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50
제6절 금융규제의 적용방식 변화 필요성 .....	259
1. 기존 법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	259
2. 기타 금융규제 개선 관련 견해 .....	261
3.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63
제7절 소 결 .....	269

## 제5장

###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 273

제1절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 .....	275
1.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의의와 법적 지위의 한계 .....	275
2. 지정대리인 제도 .....	279
3. 지정위탁 제도 .....	281
4. 법령해석(유권해석) .....	282
5. 행정지도 .....	284
6. 미도입 행정조치의 법적 문제점 .....	287
7.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방향 .....	291
제2절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	296
1. 조연적 금융감독의 활용 가능성 .....	296
2. 미도입 금융감독 조치의 제도 도입방안 .....	297

# 목차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3. 특별법 제정 입법례 ..... 299
- 4.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참가기업 선정요건 구체화 ..... 303
- 5.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304
- 6. 금융감독 시범사업 관련 제도 개선의 환류 체계 ..... 305

## 제6장 결론 / 311

- 참 고 문 헌 ..... 317

- 부 록 ..... 329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현재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산업 관련 감독체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의 금융법 체계 내에서는 핀테크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감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지적과 함께 그동안 핀테크산업 규제개선이나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기 때문이다.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sup>1)</sup>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년간 핀테크산업 발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논의가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규제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모바일송금, 간편결제, P2P 자금중개 및 대출, 소액금융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기업들은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기법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수 없다. 특히, 금융당국은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제정한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며, 현행 금융법제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감독

---

1) 기획재정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2014.3.27., 23~28면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OLD\\_4090243&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OLD_4090243&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2017.10.31. 최종검색)

체계를 구축할 수 없는 법치주의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Regulatory Sandbox(규제안전공간)” 도입이 본격화된 바 있다. 즉, 기존의 엄격한 금융규제로부터 일정한 안전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로부터 안전한 개념적 공간을 부여받아 핀테크기업들이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의 Solution을 구현할 기회를 주고,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감독 상의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sup>3)</sup> 2016년부터는 영국 외에도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영국의 시스템을 모델로 하는 핀테크 분야 규제안전공간 도입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금융위원회도 2015년부터 영국의 “Regulatory Sandbox(규제안전공간)” 제도에 도입에 관심을 기울이고 영국의 제도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가 제도 운영에 대한 법리적 검토나 법적 정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국의 FCA가 도입 계획을 밝힌 “Regulatory Sandbox”는 규제부담 없이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시범적용을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구상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나 금융모형을 시험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즉, 테스트 대상 소비자와 투자금액이 제한되며, 운영 기간도 테스트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부여되는 한편, 소비자

2) 김명아,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11.30. 결어 참고; 안상현, “핀테크 싹 틔우려면 3중 규제 풀어야”, BLOTTER, 2015.03.11.(<http://www.bloter.net/archives/222541> 2017.10.31. 최종검색), 한국경제연구원, “美·日,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금산분리 규제 폐지”, 2015.02.23., 2면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48536](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48536) 2017.10.31. 최종검색).

3) FCA, 「Regulatory Sandbox」, 2015.11.,

p.1([https://www.fca.org.uk/search-results?search\\_term=Regulatory%20Sandbox](https://www.fca.org.uk/search-results?search_term=Regulatory%20Sandbox) 2017.10.31. 최종 검색).

보호장치 마련은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고 시험 기간 감독당국의 밀착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적 규제 중심의 우리나라 금융법제가 영국과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하여서는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고, “Regulatory Sandbox”가 가지는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련 제반 규정의 개선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산업 즉, 다양한 기술적 기반과 결합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하여 규제 테스트베드 운용을 통한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며, 나아가 “Regulatory Sandbox”와 같은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조치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Regulatory Sandbox”는 영국 등 외국에서 유래한 제도인 만큼 그 제도 운용의 목적 및 연혁에 대한 해외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나라 핀테크발전 양상에 따른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의 범위와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러한 현실적 수요에 따라 현행 법제에 적합한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범위와 향후 개선이 필요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서도 그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규제개선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므로 우선,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금융규제 시범사업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도록 하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련 금융감독조치를 검토함으로써 금융당국이 시범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가늠해보도록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금융법 체계에 맞는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방식의 변화와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설계와 법적 적합성을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영국이 시작하고, 호주·싱가포르·말레이시아·홍콩 등도 서둘러 도입한 바 있는 “Regulatory Sandbox”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가능성과 방식에 대해서도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핀테크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요와 이해를 수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방식 등의 수요조사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관련 정책과의 정확한 제도적 비교를 위하여 해당 국가 금융감독당국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관련 제도 검색 등을 통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해외제도 사례 분석과 실무상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제도 도입방안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모색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적인 경험을 어떻게 우리에게 맞는 방식과 수준으로 흡수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의 각종 금융감독조치 및 시범사업 수행의 근거가 되는 규제특례 체계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제도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을 논의의 주요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각 금융서비스 유형별 세부적인 법률관계 분석이나 핀테크산업 자체의 발전방안에 관한 논의는 제외하도록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과 연구범위를 체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제1장 서론, 제2장 금융규제 시범사업의 도입 배경과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성 소개, 제3장 규제 안전공간 제도의 해외 운용 사례, 제4장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요조사 결과분석, 제5장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6장 결론의 내용으로 구성하기로 한다.

한편, 워크숍과 전문가회의 개최를 통하여 해외의 금융감독 시범사업 유형과 우리나라에서 수용가능한 도입 방식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다. 즉,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준비단계에서부터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정확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는 한편, 핀테크분야 실무자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FGI형태의 정성조사를 병행한다. 또한, 각 분야의 금융법제 전문가들을 워크숍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한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사례를 검토한다. 또한, 제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감독 시범사업으로서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제도 운용을 위한 금융당국의 보조적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각 금융감독의 수범객체가 되는 금융 관련 기업과 보호 객체로서의 금융소비자, 금융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일반 금융소비자를 포함하여 학계(연구원 포함) 전문가 내지 은행 등 기존 금융업계 실무자 및 금융규제안전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관련 업체 등을 수요조사대상에 골고루 분포하도록 하며, 정량조사 방식 외에 연구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FGI 방식의 정성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는 각 업종별·유형별 온라인기반 금융서비스와 시범인가 등 규제안전공간 운영에 관하여 자금수요자/온라인포털관리자/자금제공자/전문가/소비자 등 다층적인 시각을 가진 각 그룹에 대하여 객관적인 수요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규제방식의 정확한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과정에서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Regulatory Sandbox”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외 금융감독당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각 제도

운영상의 기본 취지와 운용 방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응답자 그룹들의 의견을 정량조사 방식으로 수렴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방법 외에도 해당 법령의 분석이나 입법안, 정부정책에 대한 연혁적 조사를 위하여 인터넷검색 방식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발전에 대한 관련 논문이나 기사 검색을 통한 연구 방법을 함께 활용하였다.

## (1) 수요조사 방식 결정 및 설문항목 개발 절차

### 1) 수요조사 방식 결정

본 연구에서는 금융법제 개선에 필요한 정확한 입법수요 파악과 효율적인 법제 정비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설문개발 단계에서부터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감독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상의 정책 개선 수요와 방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연구의 방향성을 설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문개발 단계에서부터 적극 수렴한 바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금융감독 방식의 적용이 가능한지, 금융감독 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시범사업의 수행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러한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방향이 적절한지, 그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 등 그 방향과 실무상의 정책적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조사 방식의 설문을 통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설문항목 개발 단계에서부터 항목의 완결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관련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수렴할 수 있도록 수차례 전문가회의를 진행하였다.

## 2) 설문항목의 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정량조사 방식의 설문항목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발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우선, ‘금융감독 시범사업에 관한 법리적 검토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대상을 확정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

다음으로는 연구의 기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제한된 기간내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기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정확한 실무상의 수요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량조사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을 묻는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여 금융분야 각계 전문가에게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설문항목과 보기항목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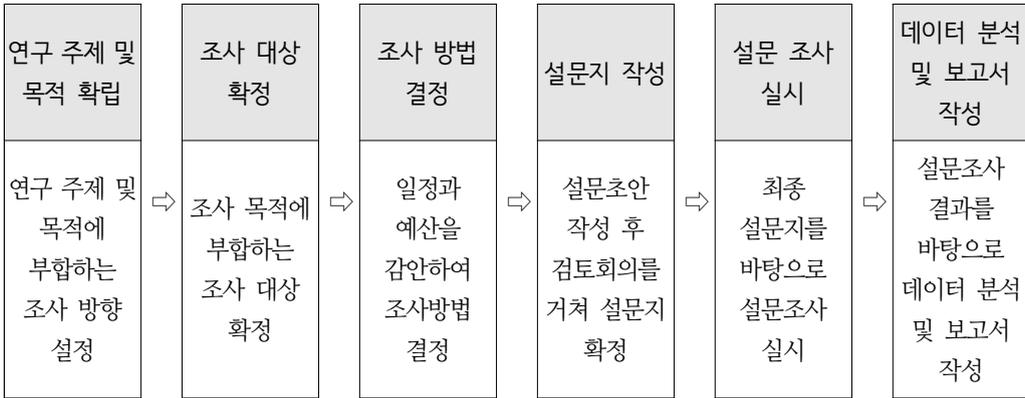
이후, 전문가들의 재검토회의를 거쳐 조사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표본설계가 가능하도록 표본구성을 조정하는 한편, 설문항목과 보기항목이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적합하도록 재수정하였다.

이렇게 2차례 이상의 전문가 설문항목 검토 단계를 거쳐 표본설계에 따른 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본 수요조사는 기존의 입법 관련 설문조사기법에 따라, 4주간 금융분야 각계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량조사 방식의 설문으로 수행하고, 이 조사결과를 기초로 응답결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sup>4)</sup> 다음 [표 1]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4) 조영기,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기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09.30., 49~50면.

[표 1]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 관련 수요조사 과정 및 보고서 작성 절차



### ① 연구 주제 및 목적 확립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금융법제 개선에 필요한 정확한 입법수요 파악과 효율적인 법제 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② 조사 대상 확정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대상 확정을 위해 모집단을 선정하고,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 대상을 확정하였다. 먼저 본조사의 모집단은 본 조사의 모집단은 전문가, 업계, 일반소비자 등 3개로 구분하였다. 전문가의 경우 대학, 변호사, 정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업계의 경우 핀테크 기업,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대부업자,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소비자의 경우 핀테크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중 표본의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 관련 수요조사 표본 구성

		사례수	비율
전체		100	100.0%
대분류	전문가	20	20.0%
	업계	60	60.0%
	일반소비자	20	20.0%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30.0%
	은행	15	15.0%
	금융투자	8	8.0%
	보험	7	7.0%

③ 조사 방법 결정설문조사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나, 조사 일정 및 비용에 비추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으로는 면대면 조사<sup>5)</sup>, 전화조사<sup>6)</sup>, 우편조사<sup>7)</sup>, 인터넷 조사<sup>8)</sup> 등이 있다.

- 5) 면대면 조사는 면접원이 응답자를 물리적으로 만나 질문을 하고, 응답을 얻는 방식이다. 면대면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응답을 얻는다는 점에서 중간에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설문을 끝까지 완성하는 비율이나 응답률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면접원 인건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조영기,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기법 연구, 위의 보고서, 61면).
- 6) 전화 조사는 면접원이 집 전화를 걸어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응답을 얻는 조사이다. 전화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 빠르게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 신속성을 장점으로 지니고 있으나, 최근 사생활 정보 침해,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조영기,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기법 연구, 위의 보고서, 61면).
- 7) 우편 조사는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고 다시 응답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받는 방식이다. 우편조사는 비용이 적게 들고 응답자가 천천히 생각하여 응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자가 응답을 보내올 것에 기대야 하는 등 응답자를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조영기,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기법 연구, 위의 보고서, 61면).
- 8) 인터넷 조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응답자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설문페이지 링크를 보내고 해당링크로부터 웹 화면에 설문을 제시하고 응답을 얻는 방식이다. 인터넷조사는 우편조사와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편한 환경에서 천천히 응답할 수 있고, 웹의 특성을 활용하여 동영상 등 다양한 보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조영기,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기법 연구, 위의 보고서, 6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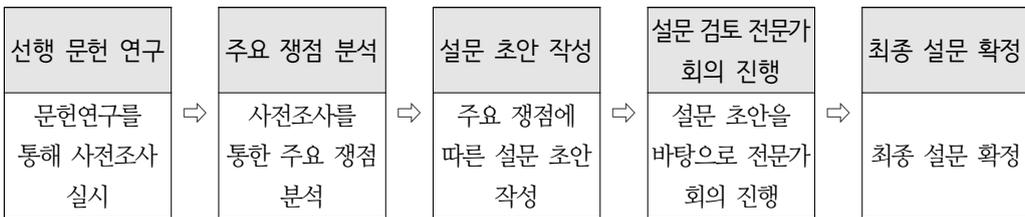
본 설문 조사의 경우, 금융규제와 관련된 난이도 있는 설문을 포함하고 있고, 설문의 배경 설명이 다소 길게 들어가 있는 설문 특성을 반영하여, 이메일을 통한 설문지를 송부한 후 응답자가 기입하여 회신하거나, 전화로 회신을 독려하고, 필요시 면대면 설문지 배포를 병행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 ④ 설문지 작성

본 설문조사의 조사항목 개발을 위해 국내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보고서 및 보도자료, 문헌 등을 살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한 문항을 선정하였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문항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

일반적으로 설문 초안이 완성되면 실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 설문지에 대해 예비적으로 검토하여 설문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설문검토 단계에서는 설문 초안에서 모호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제거하고, 명료한 표현들을 활용하여, 설문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는 설문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질문들이 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연구목적과 관련 있는 설문 구성이 중요기 때문이다. 다음의 [그림 1]은 이번 수요조사에서 실시한 설문지 개발 단계를 흐름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 관련 수요조사 설문지 개발 단계



본 연구의 설문 초안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대한 인지 정도, 도입 단계, 세부 정책, 종료 단계, 정책관련 제언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인 문항의 구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 관련 수요조사 설문초안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일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인지도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찬성여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발표 인지 여부 신 금융서비스 기업의 애로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단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 기준 미인가기업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선호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업체 자격 요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세부 정책	신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서비스 지정대리인 자격부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정책 시행시 예상 문제점 현행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한 의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 단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시 발생가능한 문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기업의 예상 문제 시범사업 참가 기업의 인센티브 부여 여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 후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
정책관련 자유 기술	정책 관련 자유 기술

설문 초안 작성 후, 설문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회의를 실시하였다. 제1차 전문가회의를 통하여서는 설문 전반에 대한 방향 및 구성, 문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회차별 상세 전문가회의 내용은 다음 [표 4] 및 [표 5]와 같다.

## [표 4] 1차 전문가 회의 (2017년 5월 30일)

## 연구 및 수요조사의 목적 설명 및 검토 대상 소개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향, 설문조사에 대한 개괄적 설명

-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현에 따른 관계자 입법수요 및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제 개선 방향성 도출
-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 구성 및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요청

## 검토 요청

## 설문 구성

- 설문조사 용어를 금융위원회 및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식용어 사용하고, 용례집 포함할 것
- 금융감독위원회가 '17.3.20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보도 자료 검토하여, 일치하는 내용으로 설문 구성
- 설문 예시 중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표현 지양할 것
- 설문 모두에 관련 예시들을 포함하여, 설문응답자들이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고려 필요
- 질문에 대한 가독성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예시 활용 필요

## 설문 문항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영업지역/서비스 혁신성/소비자 혜택/테스트 필요성/준비성과 관련한 항목 넣을 것
- 금융소비자 편익과 관련하여 어떤 방법으로 넣을지 검토 필요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선정 후, 선정기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계속 규제를 받을 것인지, 기존의 규제를 경과조치로 받을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음
- waiver 등 미도입 감독조치와 관련한 설문 조항 추가되면 좋을 것
-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의 경우, 단순히 비용만 낮춘다면 진정한 의미의 금융소비 편익증대라고 볼 수 없음(수익성은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익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편익증대가 중요)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이 추가되면 좋을 것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예정인 기업들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 추가 필요 (기술탈취 및 위탁관계에서 오는 문제점, 혁신성 상실 우려 등)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논의 필요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참여기업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주는 방안 고려

[표 5] 2차 전문가 회의 (2017년 6월 14일)

검토 대상
<p>조사 대상에 금융소비자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결정 필요 조사 목적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포함하여 조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p>
검토 의견
<p><b>설문 구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례집에 불필요한 항목 삭제</li> <li>- 응답자가 쉽게 응답할 수 있게, 문항을 객관식화 할 것</li> <li>-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설문 문항 수를 조절 할 것</li> </ul> <p><b>설문 문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조사 설문항목 포함할 것</li> <li>-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준비정도 보다 도입 필요성 또는 규제 환경에 대한 설문 필요</li> <li>-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선정 요건 중 소비자 혜택을 편리성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분리하여 설문</li> <li>-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선정시 판단요건에, 업력, 기술력, 운영력, 자본 등을 고려하는 척도 설문으로 설계</li> <li>-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문을 척도 설문으로 설계</li> <li>-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설문을 척도 설문으로 설계</li> <li>-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세부 정책 설문을 설계하고, 객관식으로 변경</li> <li>-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 구체적인 보기를 제시하여 설계</li> <li>-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 후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여 설계</li> </ul>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개발된 최종 설문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6]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 관련 수요조사 설문지 구성 항목

구분	설문의 내용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인지 여부
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 찬반
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

구분	설문의 내용
4	보충적 금융감독조치 활용가능성
5	미도입 제도 찬반
6	업체 선정 요건
7	사업자 선정 판단 요건
8	금융 소비자 보호
9	테스트베드 운영상 증점 대처 사항
10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 애로점
11	법령 개정 및 제정 찬반
12	테스트베드 종료시 문제 대처
13	테스트베드 종료시 업체의 우려점
14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찬반
14-1	참여기업 인센티브 종류
15	테스트베드 평가항목
15-1	평가항목 자유 의견
16	신 금융서비스 활성화 애로점
17	금융규제 개선 관련 자유 의견

### ⑤ 설문조사 실시

정량조사 설문지의 최종문안 결정에 따라 4주간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실제 조사 대상자들의 협조 정도와 설문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이메일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면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회신을 높이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독려를 함께 진행한 바 있다.

## ⑥ 데이터 분석 및 최종보고서 작성

설문조사 후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조사의 통계처리는 최종보고서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하였다.

### (2) 정성조사

#### 1) 정성 조사 방법 개요

FGI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량조사와 구별되고, 개인 또는 그룹의 인식과 지식의 정도에 의해 설문지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정성조사는 설문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정량조사 이외에도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의 정성조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량조사를 통하여서는 그 결과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실무전문가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조사 설문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FGI를 실시하고, 이후 정량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정량조사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워크숍 방식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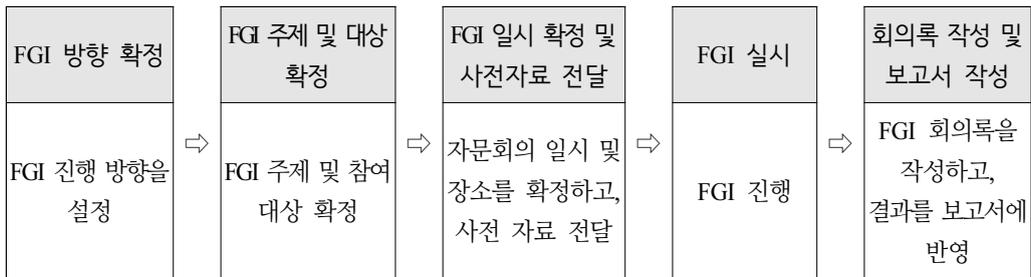
먼저 FGI 조사의 실시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FGI 실시를 위해서는 FGI 진행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FGI 주제와 참여 대상, 일시, 장소를 확정된 다음, 참여대상에게 사전 자료를 전달하여 회의 주제에 부합하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이후 FGI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회의록 작성 및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FGI 조사 내용이 정량 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심층 검토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실무 전문가를 확정하였다. 이후 FGI 일시 및 장소를 참여

대상과 함께 조율하고, 회의 주제로 사용될 설문초안을 이메일 송부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후 FGI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회의록 작성 및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FGI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음의 [그림 2]는 본 수요조사에서 FGI방식의 정성조사 수행과정을 간단하게 도표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 관련 수요조사 FGI 실시 단계



## 제2장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도입 배경

제1절 기존 금융감독 규정 적용의 한계

제2절 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도입



## 제2장

#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도입 배경

### 제1절 기존 금융감독 규정 적용의 한계

#### 1. 핀테크산업의 발달과 금융규제 개선의 필요성

IT기술의 발달로 최근 핀테크(FinTech)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IT 기술과 금융의 융합에 따른 정책 지원 및 금융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sup>9)</sup>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핀테크산업의 발전속도는 앞으로도 계속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의 금융 관련 규제나 입법체계가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막는 요소가 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sup>10)</sup>

다음의 [표 7]은 그동안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규제요소들을 소개한 주요 기사들을 시기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9) 기획재정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2014.3.27.; 금융위원회,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 결과-, 2015.1.27.; 김명아,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11.30.; 금융위원회,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 2017.1.18., 90~93면 등

10) 민병길, “핀테크 동향과 시사점”, 경기연구원, 2015.02.11., 6면; 김종우·박진형·신근호·이선애·최광현, “은행과 인터넷 애널리 함께 본 핀테크”, 『Industry Issue』, 2015.01.21., 10면; 10) 박해진·이성빈·황석규, “핀테크, 변화의 서막인가? 찻잔 속의 태풍인가?”, 『Industry Issue Report』, 교보증권, 2015.02.04., 39면; 김명아,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11.30., 46~50면;

[표 7] 핀테크 유형별 발전 저해 규제 요소 지적 기사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지급 결제	2015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업에 대한 엄격한 진입규제 문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등 금융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li> <li>•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사전적 자격 요건: 전자금융법은 전자자금이체 허가 취득을 위해 최소 20억원의 자본금을 요구.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허가 취득을 위해서도 최소 5억원이 필요.</li> <li>• 새로운 전자금융 기술은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사를 통과해야 출시 가능: 보안성 심사도 금융회사만이 할 수 있어 제휴할 금융회사를 잡지 못한 핀테크 기업은 신청 기회조차 없음<sup>11)</sup></li> </ul>
	2015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산분리완화, 금융실명제 완화,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 폐지 여부: 금산 분리 완화, 금융실명제 완화는 주로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사안임.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 폐지는 플랫폼 및 핀테크 프로그램 관련 기업들의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내용<sup>12)</sup></li> </ul>
	2015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성 심의 제도와 같은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사후점검을 강화해 금융사가 자유롭게 새로운 IT기술을 적용하고 결과에 책임지도록 해야 함<sup>13)</sup></li> <li>• 손해보상 및 보호규정준수, 소비자 및 이용자 교육, 감시 모니터링 강화, 핀테크 육성을 위한 법률 및 규제체계의 정비 필요<sup>14)</sup></li> </ul>

11) 머니투데이 2015.1.2. “반성한 금융당국, 핀테크 족쇄 풀 수 있을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22500242690089&amp;outlink=1&amp;ref=http%3A%2F%2Fsearch.naver.com 2017.10.31. 최종검색)

12) 아시아경제 2015.2.26. “[핀테크골든타임] '금융기술 대못'부터 빼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22611011859844 2017.10.31. 최종검색)

13) 이데일리 2015.3.6. “[IFC 2015 상하이]진웅섭 금감원장 “핀테크 산업 적극적으로 지원””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amp;newsid=02355046609300696&amp;DCD=A00102&amp;OutLnkChk=Y 2017.10.31. 최종검색)

14) 세계일보 2015.3.17. “[SEGYE\_핀테크세미나: 협업] "핀테크 콘트롤타워 운영해야””

(http://www.segye.com/newsView/20150317003553 2017.10.31. 최종검색)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지급 결제	2015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규제 완화, 금융 결제 보안에 대한 우려 등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 핀테크 발전에 필수 요소인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도 필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 및 안착을 위한 지원과 육성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sup>15)</sup></li> </ul>
	2015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 해당: 기업들이나 금융 기관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열거하고 그 이외의 것은 관료나 정책 당국의 허가를 맡아 하라는 것으로 핀테크 산업 발달 저해<sup>16)</sup></li> </ul>
	2016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산분리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가 필요<sup>17)</sup></li> </ul>
	2016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화폐의 경우 한국에선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음. 디지털통화의 정체를 화폐로 볼 것이냐, 상품으로 볼 것이냐 라는 문제조차 정리돼있지 않음. 디지털통화 거래에 세금을 매길지, 소비자보호는 어떻게 할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건 어떻게 막을지 등을 논의할 근거가 없었던 셈. 유럽과 미국, 일본에선 이미 활발한 논의를 통해 디지털통화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비해 관심이 한참 뒤떨어져 있음.<sup>18)</sup></li> </ul>
	2016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테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두 국가에서 채택하는 네거티브 방식 수준으로 대폭 규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sup>19)</sup></li> </ul>

15) 아시아투데이 2015.5.14. “[핀테크가 미래다] 국내 금융시장에도 ‘핀테크 열풍’ 상륙”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513010007114> 2017.10.31. 최종검색)

16) 프레스리안 2015.11.9. “한국의 핀테크 산업, 이대로는 망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인프라와 생태계가 조성돼 있지 않은 핀테크 산업”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009&ref=nav\\_search](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009&ref=nav_search) 2017.10.31. 최종검색)

17) 전자신문 2016.4.4. “[좌담회]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제와 발전방안”  
(<http://www.etnews.com/20160404000240> 2017.10.31. 최종검색)

18) 중앙시사매거진 2016.11.23. “비트코인 시대, 어떻게 준비할까”  
(<http://jmagazine.joins.com/forbes/view/314361> 2017.10.31. 최종검색)

19) CCTV뉴스 2016.12.13. “핀테크 시장 활성화, ‘규제·보안’ 난제…타개책은?”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36> 2017.10.31. 최종검색)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지급결제	2017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법 아래에서는 IC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은 재벌의 자본집중과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안에는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일반 비금융사업자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벌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원칙에 의거 진출을 불허하되 중소 ICT기업들의 진출을 위해서라도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sup>20)</sup></li> </ul>
	2017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테크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완화돼야 함. 인터넷 전문은행에겐 의결지분 제한을 완화시켜주고, P2P금융의 경우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최저자본 하향 조정이 필요</li> <li>•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 명확화 △가상화폐 관련 법제도 마련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작성 등 제도 정비가 필요<sup>21)</sup></li> </ul>
	2017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어려움</li> <li>• 핀테크 발달로 등장한 P2P가 별도 규율체계 부재로 대부업 규제를 받는다든가, 보험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가 제한돼 빅데이터 분석업체, 지급결제업체 등을 인수해 활용하는 길이 막혀있음<sup>22)</sup></li> <li>• 핀테크 기업이 70.5%로 사업 차질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li> <li>•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 산업 간 융합과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한 회색 규제,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 과잉규제를 지적<sup>23)</sup></li> </ul>

20) 이코노미뉴스 2017.1.9. “내 손 안의 금융세상, 인터넷전문은행이 불러올 미래”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8624> 2017.10.31. 최종검색)

21) 데일리한국 2017.5.25.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풀어야 핀테크 발전”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705/dh20170525155820138100.htm> 2017.10.31. 최종검색)

22) 머니투데이 2017.6.1. “신산업 기업 2곳 중 1곳 "규제 때문에 사업차질 경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0110491878007&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23) 한국경제 2017.06.01. “신산업 분야 기업 절반 “규제로 사업 차질””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0157371?nv=o> 2017.10.31. 최종검색)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지급 결제	2017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이 상품인 동시에 통화의 성격도 갖고 있는 만큼 신산업 육성과 공공성 확보의 두 측면에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li> <li>• 한국은 비트코인의 거래 중개를 막지는 않으나 송금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해 핀테크업체가 해외 송금을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함. 보고서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볼 때는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중요하지만 상품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는 핀테크 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li> <li>• 일본은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했고 미국의 버몬트주는 지난달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나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음<sup>24)</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부터 핀테크업체들의 해외송금업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일각에서 은행과 핀테크업체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제기됨</li> <li>• 핀테크업체들은 과도한 규제로 은행과 핀테크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힘들다고 주장. 고객들은 핀테크업체를 통해 100만원 이상 해외송금을 할 경우 최초 인증 후에도 매번 송금할 때마다 실명 인증을 해야 하고 인증을 위해서는 4가지 방법(신분증 촬영, 영상통화, 기존계좌 활용, 집배원 확인) 중 2가지 이상을 거쳐야 함</li> <li>• 한국핀테크협회 관계자는 “소액 해외송금이라도 해도 100만원 이상 송금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매번 실명확인을 한다면 자체 망을 통해 쉽게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은행에 비해 핀테크 업체들이 불리하다”고 말함<sup>25)</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투기 양상으로 번지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음. 가상화폐에 대한 권한과 제재 규정 없어 눈치만 보고 있는데다가 제도 마련 논의도 지지부진한 탓</li> </ul>

24) 동아일보 2017.06.08. “비트코인, 신산업-공공성 측면서 논의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70608/84762514/1> 2017.10.31. 최종검색)

25) 세계일보 2017.06.25. “개인 해외송금 시장 둘러싼 은행과 핀테크업체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24000841> 2017.10.31. 최종검색)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2017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까지 관련 제도는커녕 디지털화폐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 세탁방지 등에 대한 논의 자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당국의 감독 권한이나 제재 범위를 규정한 관련 근거 자체가 없어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에 개입할 수 없는 상태</li> <li>• 가상화폐가 투기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 당국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자 금융위가 지난 22일 ‘가상통화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이 전부. 유의사항 역시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개괄적 내용에 그침<sup>26)</sup></li> </ul>
지급결제	2017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금융당국이 최근 업계를 상대로 업계 현안과 규제방안 의견 등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이 거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신중히 진행한다는 입장</li> <li>•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규제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음. 투자자 제한이나 투자금액 한도 지정 등 직접적으로 투자를 막기보다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li> <li>•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의 경우 새로운 핀테크지만 한편으로는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업 등 기존 법령 안에 적용되는 산업이었다”며 “가상화폐는 이와 달리 법적인 토대가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말함<sup>27)</sup></li> </ul>

26) 아주경제 2017.06.26. “가상화폐 시장 커가는데…손 놓고 있는 금융당국”  
 (<http://www.ajunews.com/view/20170626134500163> 2017.10.31. 최종검색)

27) 아이뉴스24 2017.07.03. “가상화폐 가이드라인?...‘광풍’ 부담되는 금융당국”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32681&g\\_menu=022400](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32681&g_menu=022400) 2017.10.31. 최종검색)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지급 결제	2017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으로 금융 분야의 핀테크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한국 금융의 핀테크 활용도는 주요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규제 개선 등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li> <li>•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Y)이 발표한 ‘2017 핀테크 도입 지수’에 따르면, 중국의 핀테크 도입률은 69%로 조사 대상이 된 20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국에 이어 인도(52%)와 영국(42%) 등이 상위권을 차지. 한국은 홍콩과 함께 12위(32%)에 올랐지만, 20개국의 평균(33%)에도 미치지 못함</li> <li>• 중국 정부는 2010년 비금융사에게 온라인 결제를 허용한 걸 시작으로 2014년 비금융사의 온라인은행 소유도 허용했다.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는 “중국 정부의 열린 접근법이 핀테크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며 “중국 정부가 규제완화 성과를 토대로 사후에 법률적인 규제환경을 보완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함</li> <li>• 반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 여전히 각종 규제가 핀테크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와 이달 출범을 앞둔 카카오뱅크의 경우 비금융사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은산분리 완화)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본금 확충이나 경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li> <li>•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핀테크는 기존 금융사업과 전혀 다른 서비스인데 기존 금융업의 포지티브 규제체계가 적용돼 서비스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sup>28)</sup></li> </ul> <p>• 핀테크 해외송금업체에 기존 금융사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AML) 의무가 적용. 당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는 AML·고객신원확인(KYC) 체계 구축 의무화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 등 주요국이 관련 제재를 강화하면서 소액해외송금업체도 특정금융정보법 수검 대상자에 포함시킴. 국제증개은행을 거치는 풀링 방식 해외 송금업체 등의 대외 신인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임.</p>

28) 한국일보 2017.07.04. “중국은 노점상도 핀테크 쓰는데”

(http://www.hankookilbo.com/v/3af8b1ddc5b14a98804c8f14681ee032 2017.10.31. 최종검색)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자금 결제	2017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세탁방지에서 요구하는 신원확인 은 단순 이름·전화번호를 넘어 주소, 연락처, 계좌 실소유자 여부까지 모두 포함됨. 거래목적과 자금원천, 직업, 업종까지 확인해야 함. 또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 정보 재확인 의무도 있음</li> <li>• 설명회에 참석한 해외송금업체 대표는 “이대로라면 18일 소액 해외송금업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복잡한 의무 규정을 제시만 하지 말고, 핀테크 업체가 제도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지적<sup>29)</sup></li> </ul>
	2017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바일 송금을 비롯한 분할 결제 기술 등 관련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6년 한해만 30건이 넘게 출원, 2017년 8월까지 25건으로 집계</li> <li>• 정보 기술 및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각자 내기 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가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임<sup>30)</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금융청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안 재정비를 함</li> <li>• 현행법은 업무의 형태별로 규제를 달리하고 있음. 또 현행법은 전자결제와 전자상거래에 은행이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결제나 송금 등의 업무를 같은 법안 테두리에 묶고 은행과 인터넷 사업자가 동일한 규제 속에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재편할 방침, 새로운 법체계가 도입되면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보다 저렴하고 획기적인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sup>31)</sup></li> </ul>

29) 전자신문 2017.07.05. “핀테크업체, 백만원 이상 해외송금 시 이름·계좌 정보제공...강화된 제도에 업계 당혹” (<http://www.etnews.com/20170705000196> 2017.10.31. 최종검색)

30) 중도일보 2017.10.10. “특허청 “핀테크 기술로 각자 내기가 대세””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1009010001154> 2017.10.31. 최종검색)

31) 파이낸셜뉴스 2017.10.15. “日 핀테크 위해 새판 짜다” (<http://www.fnnews.com/news/201710151731550868> 2017.10.31. 최종검색)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자본/ 부채	2015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법상 P2P 대출업체 뿐 아니라 이들 업체에 돈을 투자하는 개인 모두가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9조4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 필요.</li> <li>• 유사수신행위에 향후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P2P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가능성 있음.<sup>32)</sup></li> </ul>
	2015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2P 대출 업체는 금융당국이 P2P대출을 대부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난색을 있으며 자금 제공 횟수나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개인 투자자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sup>33)</sup></li> </ul>
	2015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규제할 만한 법안이 없는 실정으로 시장 확대에 걸림돌로 지목.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은 금리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으로 분류되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다고 지적<sup>34)</sup></li> <li>• 안정적인 투자자금 확보와 기업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 등을 목적으로 연 내 혹은 1~2년 내 상장을 계획하는 P2P기업들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제도나 법규가 없어 상장을 못하고 있음</li> <li>• 현행 P2P대출업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 허가·감독권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여신 취급은 대부업 규정에 따라 금융 당국이 소관하고 있으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금융위원회나 중소기업청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없을 뿐 더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예탁결제원에 증권 발행이나 투자자 관리 업무 등을 위탁할 수도 없는 입장</li> <li>• P2P대출업이 엄청난 속도로 급팽창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권 안에 편입되지 않아 벤처투자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선 벤처캐피탈(VC)이나 다른 투자자들의 엄청난 까다로운 투자금 회수 전제조건을 들어줘야 함<sup>35)</sup></li> </ul>

32) NEWS1뉴스 2015.2.9. “사금융 키우는 핀테크...P2P대출 ‘8퍼센트’의 딜레마”

(<http://news1.kr/articles/?2085079> 2017.10.31. 최종검색)

33) 이투데이 2015.6.11. “P2P대출 대부업 취급 ... 업계 "새로운 업종으로 분류해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41643> 2017.10.31. 최종검색)

34) 디지털데일리 2015.7.3. “[스페셜 리포트] 크라우드 펀딩, ‘핀테크 관심주’로 뜬다”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32100> 2017.10.31. 최종검색)

35) 파이낸셜뉴스 2015.7.8. “P2P대출기업, 대부업 꼬리표에 상장 발목”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자본/ 부채	2015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2P대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시한 필요 규정은 P2P대출 중개업체의 금융원회 등록(감독 근거 마련), 최소 자본 유지(파산 우려 불식), 고객 자금 구분 계리 및 은행 입금(횡령 우려 불식), 기본 정보 공시 및 사실 관계 확인 의무(사기 대출 우려 불식), 투자 한도 또는 투자자 자격 부과(적격성 논쟁 불식), 차입자 자격 요건(연체율 하향 조정), 차입자의 신용 정보 공유(신용평가 정확성 제고) 등<sup>36)</sup></li> </ul>
	2016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2P금융업체들은 관련 법이 없어 대부업으로 등록하거나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 대출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업체가 아니며 투자자와 대출자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만 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임. 따라서 상당수 P2P금융업체는 부정적 사회인식 등으로 인해 대부금융협회 가입을 꺼리고 있음</li> <li>• P2P금융업체들은 또 대부업 규정에 묶이면서 총 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하로 설정해야 하는 등 성장성에도 제한이 걸릴 것으로 전망<sup>37)</sup></li> </ul>
	2017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원의 P2P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특정 P2P금융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액을 한정하고 있음. 또한 P2P금융 기업의 선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채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며 펀드로 투자금을 모으기 이전 단계에 P2P금융 업체가 회사 자금으로 미리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 규정임. 두 가지 규제 모두 P2P금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투자금 한도 제한은 P2P금융의 투자 매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대출 방지는 정작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저축은행과 같은 고금리 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 낳고 있음.<sup>38)</sup></li> </ul>

(<http://www.fnnews.com/news/201507081806480918> 2017.10.31. 최종검색)

36) 이투데이 2015.11.13. “금융원 “P2P대출 규제 도입, 이용자 신뢰 확보로 산업 키울 것””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no=1234154> 2017.10.31. 최종검색)

37) 서울경제 2016.6.2. “P2P금융-대부업계 끝내 충돌...핀테크 외치더니 손놓은 당국” (<http://www.sedaily.com/NewsView/1KXFJL01G> 2017.10.31. 최종검색)

38) IT조선 2017.3.22.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과도한 P2P 규제는 오히려 핀테크 정신 훼손””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32328> 2017.10.31. 최종검색)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자본/ 부채	2017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지난 29일 본격 시행됨</li> <li>•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투자자의 투자한도 설정, 투자금 별도 관리체계 구축, 해당업체 및 연계금융사의 투자자 행위 제한(선대출), 과장 및 허위광고 등의 금지, 정보공시의 강화 등<sup>39)</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2P 대출 시장이 누적 규모 1조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성장했는데 정부 규제는 산업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가입자 모집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이에 따라 계획했던 상품 출시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li> <li>• 지난 2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일반 개인 투자자는 1천만원,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4천만원으로 제한<sup>40)</sup></li> </ul>
	2017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전 관련 업체들이 속속 생겨날 즈음 P2P대출을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었던 금융당국은 P2P대출을 금융업이 아닌 ‘중개업’으로 규정해, 여신 등의 업무가 가능한 대부 자회사를 두도록 함. 결국 당국의 규제로 중금리 시장의 P2P대출과 일반적인 대부업이 한 바구니에 담겨지게 됨.</li> <li>•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P2P대출과 같은 신금융 상품을 기존 틀에 끼워맞추다보니 이런(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P2P대출에 대한 정의를 새로 해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과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sup>41)</sup></li> </ul>

39) 데일리그리드 2017.06.01. “P2P대출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에 분주해진 업계”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52968> 2017.10.31. 최종검색)

40) 지디넷코리아 2017.06.11. “P2P대출 1조원 규모로 성장…규제는 역주행”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609175941&type=det&re=](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609175941&type=det&re=) 2017.10.31. 최종검색)

41) 중앙일보 2017.07.07. “P2P 투자수익에 세금 27.5%, 복권보다 높다니 …”  
(<http://news.joins.com/article/21736044> 2017.10.31. 최종검색)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인프라스트럭처	2015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산업이 사물인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과 함께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이끌 한 축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될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sup>42)</sup></li> </ul>
	2016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법제도상 개인정보 이용 시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고 개인정보 범위의 모호한 점이 금융산업 핀테크 발전을 제약<sup>43)</sup></li> </ul>
	2017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는 사실상 모든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의 규정으로 인해 빅데이터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초 단계에서 조차 제약을 받고 있음. 정부 중심의 사전 규제방식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함<sup>44)</sup></li> </ul>
	2017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핀테크 서비스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혹은 OTP 비밀번호 요구, 복잡한 공인인증서 발급·복사 절차</li> <li>- 결제를 위해 액티브엑스,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키로그 입력, 공인인증서 모듈 등록 등의 절차 필요</li> </ul> </li> <li>• 해외 핀테크 관련 규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 엄격한 금융규제를 통해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도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실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규제 정비, 비조치 의견서를 활용한 규제 불확실성 최소화</li> <li>- 영국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 기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신규 금융상품을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li> <li>- 호주 : 정보위원회 ‘열린 공공정보 원칙’,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 정보 공개 원칙 구체화<sup>45)</sup></li> </ul> </li> </ul>

42) 머니투데이 2015.11.18. “국회에 발목잡힌 핀테크”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1809057628550&ref=http%3A%2F%2Fsearch.naver.com> 2017.10.31. 최종검색)

43) 한국금융신문 2016.11.21. “빅데이터, 법률로 개인정보 보호범위 정해야”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66611> 2017.10.31. 최종검색)

44) 테크M 2017.3.26. “논란 여전한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열쇠 될까?”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3804](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3804) 2017.10.31. 최종검색)

45) 녹색성장 2017.06.05. “[4차산업 시대 한국의 현주소④] 규제에 꼭 막힌 ‘핀테크’...“제대로 벤치마킹부터 해야”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인프라스 트럭처	2017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 정부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증권형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마련 및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실시 등 핀테크 분야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함.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제도가 도입은 되었지만 각종 규제들로 인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상황에 놓임</li> <li>•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투자한도제한, 경영자문 금지, 발행업종제한 등 규모에 맞지 않는 여러 제한으로 인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려는 기업 수요도 제한되고 이대로라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활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특히나 개인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해외에 비해 너무 지나치다는 평가가 많음</li> <li>• P2P대출의 경우 대부업법 등 본질과 다른 법률 적용으로 인해 서비스 확장에 심대한 어려움이 있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과도한 투자한도 및 선대출 금지 등도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 소액해외송금업 같은 경우도 제도는 만들어져서 시행을 앞으로 있지만 자본금 및 이행보증금, 전산설비 요건 등이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을 쳐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매번 송금할 때마다 비대면 개인실명확인을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7월 시행을 앞두고 빨리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한 상태. 로보어드바이저도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비대면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절름발이로 운영되고 있음<sup>46)</sup></li> <li>•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li> <li>• 핀테크 산업의 경우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금융규제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됨</li> </ul>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9> 2017.10.31. 최종검색)

46) 한국금융신문 2017.06.12. “핀테크 혁신 위한 규제 환경 마련 필요”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182735> 2017.10.31. 최종검색)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2017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핀테크는 ICT기술과 금융업이 융합된 신산업으로 기존 금융사업과는 현저히 다른 서비스인데, 기존 금융업의 포지티브 규제체계가 적용돼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며 “핀테크 산업 중 P2P금융과 크라우드펀딩의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문제”라고 설명</li> <li>• “핀테크 산업은 소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 기업이 주를 이루고 틈새시장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출시하는지가 곧 경쟁력”이라며 “사전규제 중심의 규제체계가 사실상 핀테크산업 경쟁력을 제한하는 셈”이라고 덧붙임<sup>47)</sup></li> </ul>
인프라스트럭처	2017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권 규제를 과감히 풀어 자율성과 독창성을 주되 부실 업체는 과감히 손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른바 ‘풀고’(가격 등 시장개입 자제), ‘막고’(자영업자 가계부채, 구조조정), ‘넓히고’(핀테크 등 새 영역 확대) 등 3원칙</li> <li>•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강명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풀기’에 우선점을 줘야 한다고 말함. 강 교수는 “전체 은행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한 ‘4%룰’)에 발목 잡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금융위원장이 사전적 소유 규제인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엄격한 자격 심사를 전제로 한 승인제와 사후 규제인 효율적인 금융감독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함</li> <li>•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의 규제 완화에 의견을 실었다. 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 영업 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은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금융사의 가격이나 수수료 등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금융기관이 산다”고 조언</li> <li>•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복합적인 금융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증권업, 은행업 등으로 칸막이해 나눠 놓은 ‘전업주의’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냄<sup>48)</sup></li> </ul>

47) 데일리안 2017.06.14. “핀테크 경쟁력 향상 해법은?...한경연 “네거티브 규제전환 필수”  
(<http://www.dailian.co.kr/news/view/639835> 2017.10.31. 최종검색)

48) 서울신문 2017.07.05. “금융 활성화 3박자... 풀고 막고 넓히려”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인프라스트럭처	2017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정부의 규제 수준을 완화하고 암호화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li> <li>• 지난해 7월 정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익명화 또는 범주화 하도록 한 조치.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빅데이터만의 장점인 데이터의 포괄성과 시의성 있는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li> <li>•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핀테크와 관련해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다보면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법제도와 충돌하는 문제가 항상 가장 심각하게 제기된다”면서 “업계의 규제 완화의 요구에 대해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보다 현실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힘<sup>49)</sup></li> </ul>
	2017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20은 핀테크가 시간과 장소에서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비용 등 효율성도 높여 금융시스템 전반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음. 다만 급매, 추가급락 등에 따른 충격의 전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 해킹 등의 사이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동시에 혁신증진에 감독·규제에서의 우선순위를 제시</li> <li>• 일단, 제3자 서비스공급자 관련 운영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과 정보기술(IT) 보안 당국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 이 밖에 ▲ 국경 간 법적 체계 분석 ▲ 규제의 시의적절한 제·개정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배구조와 공시체계 마련 ▲ 민간과의 교류 등도 중요하다고 덧붙임<sup>50)</sup></li> </ul>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05021008&wlog\\_tag3=daum](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05021008&wlog_tag3=daum) 2017.10.31. 최종검색)

49) 서울경제 2017.07.11.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둘 다 잡으려면 규제 완화·기술 투자해야”

(<http://www.sedaily.com/NewsView/1OIFNDSMGY> 2017.10.31. 최종검색)

50) 연합뉴스 2017.08.04. G20 “핀테크 확산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대비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4/0200000000AKR20170804087700002.HTML?input=1195m> 2017.10.31. 최종검색)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인프라스트럭처	2017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가 협업·고객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li> <li>• 핀테크 산업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는 추세<sup>51)</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금융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li> <li>• 중국처럼 단일 플랫폼 내에서 전자상거래, 여행, 건강 등의 비금융 서비스와 송금, 예금, 펀드, 보험, P2P대출, 자산운용투자 등의 금융서비스가 통합돼 운용되지 못한 채 비금융 플랫폼, 금융업 플랫폼으로 분리된 이원화 형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sup>52)</sup></li> </ul>
	2017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로 핀테크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반 토막 나고, 수익 또한 나빠지고 있음, 온라인 대출 플랫폼, 가상화폐 채굴, 블록체인 기반 결제시스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의 9월 자금조달액은 지난 8월에 비해 44%, 7월에 비해서는 55% 급감<sup>53)</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서 논의되는 4차 산업혁명 지원과 관련한 핀테크 산업 인허가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 금융당국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제 시장에서도 핀테크 업체의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sup>54)</sup></li> <li>• 실제 한국의 핀테크(FinTech·금융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 서비스 이용률은 세계 20개국중 11위에 그침, 핀테크 발전에 따른 새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금융에 대한 이해력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력도 같이 끌어올리는 금융소비자 교육이 절실함<sup>55)</sup></li> </ul>

51) 디지털타임스 2017.09.19. “핀테크 산업, 고객 경험 최우선 기존 금융기관과 협업해야 주목”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92002100458033002&ref=naver](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92002100458033002&ref=naver) 2017.10.31. 최종검색)

52) 세계일보 2017.09.20. “과도한 금융규제가 핀테크 성장 걸림돌” (<http://www.segye.com/newsView/20170920004668> 2017.10.31. 최종검색)

53) 연합인포맥스 2017.10.12. “규제에 쓰러지는 中 핀테크 기업…자금조달 반토막·수익 악화”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5674> 2017.10.31. 최종검색)

54) 조선비즈 2017.10.12. “핀테크 산업 꽃피운다…“당국 인허가 없이 금융서비스 실험 가능”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1/2017101101809.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1/2017101101809.html) 2017.10.31. 최종검색)

55) 국민일보 2017.10.14. “디지털금융 강조했지만…한국 핀테크 이용률 32%에 그쳐, 20개국 중 11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22176&code=61141111&cp=nv> 2017.10.31. 최종검색)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인프라스트럭처	2017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해 중국 핀테크 거래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전망, 하지만 국내 시장은 정체 상태, 또한, 관련 규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음. 모바일결제에 최적화된 IT 인프라를 가진 한국이기 때문에 이웃나라 중국 질주가 더 아쉬움, 핀테크가 4차 산업혁명 성공 열쇠라는 점을 명심해야함<sup>56)</sup></li> </ul>
투자 관리	2015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면채널을 포커스로 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틀 안에서 온라인 전업회사를 그대로 규제하기보다는 그 특성에 맞는 개선이 필요</li> <li>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방식, 액티브X를 이용한 보안기법은 고객편의성 측면에서 인터넷 전업보험사의 탄력적인 보험업을 어렵게 하고 있음<sup>57)</sup></li> </ul>
	2015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금융거래법은 물론이거니와 비대면 본인인증 금지규정,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규정, 금산분리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여신전문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감원 기준 350페이지 등 다양한 규제들이 핀테크 산업 발전 저해요소 임<sup>58)</sup></li> <li>여신전문금융법은 사용자 본인인증 절차를 은행과 신용카드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IT 기업이 단독으로 결제·본인인증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음.</li> <li>전자금융거래법은 핀테크 기업이 결제사업을 하기 위해 먼저 전자결제대행업(PG)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국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간편결제 사업에 진출하려고 해도 외국과 달리 은행이나 카드사, PG사 등 금융사와 제휴를 맺지 않고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단독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sup>59)</sup></li> </ul>

56) 전자뉴스 etnews 2017.10.15. “[사설]중국의 핀테크 시장 질주 바라만 볼 것인가”  
(<http://www.etnews.com/20171015000056> 2017.10.31. 최종검색)

57) 아시아경제 2015.1.26. “이학상 대표 “다음카카오·티몬 손잡고 보험 핀테크 판 열겠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2015012610325255207> 2017.10.31. 최종검색)

58) KINEWS 2015.2.9. “규제에 막힌 핀테크...더 큰 문제는 ‘홀어진 규제’”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57885> 2017.10.31. 최종검색)

59) MIDAS 2015년 2월호 “핀테크, 세계 금융판도 뒤흔든다②”  
([http://www.yonhapmidas.com/article/150207214742\\_980428](http://www.yonhapmidas.com/article/150207214742_980428))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투자 관리	2015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산분리는 은행이 기업의 사(私)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경제의 기초인 금융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써 은행법 제16조 제2항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핀테크가 발달하려면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서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아니라 첨단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함.<sup>60)</sup></li> </ul>
	2016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3년 전 제정된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대표되는 핀테크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li> <li>• 온라인 투자자문 규제 탓에 국내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컨설팅할 수 없음<sup>61)</sup></li> </ul>
	2017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산 분리 완화가 금융회사의 재벌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 건전성 규제 등 거래 규제와 은행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sup>62)</sup></li> </ul>
	2017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산분리 규제의 원칙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의 과감한 철폐 혹은 완화가 필요<sup>63)</sup></li> <li>•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금융 시장처럼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일임’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sup>64)</sup></li> </ul>

60) 동아일보 2015.6.10. “[사설]“핀테크 위해 銀産분리 완화” 역설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http://news.donga.com/3/all/20150610/71758568/1> 2017.10.31. 최종검색)

61) 한국경제 2016.4.5. “벤츠·테스코은행 나왔는데…한국 인터넷은행은 ‘33년 규제’에 발목”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40591891?nv=o> 2017.10.31. 최종검색)

62) 한국경제 2017.4.11. “은산분리 규제 속에선 글로벌 금융혁명 선도 못해”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41119111?nv=o> 2017.10.31. 최종검색)

63) 서울경제 2017.5.30. “금리 경쟁력 앞세워 3040 고객 유치 성공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혁신’ 신평탄 쏘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0G4GFED3B> 2017.10.31. 최종검색)

64) 내일신문 2017.5.4. “[금융시장에 로보어드바이저 열풍 | ② 한 단계 도약하는 국내 RA(로보어드바이저)시장] 사람없이 로봇이 투자자문·자산관리 … 5월중 상용화”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6402](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6402) 2017.10.31. 최종검색)

핀테크 유형	일시	주요 내용
투자 관리	2017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카오뱅크가 27일 공식 출범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으로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은산분리'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다 아직은 시중은행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기엔 '채급'이 맞지 않다는 분석도 나옴</li> <li>• 당초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고객의 예금을 '사금고'로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설립됨.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정보기술(IT) 기업이 최대 주주인만큼 최대 주주가 은행의 규모를 키우고 싶어도 이 조항에 막혀 자본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은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li> <li>• 국회에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되 5년마다 재심사받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돼 있지만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법안 처리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sup>65)</sup></li> </ul>
	2017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국가들은 현재 대부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 처해 있어 이런 불확실성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처를 동아시아로 돌리게 함. 금융 펀더멘털이 동아시아에서 재조명될 것, 동아시아권에는 신용도가 낮아 전통적 금융권에 접근하지 못한 잠재력이 큰 기업과 고객이 있어 핀테크가 이들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할 것이고, 핀테크를 이용해 중국, 한국 등에 속한 중소기업들이 급속한 성장을 보여줄 것임<sup>66)</sup></li> </ul>
	2017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ICT 산업 간 M&amp;A 건수가 2010년부터 6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남</li> <li>• 2010년 223건에서 2016년 47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최근 금융산업과 ICT산업 간 M&amp;A 건수는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8.5%, 15.4% 증가함<sup>67)</sup></li> </ul>

65) 데일리한국 2017.07.27. “인터넷은행 성장 여부 ... ‘은산분리 완화’에 달렸다”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707/dh20170727152734138100.htm> 2017.10.31. 최종검색)

66) 시사저널이코노미 2017.09.21. “핀테크 투자 몰리는 한국 등 동아시아가 미래금융 주도”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4206> 2017.10.31. 최종검색)

67) 조세금융신문 2017.10.09. “급가속 하는 핀테크...금융-ICT 산업 간 M&A 6년간 두 배 증가”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9002> 2017.10.31. 최종검색)

이러한 논의들의 핵심은 사전규제 중심의 현행 금융법제와 Positive 규제적용 방식의 금융감독 체계가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을 기초로 하는 핀테크산업에는 그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핀테크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규제개선에 관한 수년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법 체계 전체를 Negative 규제 적용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표 7]에서 지적하고 있는 핀테크 실무상의 애로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감독 당국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온 바 있다. 단계적으로 현행의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신기술기반의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의 발전을 지원하고, 핀테크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규제적용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개선 연혁을 소개하고, 향후 규제·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정책의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

## 2.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개선 노력

### (1)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책임부담 명확화

2015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즉, i) 금융회사의 혁신적 서비스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제도들은 폐지하고, ii) 금융회사 자체 점검 내실화와 금융감독원의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iii) 사후 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

등을 권고·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사전규제 최소화 계획을 소개하였다.<sup>68)</sup>

또한, i)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ii)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책임 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조정하여 사고시 소비자 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며, iii) 유권해석·민원답변 등이 포함된 설명서(FAQ)를 제작·공개하는 한편, 핀테크 관련 비조치의견서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함께 공개하였다.<sup>69)</sup>

## (2)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를 통하여, 융·복합 규제 혁신 방안 중 IT와 금융분야에 대하여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i)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1억원)를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진입규제 완화 방침과 함께,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 방식의 규제 완화를 시도한 바 있다.<sup>70)</sup>

즉, 현행 법령상 허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출자 사례가 부족하거나 출자 가능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ii) 현행 법령상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가 가능한 금융회사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함을 명확화’하여 신사업 부문(금융 관련 SW 개발업체 내지

68) 금융위원회,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 결과-, 2015.1.27., 7면

69) 금융위원회,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 결과-, 2015.1.27., 8면

70) 금융위원회,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5.6., 2면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94&sch1=&sword=&r\\_url=&menu=7210100&no=3039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94&sch1=&sword=&r_url=&menu=7210100&no=30396) 2017.10.31. 최종검색)

제공업체, 금융데이터 분석업체 등)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 가능성을 열어준 바 있다.<sup>71)</sup>

이러한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을 통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은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기초 하에 출자가 가능한 사업범위와 핀테크 관련 매출비중 등의 기준을 도입하여 그 사업범위를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sup>72)</sup>

### (3) 유권해석 변경 사례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 30일 ‘15년 업무계획을 통하여 개선계획을 밝히고,<sup>73)</sup> “넓은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반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대면확인을 기초로 하는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실무해석을 변경하고,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증표확인’이 대면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확인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sup>74)</sup>

71) 금융위원회, 「국민편의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위의 자료, 2면.

72) 금융위원회, 「국민편의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위의 자료, 2면.

73) 금융위원회,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1.30., 3~4면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0414](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0414) 2017.10.31. 최종검색)

74) 금융위원회,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 2015.5.18., 1면(제3차 금융개혁회의 안건브리핑 자료-‘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표 8] 금융위원회의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sup>75)</sup>

## [참고] 유권해석 변경(안)

- (현행) 「금융실명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실명확인방식을 “금융회사가 거래자를 대면하여 실명확인증표상 사진 등과 비교함으로써 거래자와 실지명의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석
- (변경)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명 확인시 대면확인이 원칙이나, 대면하지 않아도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복수의 방식<sup>\*</sup>으로 확인 가능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예시<sup>1)</sup>

- ① 거래자로부터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받고 해당 증표의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
- ②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가 거래자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확인
- ③ 업무 제휴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아 확인
- ④ 거래자 명의로 다른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를 통해 확인
-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1) 필요시 은행연합회 주관 사전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예정

### 3. 금융당국의 규제·제도 혁신 관련 정책 방향성

금융위원회는 2017년 1월,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통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에 따른 상세 업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즉,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2단계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고, 혁신적 핀테크서비스 제공 및 국민자산 운용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sup>76)</sup>

다음의 [표 9]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에 따른 규제·제도 혁신 관련 추진 방향성과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75) 금융위원회,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 위의 자료, 12면의 표를 그대로 인용.

76) 금융위원회,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2017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 발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1.18., 90~93면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1677](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1677))

[표 9]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관련 업무추진계획<sup>77)</sup>

추진 계획	세부 분야	주요 내용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규제·제도 혁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그치지 않고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의 재설계 추진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부터 추진('17.2분기)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여부 검토 * 비조치의견서, 기존 금융회사에 테스트 위탁, 기존 금융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관련 규제를 재검토('17.1분기) * 예 :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 방식 확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등
	신기술·금융 융합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에 대해 국제 흐름보다 한 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 ○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16.12월 은행·금투업권 출범)*에서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금년중 참가회사간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파일럿 서비스 개시 추진 ** (은행)외국환 지정거래은행 변경절차 간소화, (금투)통합 인증 시스템 구축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 및 자금세탁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 마련('17.上)
	지원체계	핀테크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핀테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독·지원을 강화 ○ 핀테크 산업 성장단계에 맞추어 감독·지원을 정교화·체계화*하고 핀테크지원센터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17.1분기)

77) 금융위원회,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 위의 자료, 90~93면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임

추진 계획	세부 분야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초기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등 지원 → 빠른성장 : 거래전전화, 소비자보호 강화</li> <li>**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교육·지원 강화,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정보제공·지원 강화 등</li> <li>○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지원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17.1분기)</li> <li>* 핀테크지원센터, 금융회사별 핀테크지원기구, 유관기관(성장사다리펀드, D.Camp) 등</li> <li>○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5천억원(산은·기은) → ('17~'19년) 3조원(산은·기은·신보·기보·성장사다리펀드)</li> </ul> </li> </ul>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제공	바이오페이 도입	<p>실물카드 없이 생체정보(예: 손바닥 정맥)만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거래방식 시범도입('17.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규 정비·유권해석* 등을 통해 도입기반 마련 후, 의향 있는 카드사부터 시범운영하여 안전성·편의성 등을 검증</li> <li>* 예) 법규해석상 생체정보 인증을 신용카드 제시로 보아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지, 서명·비밀번호 입력 등 추가적인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검토 등</li> </ul>
	인터넷전문은행	<p>24시간 이용가능한 「내 손안에 뱅크」인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영업개시(케이뱅크 '17.2월/카카오뱅크 '17.2분기, 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서비스모델) 휴대폰·이메일 기반 간편결제·송금,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 음원·게임포인트 등 다양한 이자 제공, 온라인 기반 자산관리서비스 등</li> </ul>
	계좌통합 관리 서비스 고도화	<p>이용채널·대상계좌를 확대('17.4월)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서비스 고도화('17.1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accountinfo.or.kr) → 은행창구 및 모바일 확대/ (대상계좌) 잔액 30만원계좌 → 50만원 / (이용시간) 09~17시 → 09~22시</li> </ul>

추진 계획	세부 분야	주요 내용
	보험다모아 개선	<p>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실제 보험료 조회기능과 인터넷 포탈 간 연계서비스를 개시('17.7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방향 소통을 위한 보험상담 게시판 개설, 소비자에 유익한 보험정보 안내 강화 등 홈페이지 개선 추진('17.4분기)</li> </ul>
	비대면 실명거래 확대	<p>비대면 실명확인의 적용대상 확대 및 시각장애인·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17.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장애인·고령자의 APP 접근성에 관한 권고규정 신설</li> </ul>
	빅데이터	<p>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분석·지원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역량 제고('17.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정원에 신용표본연구 DB*를 구축하여 핀테크, 창업기업 등에게 빅데이터 컨설팅을 제공하고, 학계·공공기관 등의 활용 지원</li> <li>* 신정원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전체의 2% 수준으로 샘플링한 후 비식별처리한 데이터</li> <li>○ 금융회사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수 활용사례를 전파·공유하고, 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li> </ul>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추진전략	<p>우선 기존 금융업법 규제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법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17년중 1단계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❶ 위탁테스트: 기존 금융회사가 미인가 기업을 대신하여 미인가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행</li> <li>❷ 비조치의견서: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한 영업에 대하여 적용 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적용대상 규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제재를 면제</li> <li>❸ 지정대리인: 미인가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시범사업을 수행</li> </ul> <p>○ 1단계 테스트베드의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방식의 테스트베드 확대 시행방안 검토</p>

추진 계획	세부 분야	주요 내용
	방안별 추진계획	<p>위탁테스트, 비조치의견서 방식을 먼저 가동('17.上)하고, 지정대리인 방식도 업무위탁규정 개정 후 시행('17.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은·기은 내에 위탁테스트 전담 지원인력을 두고,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서비스 개발업체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위탁테스트 개시('17.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핀테크지원센터 및 핀테크협의회 등과 함께 위탁테스트 활성화 협의체 운영</li> </ul> </li> <li>○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법령에 따른 제재를 면제하는 형태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적극 유도('17.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테크업계 등을 통해 발급수요를 일괄 조사하여 신속 검토</li> </ul> </li> <li>○ 미인가 업체가 금융회사의 지정대리인이 되는 경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개정, '17.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대리인 자격을 갖춘 혁신적 신금융서비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시 금융위 내부 또는 민간자문기구로 분과별 심의위원회 운영</li> </ul> </li> </ul>
국민의 자산운용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p>로보어드바이저*('17.5월 업무개시), 독립투자자문업**('17.3월 등록요건·절차 신설)을 통해 對국민 금융자문서비스 품질 향상 기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스트베드(1차 : 1~4월, 2차: 2분기) 통과 후, 대고객 서비스 실시('17.5월)</li> <li>** 독립투자자문업 제도개선을 마무리('17.3월)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에서 서의 조기정착 유도('17.上)</li> <li>○ 금융상품의 자문부터 구매까지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에 따른 구매시 투자권유절차* 정비('17.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가 자문업자에게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금융상품을 단순구매하는 경우,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등의 적용을 배제</li> </ul> </li> </ul>

추진 계획	세부 분야	주요 내용
	ISA	출시 1년('17.3월) 성과평가 후, ISA 세제혜택 확대,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17.下, 관계부처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한도(현행 200~250만원)를 확대하고, 가입대상도 은퇴 노령층 등으로 단계적 확대</li> <li>○ 결혼·주택마련 등 긴급 생활자금 수요를 위한 중도인출 허용 등</li> <li>* ISA 세제혜택을 현행대비 2배 확대, 중도인출 허용, 만60세 이상 노령층 가입허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 중</li> </ul>
	펀드시장 활성화	성과보수 펀드 출시('17.1분기), 우체국·상호금융 펀드판매 허용 및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 확대 추진('17.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액티브 ETF, 창업·벤처 PEF 등 다양한 펀드상품 출현 도모('17.1분기)</li> </ul>
	개인연금법 제정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개인연금법 제정*('17.2분기 국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 도입, 투자 일임형 연금상품 도입</li> </ul>
	고령화 대비 보험	신체적·경제적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자의 건강 및 생활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개선* 추진('17.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노후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장기 간병보험 표준화 유도 등</li> </ul>

## 제2절 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도입

### 1. 금융감독 분야 시범사업의 필요성

정부는 2014년부터 IT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산업에 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산업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법규는 금융업에 적용되는 사전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핀테크산

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금융은 경제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기본적인 제도로서 그 규제체계가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야만 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당국은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제정한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권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지원정책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행 금융법제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국내의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환경이나 금융감독 적용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2015년 도입이 논의된 “Regulatory Sandbox(규제안전공간)”를 운용함으로써 핀테크기업들이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의 도입에 앞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금융감독 시범사업을 구축하고 있다.<sup>78)</sup>

이에, 금융위원회도 2015년부터 영국의 “Regulatory Sandbox(규제안전공간)” 제도 도입에 관심을 기울이고 영국의 제도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2.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금융위원회는 2017년 3월 20일 “4차 산업혁명 대응 금융분야 T/F 제1차회의 안건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에 따른 규제의 적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감독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이러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의 내용 전체를 소개한 것이다.<sup>79)</sup>

78) FCA, 「Regulatory Sandbox」, 2015.11.([www.fca.org.uk / firms / regulatory-sandbox](http://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  
(url: <https://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 2017.10.31. 최종검색)

79) 금융위원회,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4차 산업혁명 대응 금융분야 T/F 제1차 회의 안건), 2017.3.20., 1~12면 전체 내용 인용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1798](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1798) 2017.7.14. 최종검색).

## I

## 도입 필요성

□ IT·융합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전통적 금융의 영역에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이 가속화

○ 예를 들어, **Fin-tech**는 이제 지급결제 뿐 아니라 대출, 투자, 자산관리서비스 등 금융의 모든 영역으로 외연을 확장중

○ 기존 금융서비스가 갖지 못했던 ①신속성, ②확장성, ③탈공간성 등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의 양과 질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

① 신속성 : 새로운 정보처리, 지급결제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속도와 연결성을 확대(예 : 비트코인 활용 해외송금)

② 확장성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서비스 공급비용 절감으로 기존에 고소득자 중심으로 공급되던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확대(예 : 로보어드바이저)

③ 탈공간성 : 새롭고 편리한 보안기술 및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예 : 인터넷은행)

□ 그러나, 새로운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안착하는 데 있어 기존 금융규제와의 정합성 충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

○ 기존 규제들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내용을 포괄하기 어려움\* 경우가 많고, 규제 변경도 통상 장시간이 소요

\* (예) 여전법은 여전협회의 보안성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카드결제기 등록을 허용하나, 모바일 카드결제기의 경우 보안성심의 기준 자체가 부재

○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돼 금융산업 혁신이 지연되는 결과

□ 따라서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할 필요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일정기간 테스트”하도록 허용하는 것\*

\* (예)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핀테크업체가 인허가 취득 없이 일정기간 시범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해외 도입사례, 기존 금융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한국형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II 규제테스트베드 해외 도입사례

### 1 개 괄

□ (도입 배경)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확산에 따라, 금융서비스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경쟁력 유지 및 강화 차원에서 테스트베드 도입 논의 개시

\* 영국, 싱가포르, 호주

□ (국가별 추진 현황) 영국을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등이 현재 금융규제테스트베드를 시행하거나, 추진안을 발표한 상황

○ (영국) '15.11월 금융행위감독청(FCA)이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 발표

- 업체별 심사를 거쳐 '16.11월 1차 샌드박스 지정업체 24개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FCA 보육 하에 테스트베드 운영중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소관 규정과 관련하여 제한인가<sup>①</sup>, 대리인<sup>②</sup>, 규제 미실시<sup>③</sup> 제도 운영중

① 제한인가 : 한정적 영역의 금융서비스만을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운용에 필요한 요건만 충족하면 licence 지급

② 대리인 : 금융서비스업 미인가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 특정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③ 규제 미실시 :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혁신의 경우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관련 규제 적용 면제 가능

- 추가로 전면적인 인허가 면제\*를 허용하는 **Regulatory Sandbox**를 '16.12월 도입

- \* 일부 금융상품(파생상품 및 非시장성상품 제외) 관련 자문 및 투자중개서비스(고객 수 100명 이내)에 대해서 정식인가 없이 1년 내 테스트 허용
-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핀테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가이드라인을 발표’(16.7월)’했으며, 업계 피드백을 거쳐 정식도입 예정

## 2 국가별 적용 사례

### 가. 도입 방식

#### ① 기존 금융업자 대상

##### ① 개별지도 (individual guidance, 영국)

- 금융회사가 도입하고자 하는 신규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금융규제 적용 기준에 대해 질의하면 이에 대하여 개별 유권해석 제공

##### ② 특례 적용 (waiver, 영국)

- 특정 금융회사에 대하여 신규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금융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변경 적용

##### ③ 비조치의견서(영국) 및 규제 면제(industry-wide relief, 호주)

- (비조치의견서) 신규 금융서비스 관련 특정 행위가 감독당국의 제재 대상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회신

※ 제재부과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재량범위가 넓은 영국·호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금융법에서 제재요건, 부과여부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한 규제면제 여지가 제한적

- (규제면제)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혁신의 경우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자에게 관련 규제 적용 면제 가능

#### ② 미인가 사업자 대상

##### ① 한정인가 (tailored authorization, 영국-호주)

- 전체 인가요건 중 테스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만 충족하면 한시인가를 부여하여 영업행위를 수행 가능

**② 지정대리인 (appointed representative, 영국-호주)**

- 인가 취득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원하는 미인가 기업에 영업행위 대리권한 부여

**③ 인허가 면제 (licencing exemption, 호주)**

- 일부 금융상품(파생상품, 비유동성상품 등 제외) 관련 자문서비스 및 투자중개서비스에 대해서 정식인가 없이 서비스 테스트 허용

**나.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 요건**

일반적으로 영업 지역<sup>①</sup>(scope), 서비스 혁신성<sup>②</sup>(genuine innovation), 소비자혜택<sup>③</sup>(consumer benefit), 테스트 필요성<sup>④</sup>(need for sandbox), 준비성<sup>⑤</sup>(ready for testing)의 5요소를 반영하여 심사·선정

- \* ① 자국 금융시장 내에서 주된 활동을 목표로 하는지
- ② 기존에 상용화된 서비스에 비해 충분한 혁신성을 지니는지
- ③ 금융소비자에게 어떠한 직간접적 수혜를 제공하는지
- ④ 새로운 금융상품을 종전의 규제 틀에서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지
- ⑤ 신청기업이 실제 상황에서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 소비자보호 장치**

(영국) 사전에 확정한 소비자군 내에서만 테스트 사업을 실시 가능하며, 적절한 소비자 보상체계 마련 의무

- ① (일반 소비자) 피해 발생시 해당기업 및 금융 ombudsman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기업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금융서비스보상기금(정부기금)에 구제 신청 가능**
- ② (전문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테스트사업 참여 가능**

- (호주)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은 반드시 ASIC 분쟁조정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며, 소비자보상제도에 대한 공의의무 지님

라. 테스트베드 사업 종료 후 피드백

- (영국) 테스트베드 기업은 매주 진행보고서 및 테스트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FCA에 제출
  - FCA는 보고서 검토 후 테스트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미인가회사) 및 해당 서비스 정식출시 허용(기인가 기업) 여부 결정
- (싱가포르) MAS가 해당 테스트베드 운영 결과를 승인할 경우, 해당 업체는 해당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장 출시 가능
- (호주) 참여기업은 테스트베드 기간 중 ASIC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식, 서비스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서 제출 의무

< 국가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추진방식 비교 >

구 분	영 국	싱가포르	호 주
도입 시기	'15.11월 ('16.7월 1차 사업 시행)	'16.7월 시행방안 발표	ASIC 소관법률 관련 규제면제 제도 기시행중 (Regulatory Sandbox는 '16.12월 도입)
적용 대상	기존 금융회사 및 미인가 기업	기존 금융회사 및 미인가 기업	기존 금융회사 및 미인가 기업
도입 방식	① 개별지도 ② 특례적용 ③ 비조치의견서 ④ 제한인가 ⑤ 지정대리인	규제 면제 (소비자보호 규제는 유지)	① 제한인가 ② 대리인 ③ 규제면제 ④ 인허가 면제 (Regulatory Sandbox)

구 분	영 국	싱가포르	호 주
소비자 보호	① 테스트 실시 대상 소비자群을 사전에 한정 ② 소비자 피해에 대비한 보상체계 사전마련	소비자보호 규제는 완화 없이 그대로 적용	① 증권위원회(ASIC) 분쟁조정제도 의무 가입 ② 소비자 보상체계에 대한 공시의무
사업종료 후 사후조치	FCA의 사후평가 후 정식인가 및 서비스 출시 허용여부 결정	MAS 승인시 테스트대상 서비스 정식 출시	테스트 결과 사후보고 의무 (정식인가 허용 여부 등은 미확정)

### 3 평 가

□ 아직 가시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해외 핀테크 업계에서는 현행 방식의 규제 테스트베드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존재

① 기존의 금융업자들이 테스트베드 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대여나 상호거래 등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테스트 성공이 어려움

➔ 기존 금융업자들의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필요

② 현행 개별사업·솔루션 대상 테스트베드는 시행 효과가 특정 업체에 한정되어 업역 전반의 서비스 혁신에 기여하지 못함

➔ 상품 내용, 소비자군 등을 한정하는 것을 전제로 업역 전반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테스트베드도 검토 필요

③ 테스트베드 종료 후 해당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업역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서비스가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될 가능성 높음

➔ 테스트베드 결과 검증된 규제완화 사항은 본 규제에 반영하여 테스트베드 규제 환경을 Normal Standard로 만들 필요

### Ⅲ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국내 도입방안

#### 1 도입현황 및 추진전략

##### 가. 현황 및 한계

- 우리나라와 테스트베드 도입국가들과의 법체계 차이를 고려할 때 외국의 사례를 국내에 즉시 도입하기는 어려운 측면
  - 원칙 중심 법체계를 택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법에서 원칙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규제 및 인허가요건 적용여부는 감독당국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테스트베드 도입이 용이
  -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중심 법체계에서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금융규제의 요건과 부과여부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부여할 수 있는 재량 여지가 매우 제한적
- 따라서, 현재는 금융서비스를 실제 금융시장과 유사한 가상환경에서만 사전 테스트할 수 있는 **Virtual Test-Bed**만 가동중
  - ① 핀테크 오픈플랫폼 : 신규 핀테크 서비스가 코스콤, 결제원 등의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가상 시스템을 이용해 테스트
  - ② 로보어드바이저(RA) 테스트베드 : RA가 가상 시스템 내에서 일정기간 실제 자금을 운용토록 하여 알고리즘의 안정성 테스트
 ⇒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테스트베드 도입을 추진

##### 나. 추진 전략

- 우선,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법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추진
  - \* ①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② 지정대리인 ③ 비조치의견서

□ 그 외의 방식\*들은 감독당국의 폭넓은 재량이 필요하여 현행 금융업법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필요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당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후 추진

\* ④한정인가 부여 ⑤특례 적용 ⑥규제면제 ⑦ 인허가면제

## 2 추진과제

### (1) 新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 가. 운영방식

□ (개요) 기존 법령상에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新금융서비스\* 영역을 대상으로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시범영업 허용

○ 비조치의견서 발급요건 중 2호 요건\*(기존법령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시 비조치의견서 발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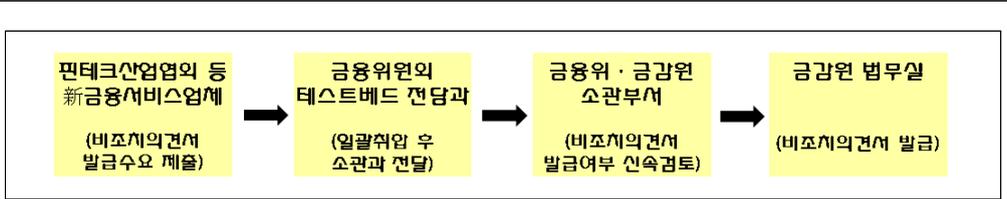
\* 법령등의 제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4-2호)

□ (필요조치) 현행 금융규제운영규정(금융위훈령) 상 비조치의견서 제도 통해 즉시 시행 가능

□ (추진체계) 테스트베드 전담부서에서 테스트베드 비조치의견서 전용 One-Stop 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한 검토 및 발급을 지원

○ 테스트베드 전담부서에서 핀테크산업협회 등과 협의하여 테스트베드 관련 비조치의견서 발급수요를 일괄 취합

○ 테스트베드 전담부서와 권역별 소관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회신



- (후속조치) 테스트베드 시행 성과를 점검한 후 필요시 법령 개정을 통해 서비스 정식도입을 위해 필요한 규제체계 정비

나. 시행 선도 사례 : ① 모바일 카드단말기 서비스

- (현황) 오프라인 카드결제단말기 대신 스마트폰에 깔려져 있는 App을 카드결제 기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출시수요 존재\*

- 상용화시 영세자영업자 등 오프라인 카드단말기 설치비용이 부담스러운 판매자들이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규제애로사항) 여전법(§27의4)에 따라 카드단말기는 여전협회가 정하는 기술 기준에 맞추어 여전협회에 등록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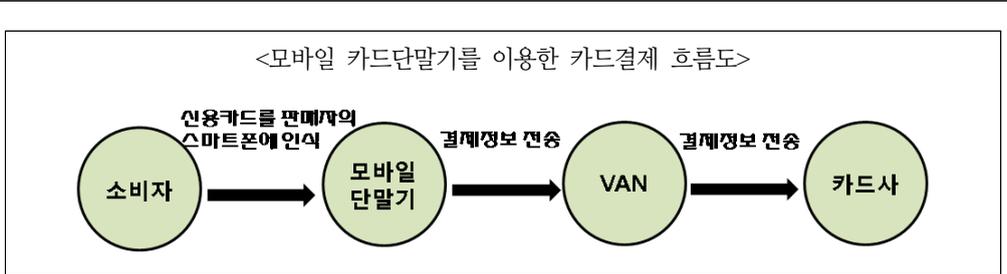
- 그러나, 현재 여전협회 기술 기준은 오프라인 기기의 검증과 관련한 기준만 정해져 있어 App 기반 카드단말기 인증이 불가능

⇒ 스마트폰 카드단말기는 여전협회에 등록할 수 없어 이를 활용한 카드결제서비스 제공시 여전법 위반 문제 발생

※ 단말기 인증이 안 되므로 VAN사와의 결제망 연결도 불가능

- (테스트베드 운영방안) 모바일 카드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서비스를 일정한 요건\* 하에 제공하는 경우 여전협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법상 제재 대상이 아님을 회신

\* 비조치의견서 신청시 서비스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회신방향 결정



- (소비자보호) 결제정보 전송오류 등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테스트 베드 시행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 사고발생시 여전법상 카드단말기사업자와 동일한 제재조치 부과
- (후속조치) 시범영업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등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모바일 카드결제서비스 인증을 위한 기술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여전법령에 반영 검토

**(2)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가. 운영방식

- (개념) 미인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하여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
- (필요조치) 별도 법개정 없이 즉시 추진 가능
- (추진체계) 산은·기은 등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산업협회 간에 위탁테스트 활성화 실무협의체 구성 (4월중)
  - 핀테크산업협회가 업계의 위탁테스트 희망수요를 수렴하여 산은·기은 등에 전달하여 상시 협의체제 구축
- (사후조치) 시행 성과를 고려하여 서비스 개발업체들이 직접 신규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완화 검토

나. 시행 선도 사례 : ①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 서비스

□ (현황) 피싱 등 신종사기거래의 경우 고객이 자의로 상대방에게 자금을 이체하게 되므로 일단 이체를 한 후에는 권리구제가 어려움

○ 이에 일부 핀테크 업체는 고객이 수취인 계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계좌의 사기거래 이용 이력을 보여주어 이체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프로그램 개발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 서비스 예시>




출금계좌번호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 예금주명	이체금액	수수료	수정	삭제
646-000000-00-000	기업은행(003)	123-000000-00-000	홍길동	1	0	수정	삭제
합계금액				1 원	0 원		

※ 입금은행 계좌번호는 전자금융 피해이력이 존재합니다. 피해이력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피해이력 열람하기]  
기업은행은 고객님의 전자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 피해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규제애로사항) 금융실명법(§4)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위수탁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금융거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불가능

○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고 금융회사와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핀테크 업체는 은행 등으로부터 고객의 계좌이체 시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없음

⇒ 은행 등으로부터 고객의 계좌이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야 고객의 사기입금 피해를 사전에 방지 가능

□ (테스트베드 운영방안) 사기거래방지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정책금융기관(예시)에게 프로그램 사용 권한을 위탁

- “금융회사등”인 정책금융기관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사기계좌에 대한 이체 여부 사전확인

□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프로그램을 위탁 사용하는 금융회사가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 부담

- 금융회사는 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사후 구상청구 가능

### (3)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 (개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가 금융회사의 “지정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

□ (필요조치) 금융회사가 인허가받은 본질적 업무를 지정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근거 명확화 ('17.하, 업무위탁규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가칭)혁신적 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i) 금융회사는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혜택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심의하여 선정하는 자(=지정대리인)”에게 본질적 업무의 수행 권한을 위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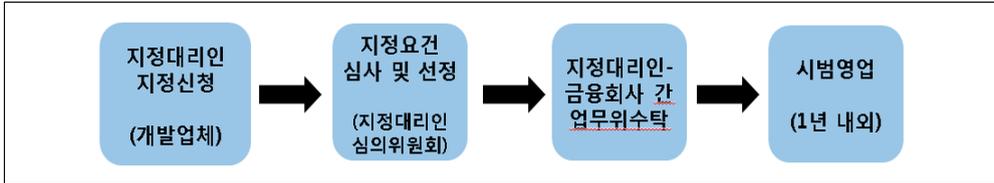
(ii) 위탁기간(예: 최대 2년) 및 업무위탁 범위(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는 사전에 한정하여 기존 인허가 체계와의 충돌 최소화

□ (추진체계) 금융위·금감원 소관부서 또는 민간 전문인력으로 “지정대리인 요건 심의회” 운영

- 지정대리인 희망업체가 테스트베드 참여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게 하고, 심의회 검토\*를 통해 지정대리인 자격 확정

\* 검토요소 : 해당서비스의 혁신성, 테스트베드 시행 필요성, 소비자편익 기여도, 업체의 준비상황(업무위탁 파트너 구비여부) 등

- 심의통과 업체는 지정대리인 자격으로 기존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본질적 업무 수탁 후 시범영업 진행



- (후속조치) 테스트 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범영업 분야와 관련한 인허가 요건 또는 규제체계 개편 등 검토 가능

### 3 테스트베드 시행시 소비자 보호

- 금융소비자群을 한정하여 테스트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테스트베드 사업임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
- 테스트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분쟁조정 및 보상 절차 등을 진행 가능
  - 테스트베드 수행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발생시 원활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함

### IV 향후 추진계획

-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방식의 경우 핀테크산업협회 등과 협의하여 시행수요를 취합하는대로 즉시 시행(6~7월)
- 지정대리인의 경우 업무위탁규정 개정을 완료(6월)한 후 지정대리인 심의회를 구성하여 지정절차 완료 후 개시(4분기중)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17.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조치의견서 발급수요 일괄취합 (이후 상시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테스트 활성화 협의체 가동(산은/기은/핀테크 산업협회 등)</li> </ul>	
'17.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괄취합 후 권역별 소관부서 전달</li> <li>소관부서 검토 후 발급여부 결정</li> <li>비조치의견서 발급 사업 영입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테스트 희망수요 취합 및 전달(핀테크 협의회→ 산은/기은 등)</li> <li>위탁테스트 시행 실무협의(산은/기은↔ 테스트 희망업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위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li> </ul>
'17.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테스트 방식의 시범영입 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위탁규정 개정</li> <li>지정대리인 요건 심의기구 개설</li> <li>지정대리인 신청 및 심의·지정</li> </ul>
'17.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대리인과 금융회사 간 업무위탁협약 협의</li> <li>지정대리인방식 시범영입 개시</li> </ul>

### 3.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의 의의와 문제점

####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와 해외 Regulatory Sandbox의 개념 비교

금융위원회가 2017년 3월 20일 발표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에서는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할 필요’에 대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일정기간

테스트”하도록 하는 것<sup>80)</sup>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영문표기를 “Regulatory Sandbox”로 표기함으로써 본 제도의 기원이 영국의 Regulatory Sandbox 제도에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해외 사례로는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의 향후 제도 운영 결과도 지속적으로 참고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에서는 “국가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추진방식”에 대하여 영국이 개별지도, 특례적용, 비조치의견서, 제한인가, 지정대리인 방식을 도입한 것과 호주가 제한인가, 대리인, 규제면제, 인허가 면제를, 싱가포르가 규제면제를 도입한 것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해외 제도 운영방식과 국내 도입방안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 테스트베드 도입국가들과의 법체계 차이를 고려할 때 외국의 사례를 국내에 즉시 도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밝히고, ‘원칙 중심의 법체계를 택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법에서 원칙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규제 및 인허가 요건 적용여부는 감독당국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테스트베드 도입이 용이’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Virtual Test-Bed’만 가동 중임을 밝힌 바 있다.<sup>81)</sup>

## (2) 테스트베드 운용 사례

### 1)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는 총42개 알고리즘이 참여하여 사전심사, 본심사, 최종 심의를 거쳐 28개 알고리즘이 통과된 바 있으며, 이렇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5개 업체는 2017년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제17차 핀테크 데모데이”에서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자산 관리서비스를 소개하고 시연하기도 하였다.<sup>82)</sup>

80) 금융위원회,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4차 산업혁명 대응 금융분야 T/F 제1차 회의 안건), 앞의 자료, 1면.

81) 금융위원회,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4차 산업혁명 대응 금융분야 T/F 제1차 회의 안건), 앞의 자료, 6면.

82) 금융위원회, 『제17차 핀테크 데모데이』 및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 5. 31., 1~3면

아래의 [표 10]은 로보어드바이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업체 중 시연에 참가한 5개 업체의 주요 서비스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10]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주요 업체의 서비스 내용<sup>83)</sup>

업체명	서비스 개요
아이로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로보: 1대1 맞춤형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li> <li>◦ 투자자의 현재 재무상태와 투자성향에 적합한 자산 비중을결정하여 주식과 채권에 직접 투자하고 리밸런싱하는 자산관리 서비스</li> </ul>
와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Robo : 글로벌자산배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li> <li>◦ 투자자의 기대수익과 위험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주식,채권, 상품 등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의 분석기법을활용하여 투자하는 글로벌자산배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li> </ul>
빅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GBOT : 자문형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li> <li>◦ 투자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추천정보를 선택하여 투자할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증권사연계, 리밸런싱알람 정보 및 회원 간 멘토-멘티매칭으로학습형커뮤니티 환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li> </ul>
인텔리퀀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Qon : 개인투자자를 위한 지능형 투자관리서비스</li> <li>◦ 투자자별로 최적화된 투자관리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DIY 투자 플랫폼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li> </ul>
디셈버앤컴퍼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li> <li>◦ 투자 유니버스 선정부터 매매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있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별로 성향과 필요에 따라 서로다른 포트폴리오가 설정되는 시스템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li> </ul>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제17차핀테크&r\\_url=&menu=7210100&no=31897](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제17차핀테크&r_url=&menu=7210100&no=31897) 2017.10.31. 최종검색)

83) 금융위원회, 「제17차 핀테크 데모데이」 및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위의 자료, 7면.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robot)과 투자자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프로그래밍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sup>84)</sup>를 말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17년 5월 8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을 통하여 투자자문업 활성화 관련 사항으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 세부요건 규정(제4-73조의 2)’을 마련하여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유지·보수 전문인력 확보, 편중 투자자문금지, 테스트베드 통과 등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였다.<sup>85)</sup>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규정
<p><b>제4-73조의2(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활용)</b>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이 하나의 종류·종목에 집중되지 아니할 것</li> <li>2.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투자자문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li> <li>나.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고려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li> </ol> </li> <li>3.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별표 29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둘 것</li> <li>4.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코스콤의 지원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요건 심사 절차를 거칠 것</li> </ol>

84) 금융위원회, 『제17차 핀테크 데모데이』 및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앞의 자료, 2면.

8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16호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 금융위원회, 2017.5.8.

([http://www.fsc.go.kr/known/law\\_noti\\_view.jsp?menu=7410400&bbsid=BBS0081&no=33766](http://www.fsc.go.kr/known/law_noti_view.jsp?menu=7410400&bbsid=BBS0081&no=33766) 2017.10.31. 최종 검색)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9.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교체하는 행위. 다만, 기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단순 수정, 개선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78조(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

10.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유지·보수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4-78조의2(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Open-API 테스트베드**

2015년 1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Open API와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상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로서의 Test-Bed를 더한 개념으로서의 ‘핀테크 오픈 플랫폼’ 개소를 알린 바 있다. 즉, 핀테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내부의 서비스를 표준화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 이를 개발자에 제공시 앱개발 기간이 대폭 단축 될 수 있음)와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와 시험 인프라로서의 Test-bed를 더한 개념으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개설한 것이다.<sup>86)</sup>

86) 금융위원회, ‘핀테크 서비스 개발, 쉽고 빨라진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 12. 15., 1면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0795](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0795) 2017.10.31. 최종 검색)

이러한 핀테크 오픈 플랫폼에서는 ‘자본시장 핀테크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하여, 코스콤 담당 직원들이 상주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돕고, 핀테크 기업들의 회의 장소 및 입주 공간까지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sup>87)</sup>

이처럼 금융권 공동 Open API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핀테크 기업들은 송금, 계좌조회, 시세조회 등 각각의 기능별로 표준화 된 API를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시스템 연동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Open API 플랫폼 구축에 참여한 금융회사 전체(16개 시중은행, 18개 주요 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와 연동이 가능한 핀테크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sup>88)</sup>

### (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의 국내법적 한계와 입법론적 검토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경우에는 구현방식과 운용의 범위 및 대상참가기업의 폭, 나아가 테스트베드에 적용되는 금융감독조치의 종류와 형태도 매우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구현방식인 Virtual Test-Bed의 경우에도 영국의 코호트(cohort) 방식과 같이 다양한 핀테크분야의 기술업체를 회차별로 다양하게 참가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i)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나 ii) 핀테크 오픈플랫폼과 같은 특정 분야의 가상환경에 대하여서만 테스트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어서 향후 적용분야 확대나 운영방식 상의 보완이 절실하다.

국내법상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이 있으며, 해당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법에서 정한 인가, 허가,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따라서, 새로운 핀테크기술 적용을 통한 Solution의 구현이나 관련 금융업무 실시의 경우에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법적 책임이 완화될 수도 없다는 실체법 적용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87) 금융위원회, ‘핀테크 서비스 개발, 쉽고 빨라진다.’, 위의 자료, 2면.

88) 금융위원회, ‘핀테크 서비스 개발, 쉽고 빨라진다.’, 위의 자료, 2면.

현재 금융위원회가 도입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이러한 법리적인 한계를 기초로 하여, 실정법 위반이 아닌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조치 방식의 변화를 통한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형태로만 운용하고 있을 뿐이다. 즉,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감독조치는 비조치의견서,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조적 조치로서 행정지도나 유권해석과 같은 행정행위를 통하여 금융감독상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현재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용방식이나 적용되는 금융감독 조치의 범위는 영국 등의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Regulatory Sandbox 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금융감독 시범사업으로서 운용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용방식의 범위를 확대·조정하고, 해당 금융감독조치의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완결성이 높은 체계화된 규정들을 도입함으로써 핀테크분야에 적용되는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용을 통하여 지적된 법규제상의 문제점을 감독당국과 테스트베드 참가기업, 참가소비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절차를 확보함으로써 핀테크분야의 발전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금융감독당국의 권한과 금융감독조치의 유형별 규정 등을 도입하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각 관련 절차별로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금융산업 관련 제도에 탄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국가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관련 법률의 제·개정 절차에서는 다양한 관계자 간 논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아래에서는 해외 Regulatory Sandbox 제도 운용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가능한 금융감독조치의 범위를 검토하고, 각 관계자의 관련 입법 수요를 조사함으로써 새로운 규정의 입법 형태를 모색하는 한편, 실제법적으로 도입 필요한 요소들을 검토하도록 한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3장 해외의 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 제1절 영국
- 제2절 호주
- 제3절 싱가포르
- 제4절 말레이시아
- 제5절 홍콩
- 제6절 시사점



## 제3장

# 해외의 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는 영국이 핀테크육성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규제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운용 중인 “Regulatory Sandbox” 제도에 유래를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영국을 시작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Regulatory Sandbox” 제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금융감독 시범사업 내지 금융감독 조치의 범위와 형태에 대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절 영국

### 1. 도입 배경 및 제도의 장점

영국은 2007년 ‘원칙중심규제(PBR: Principles-based Regulation)’로 전환하면서,<sup>89)</sup> 2015년 11월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사업모델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의 도입은 2014년 “Innovation Hub”에서 시작된 핀테크 육성사업(Project Innovate)과 연계된 규제 혁신의

---

89) FSA, 『Principles Based Regulation: Focusing on the Outcomes that Matter』, 2007.4(Julia Black, “Forms and Paradoxes of Principles Based Regulation”, 『LSE Law, Society and Economy Working PaPers 13/2008』,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aw Department, 2008, pp. 1~2 재인용)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영국 FCA가 2015년 공개한 『Regulatory Sandbox』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작된 핀테크 육성사업(Project Innovate)의 경험을 통하여 ‘안전공간(Safe Space)으로서의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을 운용함으로써 신기술기반사업의 참가자들을 더욱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90)</sup>

그 연혁을 상세히 살펴보자면, FCA는 소비자의 이익과 금융서비스의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Project Innovate를 시작하였으며, Project Innovate는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Project Innovate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혁신에 대한 장벽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관건이었던 것이다. 이에, 영국재무부는 FCA에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기업이 혁신적인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모든 정상적인 규제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상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및 위험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규제 샌드박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FCA가 밝히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기능은 경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익을 시장과 소비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i) 잠재적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ii) 시장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자금이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iii) 샌드박스 테스트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한편, iv) 샌드박스 내의 안전장치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테스트 하고 관리하여 혁신은 유지하면서도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FCA는 밝히고 있다.<sup>91)</sup>

국내에서는 이러한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 제도에 대하여 최초로 소개한 문헌으로는 2015년 12월의 김병덕, “영국 금융감독청의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 설치 및 시사점”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은 해당 문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영국의

90)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

91)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2.

Regulatory Sandbox 제도의 장점에 대하여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sup>92)</sup>

○ **Regulatory Sandbox** 의 장점

- 1)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장에 출시하는 시간 및 비용이 축소됨
- 2) 혁신적 사업자의 사업자금 조달이 용이해 짐
- 3) 더 많은 신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테스트가 가능함
- 4) 감독당국도 신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한 소비자보호 장치 구현을 위해 사업자와 상호 협의 할 수 있음
- 5)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미인가 상태 잠재적 사업자: 정식 사업인가를 받기 전에 개발한 사업모델에 대하여 시장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는 동시에 감독당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조기 안정화할 수 있음
- 6) 기존 금융회사: Regulatory Sandbox 내에서 일련의 테스트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감독당국이 향후 어떠한 감독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감독당국의 비조치의견서(No Enforcement Action Letters)를 발급받음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이 제거됨
- 7) Waivers 적용 : 영국의 FCA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샘플 테스트가 현행 감독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Regulatory Sandbox 내에서는 일정한 감독규정 유예(Waivers) 요건에 따른 샘플테스트를 허용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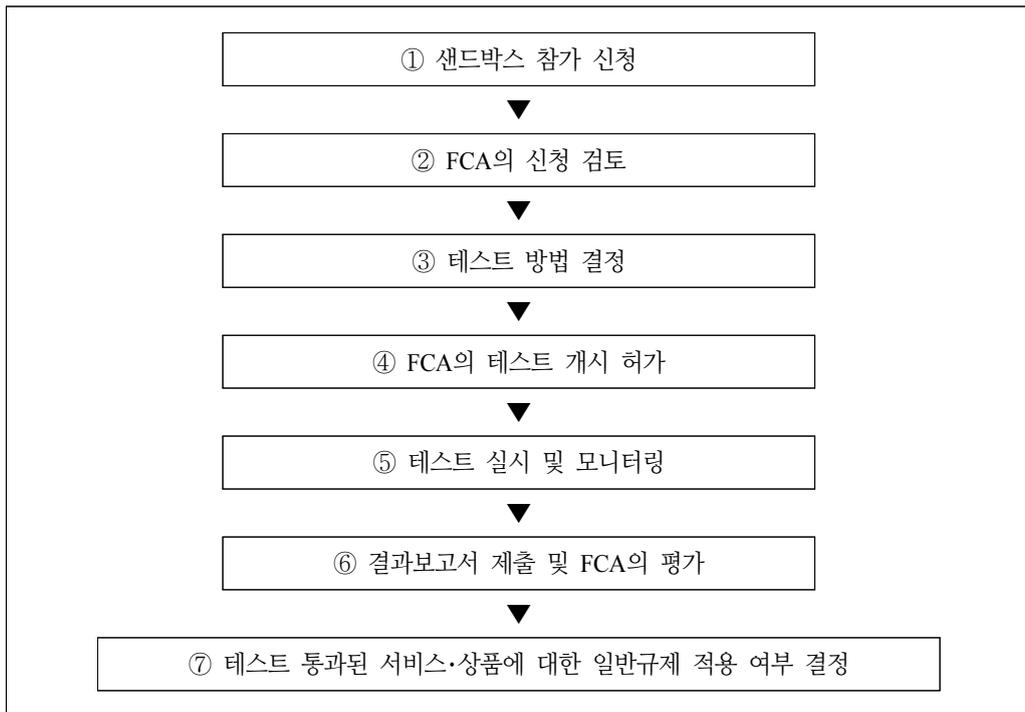
## 2. 참가 절차

Regulatory Sandbox 참가 절차는 ① 미인가 잠재사업자 또는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 테스트 용도의 신상품/서비스(solution)을 제안하면, ② 감독당국이 Regulatory Sandbox 참가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검사역을 배정한다. 그리고, ③ 감독당국은 기업과 샘플서비스, 대상 소비자군, 결과보고 방식, 소비자보호장치 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거치며, ④ 감독당국은 i) 대상 서비스의 혁신성, ii) 소비자 효용의 증대여부, iii) 테스트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⑤ 승인을 받은 기업은 Regulatory Sandbox 내에서 테스트를 실시하고, ⑥ 그 테스트 결과에

92) 김병덕, “영국 금융감독청의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 설치 및 시사점”, 『금융포커스』 주간 금융브리프 24권 49호, 금융연구원, 2015.12.19.~12.25, 8~9면

대한 보고서를 FCA에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⑦ 테스트가 통과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일반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실질적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sup>93)</sup>

[그림 3] 영국 혁신기업의 Regulatory Sandbox 참가 절차<sup>94)</sup>



### 3. Regulatory Sandbox 참가 요건

Regulatory Sandbox 참가 요건은 FCA Innovation Hub 지원 요건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 되는데,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발

93) 김병덕, “영국 금융감독청의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 설치 및 시사점”, 『금융포커스』 주간 금융브리프 24권 49호, 금융연구원, 2015.12.19.~12.25, 8~9면

94)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1.

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i) 목적 적합성과 ii) 진정한 혁신, iii) 고객 효용, iv) 샌드박스 참가에 대한 테스트 필요성, v) 적용대상 규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리스크 최소화 노력 등이 그것이다.<sup>95)</sup> 이처럼 샌드박스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공개하는 것이 ‘모든 비즈니스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진정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을 FCA가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96)</sup>

한편, FCA는 규제완화의 타당성을 조사 할 때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고려하는 바, ① (규제장벽)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 할 때 기업은 어떤 규제 장벽에 직면하며 그 규제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가? ② (안전조치) 테스트 중에 소비자를 적절하게 보호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안전조치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③ (법적안정성) 상품 및 서비스가 EU 법률 상 규제대상에 해당되어 FCA가 규제완화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sup>97)</sup>

FCA가 제시하는 이러한 타당성 조사 기준을 통하여 FCA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 하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유지하는 회사에 기존의 규제 장벽의 일부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관련 산업에 유용하다고 믿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규에 대한 정부 개정안 작업도 그 고려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미인가 사업자와 기인가 사업자 모두 Regulatory Sandbox 참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sup>98)</sup> 미인가 기업에 대하여서는 맞춤형 승인절차를 마련하며, 샌드박스 참여기업은 제한된 승인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러한 제한을 풀어 인가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요건을 적용하게 된다.<sup>99)</sup>

95) 금융투자협회, “英 Regulatory Sandbox의 도입 현황 및 시사점”, 8면.

96)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7.

97) FCA, 『Regulatory Sandbox』, 2015.11., p.3.

98) 노형식, “규제 안전공간 도입 해외사례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포커스』 주간 금융브리프 25권 42호, 금융연구원, 2016.11.26.-12.9., 12면.

99) 금융투자협회, “英 Regulatory Sandbox의 도입 현황 및 시사점”, 8-9면.

#### 4. Regulatory Sandbox 참가기업에 대한 FCA의 금융감독 관련 조치

##### (1) 미인가 사업자 - 한정인가

FCA는 미인가 사업자를 대상(option for unauthorization firms)으로 한정인가를 내릴 수 있다. 즉, 샌드박스 기업은 한정인가를 받고 제한된 인가로 테스트를 받게 되며, 기업이 완전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일반 인가를 받게 된다.

[표 11] 한정인가 제도의 장점 및 단점 비교<sup>100)</sup>

장 점	위험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인허가 절차보다 단시간에 한정인가를 받을 수 있음</li> <li>• FOS와 FSCS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li> <li>• 비록 한정인가이지만 투자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전히 인허가가 필요함</li> <li>• EU 법률과 관련된 규정은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li> <li>• FCA로부터 맞춤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li> </ul>

한정인가(tailored authorization or restricted authorization) 옵션은 인가의 일부 요건만 만족하면 그 자체에 권한이 부여 될 수 있어서 완전한 인가 승인을 신청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또한, 한정인가를 받은 회사가 완전한 형태의 영업 활동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만으로 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여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우선 테스트가 시작되기 전에 한정인가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EU 법규에 따라 한정인가 요건 설정에 FCA가 설정한 규제완화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에게는 상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 하기 전에 샌드박스 우산 옵션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FCA는 제안하고 있다.<sup>101)</sup>

100)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7.

101)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8.

그리고, 한정인가와 샌드박스 우산은 지급결제와 전자화폐 관련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미 지급결제와 전자화폐 관련 규정은 소규모 관련 회사들에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며 많은 면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샌드박스 내의 한정승인은 기존의 은행인가 옵션B<sup>102)</sup>를 대체하지 못 한다고 한다. 즉,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우회 방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오직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103)</sup>

즉, 한정인가는 샌드박스 내 테스트를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한시적으로 인가를 부여하여 영업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기업은 샌드박스 안에서만 한정인가를 통해 그들의 사업아이템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 (2) 인가 사업자(authorization firms and outsourcing arrangements)

인가 기업 및 인가 기업에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회사는 새로운 솔루션을 출시하려고 할 때 FCA의 반응을 중요시하게 된다. 따라서, FCA의 추가적인 금융감독 관련 조치를 활용하게 되면 일련의 테스트 활동과 관련된 감독 조치를 받게 되지 않을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가업체의 경우(option for authorization firms and outsourcing arrangements) 다음과 같은 내용의 FCA 금융감독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샌드박스 참가와 관련한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회사는 상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해보고 싶어하는 기존 사업자를 찾게 되면 이러한 금융감독 조치에 관한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sup>104)</sup>

102) Banking authorisation process 20140123 - FCA

103)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8.

104) 금융투자협회, “英 Regulatory Sandbox의 도입 현황 및 시사점”, 10~12면.

### ① 비조치의견서(No enforcement Action Letters(NALs))

FCA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거나 FCA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테스트 활동과 관련하여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No enforcement Action Letters)를 FCA로부터 발급받게 되면, FCA의 비조치결정에 따라 비조치의견서 발급시점부터 테스트 완료(중단 포함) 시까지 유효하다. 다만, 이러한 비조치의견서의 활용은 FCA의 감독조치에 따른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만 해석되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의무나 책임과는 무관하다. 비조치의견서는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부(CFPB; the US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sup>105)</sup>

### ② 개별 지침(Individual Guidance)

FCA는 특정기업이 실행하고 있는 테스트 활동에 적용되는 규정의 해석에 대한 개별 지침(Individual Guidance)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이러한 지침을 준수했을 때 FCA가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sup>106)</sup>

[표 12] 비조치의견서 및 개인지침 제도의 장점 및 단점 비교<sup>107)</sup>

장 점	위험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조치의견서 또는 개인지침을 받은 기업은 더 이상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명확성을 얻음</li> <li>• EU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음</li> <li>• FOS와 FSCS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권리포기 각서(disclaimers)가 필요함</li> </ul>

105)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9.

106)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9.

107)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7.

### ③ 감독규정 유예(Waivers)

특정 테스트 활동이 FCA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해당 기업이 감독규정 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CA는 자신의 권한 안에서 특정 규제를 유예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는 FCA 규제를 위반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FCA의 유예 권한은 EU에 의해 제한되며, FSMA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결제기관 등의 기업은 이러한 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표 13] 감독규정 유예(waivers) 제도의 장점 및 단점 비교<sup>108)</sup>

장 점	위험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규정 유예를 통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테스트하는 것은 규제의 유연성을 더할 수 있음</li> <li>• 감독규정 유예의 개념은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정의 적용 전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시간을 더욱 단축시켜줌</li> <li>• 기업은 더 이상 관련된 감독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명확성을 얻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CA는 EU 법률과 관련된 규정은 감독규정 유예를 줄 수 없음</li> <li>• FCA의 감독규정 유예는 FSMA의 유예 심사를 받아야 함</li> <li>• FOS와 FSCS의 보호 범위가 제한됨(일반법률 위반시 등)</li> </ul>

## 5. 소비자보호 장치

영국은 금융소비자 편익을 규제 안전공간 대상 사업자 선정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Regulatory Sandbox 참가 지원 사업자의 영업모델이 금융소비자에게 가져올 편익<sup>109)</sup>을 주요한 평가 요건으로 하고 있다.<sup>110)</sup>

108)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8

109) 즉, 참가 지원 사업자의 영업모델이 소비자 편익은 낮으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때에는 Regulatory Sandbox 참가 대신 RegTech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고 한다(노형식, “규제 안전공간 도입 해외사례에서의 금융 소비자보호”, 『금융포커스』 주간 금융브리프 25권 42호, 금융연구원, 2016.11.26.~12.9., 12면)

110) 노형식, “규제 안전공간 도입 해외사례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포커스』 주간 금융브리프 25권 42호,

사전동의 고객에 대하여 각각의 테스트에 적합한 공지를 하고 보호내용 및 보상 내용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사업자의 고객과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며,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보상하고, 그 보상을 위한 자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FCA가 샌드박스 테스트에 참여하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통하여 적용하고 있다.<sup>111)</sup>

- ① (접근법 1) 샌드박스 기업은 테스트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테스트 참여에 동의한 고객에게만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은 잠재적인 위험 및 이용 가능한 보상을 사전에 공지 받아야 한다.<sup>112)</sup>

[표 14] 소비자보호 접근법 1의 장점 및 단점<sup>113)</sup>

장 점	위험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가자들의 합의에 의한 보상체계로 인해 특별한 테스트를 위한 보상이 유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소비자와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li> <li>소비자는 FSCS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FOS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li> </ul>

금융연구원, 2016.11.26.~12.9., 12면.

111)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9.

112)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9.

113)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21

② (접근법 2) 사례별로(case by case) 적절한 정보공개, 보호 및 보상 규정을 둔다.<sup>114)</sup>

[표 15] 소비자보호 접근법 2의 장점 및 단점<sup>115)</sup>

장 점	위험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참여자가 테스트를 받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안전장치가 충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소비자 보호에 대해 불충분한 상태로 동의가 된다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li> <li>• 소비자는 FSCS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li> <li>• 만약 FOS의 법정관할에 있다면 회사와 FCA 간의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됨</li> </ul>

③ (접근법 3) 고객에게 별도의 금융 ombudsman 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sup>116)</sup>

[표 16] 소비자보호 접근법 3의 장점 및 단점<sup>117)</sup>

장 점	위험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이 이미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음</li> <li>• FOS와 FSCS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샌드박스 기업은 FOS와 FSCS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함</li> </ul>

④ (접근법 4) 샌드박스 테스트 참여기업은 어떤 손해에 대해(투자 손실 포함)서도 고객에게 보상해야 하며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을(자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고객을 위한 안전조치는 샌드박스 활동에 적합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14)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0.  
 115)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21  
 116)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0.  
 117)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p.21~22.

FCA는 사례별로 안전조치 제안서에 동의하는 접근법 2를 선호한다. 따라서 접근법 1, 접근법 3, 접근법 4의 안전조치도 사례별로 적용될 수 있다. 샌드박스의 테스트를 통과한 솔루션이 법정관할 내에 있다면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와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보호<sup>118)</sup>가 제공된다.<sup>119)</sup>

[표 17] 소비자보호 접근법 4의 장점 및 단점<sup>120)</sup>

장 점	위험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도산하지 않는 한 소비자는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li> <li>• 인가받은 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이행함</li> <li>• FOS와 FSCS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샌드박스 기업이 모든 종류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회사는 감당하기 어려움</li> <li>• FOS와 FSCS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li> </ul>

<사례연구 2><sup>121)</sup>

블록체인 기반 거래 도구를 테스트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인 접근법 1을 사용하여 테스트 참여에 동의한 소수의 고객에게만 테스트를 진행하고, 매일 거래가 올바른 시간에 실행되는지 여부 등과 같은 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6. 업계권장사항

FCA는 Regulatory Sandbox 제도를 통하여 금융감독 시범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FCA가 적용할 수 있는 선택적 조치(option) 외에도 업계내에서 더 많은 규

118) 감독규정 유예(waivers)의 경우에, FCSC는 고의 과실에 관한 일반법 상의 위반에 대해 규정한다. 만약 회사가 그들의 의무를 공평과 합리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유예규정은 FOS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다.

119)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0.

120)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22.

121)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0.

제유연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제테스트베드에 참가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솔루션을 검증하기 위해 업계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은 협회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sup>122)</sup>

### (1) 가상샌드박스 (Virtual sandbox)

가상샌드박스란 현실의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가상의 환경에서 기업의 솔루션을 테스트 하는 것이다. 가상샌드박스는 업계에 의해 만들어 지게 되며, 다수의 대형 회사는 이미 테스트 기술과 유사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샌드박스 소유자의 데이터와 참가자들의 데이터 분리가 중요한 사항이 된다. 가상샌드박스의 구체적인 실행례를 들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설정하고 산업계 간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의 데이터나 다른 회사들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사전에 다양한 위험이 방지되어 소비자피해 또는 금융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123)</sup>

가상샌드박스는 회사가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일반적인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회사에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환경은 궁극적으로 산업과 학계간에 연계된 기술개발로 이어짐으로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FCA는 가상샌드박스에 대하여 업계차원에서 이를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으로서 FCA는 가상샌드박스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조율을 맡게 되며, 가상샌드박스에 필요한 다양한 시스템과 데이터 공급기능을 하게 된다.<sup>124)</sup>

122)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2.

123)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2.

124)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2.

[표 18] 가상 샌드박스 제도의 장점 및 단점 비교<sup>125)</sup>

장 점	위험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비용이 저렴</li> <li>• 소비자 위험과 금융시스템 위험이 적음</li> <li>•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규모의 기업이 참여하기에 접근성이 좋음</li> <li>• 산학협력으로 기술 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에 따라 가상 샌드박스를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li> <li>• 테스트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테스트를 진행 할 수 없음</li> <li>• FCA 감독강도가 낮아질 수 있음</li> </ul>

<사례 연구 3><sup>126)</sup>

FCA는 규제요구사항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RegTech) 지원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모든 상품 및 서비스는 가상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며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업으로 인해 기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샌드박스 우산

비영리 회사는 미인가 혁신기업들이 우산 아래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우산(Sandbox umbrella) 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샌드박스 우산 제공회사는 FCA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샌드박스 우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인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정인가를 받아야 하는 샌드박스보다 더욱 빠른 시간안에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다.<sup>127)</sup>

125)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9.

126)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3.

127)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3.

하지만 샌드박스 우산은 모든 규제 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예를 들어 보험업 및 투자운용업 등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은 금지된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한정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FCA는 샌드박스 우산에 대하여 혁신허브와 그 밖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sup>128)</sup>

[표 19] 샌드박스 우산 제도의 장점 및 단점 비교<sup>129)</sup>

장 점	위험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정인가보다 쉽고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 할 수 있음</li> <li>• FOS와 FSCS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li> <li>• 한정인가보다 EU 법률과 관련된 요건이 적음</li> <li>• 업계에서 우산을 설립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에 따라 가상 샌드박스를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li> <li>• 업계 감시 체계의 범위가 제한됨</li> <li>• FCA 감독강도가 낮아질 수 있음</li> </ul>

## 7.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조치(option)

FCA에서는 Regulatory Sandbox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감독상의 시범사업을 제시하는 한편,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하여서는 좀 더 완화된 규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2가지 조치를 더 도입하고 있다.<sup>130)</sup>

### (1) 새로운 규제 활동 지침(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

FCA는 샌드박스의 테스트를 위해 규제된 활동 지침(Regulated Activities Order)<sup>131)</sup>을

128)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3

129)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9.

130)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p.14~15.

131) Financia Service and Markets Act 2000(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544.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 법규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이나 또는 EU 법규 내에서 영국이 추가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영역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활동 지침은 인허가의 절차를 간소하게 하거나 테스트에 필요한 규제요건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필요한 경우에는 EU 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지급결제와 전자화폐 관련 규정의 영역의 상품과 서비스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sup>132)</sup>

[표 20] 새로운 규제 활동 지침의 장점 및 단점<sup>133)</sup>

장 점	위험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있어서는 규제의 유연함을 제공함</li> <li>• 인가가 투자자들에게 인정받을 개연성이 큼</li> <li>• 법률과 규정이 변경하여도 소비자권리에는 변함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전히 인허가를 받아야 함</li> <li>• EU 법률에 관련된 규정은 엄격히 지켜야 함</li> <li>• 법률의 개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li> <li>• 지급결제와 전자화폐 관련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음</li> </ul>

## (2) 확대된 감독규정 유예(Amending the waiver test)

FCA는 감독규정 유예에 관련된 조항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정은 샌드박스 기업의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이러한 규정 개정도 EU 법규를 위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sup>134)</sup>

132)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4.

133)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20.

134)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4.

[표 21] 확대된 감독규정 유예의 장점 및 단점<sup>135)</sup>

장 점	위험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CA는 감독규정 유예를 통해 파워풀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음</li> <li>• 감독규정 유예를 통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테스트하는 것은 규제의 유연성을 더할 수 있음</li> <li>• 감독규정 유예의 개념은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정의 적용 전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시간을 더욱 단축시켜줌</li> <li>• 기업은 더 이상 관련된 감독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명확성을 얻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의 개정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li> <li>• FCA는 EU 법률과 관련된 규정은 감독규정 유예를 줄 수 없음</li> <li>• FCA의 감독규정 유예는 FSMA의 유예 심사를 받아야 함</li> <li>• FOS와 FSCS의 보호 범위가 제한됨(일반법률 위반시 등)</li> </ul>

**(3) 면제지침 개정 (Amendment to Exemptions Order)**

FCA는 샌드박스 기업을 위해 면제지침(Financia Service and Markets Act 2000 (Exemption) Order 2001/1201)을 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제는 샌드박스 참가기준과 샌드박스 요건을 충족한 회사만이 받을 수 있다.<sup>136)</sup>

**(4) 사업지침 개정 (Amendment to By Way of Business Order)**

FCA는 샌드박스 기업을 위해 사업지침(Financia Service and Markets Act 2000(Carrying on Regulated Activities By Way of Business) Order 2001/1177)을 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의 개정은 샌드박스 참가기준과 샌드박스 요건을 충족한 회사만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Mifid와 UCITS와 같이 EU 법규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할 수 없다.<sup>137)</sup>

135)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20.  
 136)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4.  
 137)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p.14~15.

[표 22] 면제지침 및 사업지침 개정<sup>138)</sup>

장 점	위험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음</li> <li>• 다른 규제완화 조치 보다 큰폭의 규제완화가 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법률에 의해 완화된 규제가 제한 받을 수 있음</li> <li>• 기업이 인가를 받지 않는한 FOS와 FSCS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li> <li>• EU 법률에서 요구되는 분쟁조정절차를 준수해야 함</li> <li>• 인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li> <li>• FCA의 감독권한이 적용되지 않음</li> </ul>

## 8.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

영국은 2016년 1월에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내에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 관련 부서(Regulatory Unit)를 신설한 바 있다.<sup>139)</sup>

Regulatory Unit에서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Regulatory sandbox cohort 에 대한 신청서 접수와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 9. 적용사례(Regulatory Sandbox 1차~3차 코호트)

### (1) 1차 코호트

FCA는 2016년 7월 8일까지 다양한 분야, 지역 및 규모의 회사들로부터 1차 코호트

138)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20.

139)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 추진 방향」, 2016.3.8., 3면

신청서 69건을 받았다. 이 중 24개 회사의 신청서가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차 코호트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은 18개로 확정되었다. 이들 18개의 회사들은 현재 모두 테스트를 마쳤으며 FCA는 이들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개 회사 중 상당수는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수료하고 기존의 다른 회사들과 협력하여 규제샌드박스 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sup>140)</sup>

아래는 1차 코호트 회사들의 명단과 세부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표 23] 규제 샌드박스 1차 코호트 기업 목록<sup>141)</sup>

1차 코호트 기업	기업 상세
Billon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전자화폐 플랫폼으로 전화기반 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송금하고 자금을 보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BitX	디지털통화·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운영되는 국경 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Blink Innovation Limited	여행자가 항공편 취소 시 모바일 장치로 새 항공권을 즉시 예약 할 수 있는 자동청구처리절차가 적용된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Bud	사용자가 개인별 통찰력을 가지고 단일 대시보드에서 금융상품을 관리 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앱을 제공해 준다.
Citizens Advice	고객의 부채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가지고 있다. 부채 상담사를 연결해 주거나 다른 고객의 부채와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 조언도구를 제공한다.
DISC Holdings Limited	DWP(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와 제휴하여 현금 또는 지급수단 이외에 긴급하게 지급결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지급결제 플랫폼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DWP가 모바일 장치에 신용금액을 허용하여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할 수 있게 한다.
Epiphyte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국제전화 결제를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제공업체이다.

140) <https://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cohort-1> 2017.10.31. 최종검색

141) Regulatory sandbox - cohort 1 - Cohort 1 firms (<https://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cohort-1> 2017.10.31. 최종검색)

1차 코호트 기업	기업 상세
HSBC	FinTech 신생기업인 Pariti Technologie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앱으로 고객의 재무관리개선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Issufy	투자자, 발행회사, 증권회사를 위해 전반적인 IPO(Initial Public Offering) 분산 프로세스 제공하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Lloyds Banking Group	온라인 및 통신망을 통하여 지점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툴을 제공한다.
Nextday Property Limited	만약 90일 이내에 그들의 부동산을 판매하지 못한 경우 고객에게 보장된 액수의 무이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부동산 회사이다.
Nivaura	사모발행증권의 발행 및 운용관리를 위해 자동화 및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Otonomos	비공개회사의 주식을 전자적으로 블록체인에 표시하여 주식 소유를 관리하고 이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다.
Oval	소량의 돈을 관리하여 사용자가 저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앱이다. 이러한 저축은 기존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SETL	OpenCSD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카드를 통해 소매지급결제시스템을 지원한다.
Tradle	분산원장을 통해 개인 또는 상업적 신원확인이 가능한 문서를 만드는 앱 및 웹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Aviva와 협력하여 자동화 된 고객인증시스템을 제공 할 것이다.
Tramonex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용이하게 이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화폐 플랫폼이다.
Swave	모든 은행계정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저축앱을 통해 사용자가 돈을 쓸 때마다 매번 계좌에서 출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의 소비행동을 기반으로 적절한 저축금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2차 코호트

FCA는 2017년 1월 19일까지 다양한 분야, 지역 및 규모의 회사들로부터 2차 코호트 신청서 77건을 받았다. 이 중 31개 회사의 신청서가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차 코호트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은 24개로 확정되었다. 나머지 7개 기업은 3차 코호트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테스트는 단기 및 소규모로 소비자보호장치를 구축하고 진행되었다.<sup>142)</sup>

아래는 2차 코호트 회사들의 명단과 세부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표 24] 규제 샌드박스 2차 코호트 기업 목록<sup>143)</sup>

AssetVault	AssetVault는 소비자의 모든 자산을 안전한 온라인 기록부에 등록하고 총 가치를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AssetVault는 적절한 보험상품으로 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연결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Assure Hedge	중소기업 및 개인이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외환(FX) 옵션을 제공하는 웹 기반 플랫폼이다.
Beekin	인공지능과 데이터공유를 활용하여 대체자산(부동산, 엔젤투자)의 투명성과 유용성을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자에게 위험관리 및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BlockEx	BlockEx는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채권, 사모증권 발행 및 운용관리 플랫폼을 제공한다.
Canlon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상환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저축하는 보험증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Disberse	인도주의적인 금융을 지원하는 블록체인기반 서비스 제공업체이다.
Evalue	직장 내 직원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은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완전 자동온라인 조언 프로세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142) <https://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cohort-2> 2017.10.31. 최종검색

143) Regulatory sandbox - cohort 2 - Cohort 2 firms (<https://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cohort-2> 2017.10.31. 최종검색)

Experian	대출기관의 기준에 따라 주택 구매의 단계에 있는 소비자가 자신의 자격 요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모기지 적격성 툴을 제공한다.
FloodFlash	FloodFlash는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도 사건 기반 홍수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수의 특정 높이를 초과 한 것을 회사의 센서가 감지하자마자 고객에게 사전 합의 된 금액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Insure A Thing	일정 기간 동안 정산된 정확한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월말에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액을 확정해 주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Money Dashboard	온라인 계정의 금융거래를 모으고 정리하여 소비자의 경제성에 대한 즉각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도구이다. 또한 당해 정보를 통해 모기지 대출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Moneyhub Enterprise	Moneyhub는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및 심리학을 결합하여 고객이 적극적으로 재무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Nimbla	Nimbla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국 중소기업에 무역신용보험 및 신용장 관리 도구를 제공한다.
Nivaura	Nivaura는 중앙집중식시스템 또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해 금융자산의 발행과 관리를 자동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Nuggets	개인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로그인, 지불 및 신원확인을 위한 단일생체인식 도구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이다.
nViso	인공지능과 안면인식에 의해 생성된 고객행동평가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OKLink	OKLink은 국경간 블록체인 정산시스템과 국내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결합한 송금서비스를 제공한다.
Oraclize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화폐 플랫폼으로 스마트 계약서 및 토큰을 사용하여 디지털 신원확인 카드를 안전한 디지털 지갑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Paylinko	사용자가 링크를 사용하여 지급결제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DLT 기반의 지급결제 솔루션이다.

Sabstone	기업이 청구서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자금의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Saffe	안면인식기술로 지급결제 및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이다.
Systemsync	급여의 자동화된 직장연금 제출 정보를 기초로 중소기업을 위한 직원복지 비교 플랫폼이다.
YouToggle	휴대전화 텔레매틱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운전을 모니터링 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기위해 자동차 보험사와 공유 할 수 있는 개별점수를 만드는 앱이다. 앱에서 캡처 한 운전정보는 교통사고 발생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ZipZap	디지털 통화를 통한 지불을 포함하여 지급결제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국경 간 송금 플랫폼이다.

### (3) 3차 코호트(예정)

FCA는 2017년 6월 16일 신청이 마감된 3차 코호트는 11월부터 3차 코호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테스트가 끝나면 과정을 수료한 기업은 4주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FCA에 제출해야 한다. FCA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서면답변만을 제공하고, 사업모델에 대한 인증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하지는 않는다. 또한 FCA는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공유하기 위해 샌드박스 테스트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비밀보호를 위해 사안별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검토하여 가능한 부분만 공개할 예정이다.<sup>144)</sup>

144) <https://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cohort-3>

## 제2절 호 주

### 1. 호주의 Regulatory Sandbox 개관

#### (1) 호주증권위원회(ASIC)의 혁신에 대한 약속

ASIC은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혁신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ASIC은 새로운 금융기술(핀테크) 비즈니스가 규제기준을 맞추는 것을 돕기 위해 혁신 허브를 설립한 바 있다. 호주의 혁신 허브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으며, 각 요소는 혁신적인 사업에 의해 제기된 규제문제에 대한 ASIC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혁신의 촉진을 위해 ASIC는 (i)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투자자 및 소비자의 신뢰와 확신을 촉진하고, (ii)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동한다는 원칙을 보장한다.<sup>145)</sup>

Regulatory Sandbox 참가를 통하여 인허가를 면제 받기 위한 면제조건(conditions of relief)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매고객 100명 이하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고객에게 완전한 인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며, 규제 샌드박스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공지해야 한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설명서와 기업설명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만약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손해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ASIC이 인정하는 내·외부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sup>146)</sup>

145)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August 2017, p.4(asic.gov.au / regulatory-resources / find-a-document/regulatory-guides / rg-257-testing-fintech-products-and-services-without-holding-an-afs-or-credit-licence), (<http://download.asic.gov.au/media/4420907/rg257-public-shed-23-august-2017.pdf> 2017.10.31. 최종검색).

146)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p.22~23.

ASIC Corporations Instrument 2016/1175와 ASIC Credit Instrument 2016/1176에서는 적격인허가 면제개념(Concept Validation Licensing Exemption) 관련 규정에서 AFS 인가와 여신전문업(Credit) 인가 없이 최대 12개월 동안 허용된 사업에 한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샌드박스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sup>147)</sup>

## (2) ASIC의 인허가 규제체계

### 가. 금융서비스

호주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호주금융서비스(AFS)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AFS 인허가 소유자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2001 회사법(Corporations Act,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911B).<sup>148)</sup>

- (i) 고객에게 금융상품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어떤 금융상품을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반고객에게 자문하는 경우)
- (ii) 금융상품을 매매할 경우 (예를 들어, 고객을 대신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결제 상품을 발행하거나, 집합투자회사의 지분을 발행 하는 것)
- (iii) 금융상품을 위한 시장을 만드는 경우 (예를 들어, 금융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세를 정기적으로 매기는 플랫폼을 만드는 경우)
- (iv)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 경우
- (v) 고객자금 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금융상품 및 그 수익의 예치 또는 고객을 위한 신탁서비스 제공)
- (vi) 전통적인 수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47)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37.

148)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5.

## 나. 소비자 여신업

호주에서 여신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호주여신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여신업 인허가 소유자를 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면허가 필요한 여신업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범주가 있다.<sup>149)</sup>

- (i) 여신계약, 소비자 리스 등에 따른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 (ii) 여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도와주는 서비스 (제3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여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인허가의 기능

회사법, 2009 여신업법 (National Credit Act 2009)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업자가 시장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인허가를 주고 있다.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과 일반의무사항을 충족해야한다.<sup>150)</sup>

- (i) 인허가에 의해 다루어지는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정직하며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 (ii) 인허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
- (iii) 일반고객에 대한 분쟁해결 및 보상조치가 적절할 것
- (iv) CEO가 적절하게 훈련되고 법을 준수할 것

## 라. 인허가 관련 법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인허가 관련 법률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sup>151)</sup>

149)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5.

150)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6.

151)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6.

- (i) AFS에 대한 인허가(Regulatory Guide 104 Licensing general obligations (RG 104))
- (ii) 여신업 인허가(Regulatory Guide 205 Credit licensing General conduct obligations (RG 205))
- (iii) 호주 회사법 및 증권거래법(Corporations Act,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 (iv) 여신업법 및 기타 금융서비스 법(National Credit Act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2001)
- (v) 규정 및 규칙과 같은 법규정(legislation, such as conduct and disclosure rules)

### (3) 혁신의 장애물

ASIC은 혁신허브 (Innovation Hub)를 통해 상호 연결된 3가지 문제를 파악하였다. 그 문제들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는 여신업에 종사하는 것을 찾고 있는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며 다음과 같다.<sup>152)</sup>

- (i) 시장출시속도
- (ii) 조직역량
- (iii) 자금조달

#### 가.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출시속도

소비자 관심과 생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서비스와 여신업을 제공하려고 하는 새로운 핀테크 기업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ASIC로부터 관련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허가를 받는데 오랜시간

152)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6.

이 소요되기 때문에 혁신적인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빠르게 제공하기가 어렵다.<sup>153)</sup>

#### 나. 조직역량

혁신적인 사업의 창시자가 금융서비스와 여신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필요한 경험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조직역량표준(Organisational competence RG 105)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허가를 받으려면 조직능력표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책임 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sup>154)</sup>

#### 다. 자금조달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본조달이 어려우며,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sup>155)</sup>

- (i) (시장출시속도)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에 시장에 신규 사업을 빠르게 출시하기가 어려워진다.
- (ii) (조직역량) 인허가를 위해 숙련된 관리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조달이 어려우면 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워 인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 (4)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의 장애물 감소

혁신기업에 대한 장애물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려고 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

153)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7.

154)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7.

155)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7.

의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테스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공간이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sup>156)</sup>

- (i) 기업이 인허가 취득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성공 가능성을 확증하거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
- (ii) 기업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모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 (5) 호주의 규제 샌드박스 체계

호주의 규제 샌드박스는 다음의 세가지 요소로 인해 인허가 없이 상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한다.<sup>157)</sup>

- (i) 기존의 법과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인허가 면제
- (ii) ASIC의 핀테크 인허가 면제(ASIC Corporations Instrument 2016/1175와 ASIC Credit Instrument 2016/1176)
- (iii) ASIC에 의해 특정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에 인정되는 한정인가(tailored licensing exemptions), 개별인허가(individual exemptions)

아래의 사례 1 ~ 4는 호주 규제 샌드박스 체계가 일반적인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개요이다.

156)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8.

157)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8.

**<사례1: 디지털 자문서비스 사업><sup>158)</sup>**

테스트 신청자가 상호호주증권에 대해 일반고객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문업을 테스트 하기를 원한다.

<테스트 옵션>

테스트 참가자는 디지털 자문 서비스를 시험하기 위해 핀테크 인허가 면제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일반고객의 경우 총 5백만 달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사례2: 시장 대출 플랫폼><sup>159)</sup>**

테스트 신청자가 P2P 대출 플랫폼을 테스트하기 원한다.

<테스트 옵션>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managed investment schemes)와 관련된 AFS 인허가
- 소비자에게 대출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여신업 인허가

비록 핀테크 인허가 면제가 P2P 대출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ASIC에 해당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한 개인면제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58)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9.

159)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9.

**<사례3: 지급결제 상품><sup>160)</sup>**

테스트 신청자가 고객의 손목시계에 있는 칩을 사용하여 지불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선불지급결제 상품을 테스트하려고 한다.

<테스트 옵션>

ASIC은 소액지급결제상품에 대해 인허가 면제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는 상품당 최대 금액이 \$1,000 미만인 경우 인허가 없이 이 상품을 제공 할 수 있으며 모든 상품의 최대 잔액의 합은 \$1천만을 넘지 못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핀테크 인허가 면제하에 지급결제 상품을 테스트 할 수 있다.

- ADI(authorised deposit taking institution)과 지급결제 상품을 발행계약을 맺은 경우
- 상품당 최대 잔액이 \$10,000이하인 경우

**<사례4: 가상통화지갑><sup>161)</sup>**

테스트 신청자가 고객의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온라인 '지갑'을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하고자 한다.

<테스트 옵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는 회사법(Corporations Act)하에서 ASIC에 의해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통화지갑 서비스 제공업자가 지갑(또는 지갑과 관련된 서비스)을 제공하는 AFS 인허가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 2. 기존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인허가 면제

AFS 또는 여신업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sup>162)</sup>

160)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9.

161)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0.

162)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1.

- (i) AFS 인허가와 여신업 인허가 소유자 대리의 경우
- (ii)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인허가 요구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 (iii) ASIC가 인허가 면제 권한을 사용하여 특정 상품과 사람에게 인허가를 면제한 경우

### (1) 법에 따른 인허가 면제

#### 가. 기존 인허가 소유자 대리

기존 인허가 소유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sup>163)</sup>

- (i) 대리자가 제공하려는 상품 및 서비스의 업종과 (예: 금융서비스 또는 여신업 인허가) 인허가 소유자의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 (ii) 대리자가 인허가 소유자 회사의 직원 또는 임원이 아니라면, 인허가 소유자는 대리자를 위임대표(authorised representative)로 임명해야 한다.

인허가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 대리자는 인허가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리자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sup>164)</sup>

#### 나. 인허가가 필요없는 상품 및 서비스

다음과 같은 일부 상품은 법률상 인허가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sup>165)</sup>

- (i) 즉시 결제되는 외국환 계약은 회사법(Corporations Act)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다.

163)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1.

164)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1.

165)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p.11~12.

- (ii) 고객과 자금이체자 간에 즉시자금이 이체되는(standing arrangement) 일부 전자자금 이체업은 회사법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다 (reg 7.1.07G of the Corporations Regulations 2001).
- (iii) 한사람에게만 지불되는 지급결제 상품은 회사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
- (iv) 사업자금을 위해 법인에 제공한 여신은 여신업법 (National Credit Act)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ASIC으로부터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ASIC에 규제되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은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sup>166)</sup>

## (2) ASIC에 의한 면제

ASIC은 한 사람 (또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다음의 인허가를 면제하는 법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sup>167)</sup>

- (i) 회사법 하에서 AFS 인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
- (ii) 여신업법에 따른 여신업 인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

또한 ASIC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sup>168)</sup>

- (i)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상품 및 특정 그룹의 서비스)의 인허가 요구 사항에 면제를 제공할 수 있다.
- (ii) ASIC가 관리하는 법률의 일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66)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2.

167)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2.

168)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2.

ASIC은 이러한 권한을 면제권한(Relief Power) 이라고 부르며 특정 유형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면제를 제공하기 위해 면제권한을 사용해 왔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는 특성,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항상 인허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Regulatory Guide 51 Applications for relief).<sup>169)</sup>

다음은 ASIC가 면제권한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예이다.<sup>170)</sup>

- (i) 한 상품 당 최대 잔고는 \$1,000 미만이며 총 잔액이 \$1,000만 미만인 소액 비현금 지급결제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
- (ii) 모기지 상쇄계정(offset account)에 관련한 일부 서비스
- (iii) 일반 금융계산기(generic financial calculators)에 관련된 규정

이러한 면제의 상당 부분은 좋은 결과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모든 관련 조건을 준수하여야만 한다.<sup>171)</sup>

### (3) 그 밖의 ASIC 지침

인허가 면제에 대한 그 밖의 지침에는 다음과 같다.<sup>172)</sup>

- (i) Section D Regulatory Guide 121 (Doing financial services business in RG 121)
- (ii) Section E of RG 36
- (iii) Section D of RG 203

169)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2.

170)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p.12~13.

171)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3.

172)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3.

### 3.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ASIC의 핀테크 조건부 인허가 면제 제도

ASIC은 핀테크 기업이 회사법 또는 여신업법 중 어떤 면허도 소지하지 않고 12개월 동안 특정 제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제를 제공한다. 핀테크 인허가 면제는 특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반적으로 AFS 또는 여신업 인허가가 필요한 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핀테크 인허가 면제는 규제 부담을 줄여 새로운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게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테스트 기간동안 상품과 서비스를 확장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될 것이며, 가능하다면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인허가의 면제를 검토 할 것이다.<sup>173)</sup>

#### (1) 핀테크 인허가 면제의 성격

핀테크 인허가 면제(fintech licensing exemption)란 AFS 인허가 또는 여신업 인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12개월 동안 특정 상품 및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핀테크 인허가 면제는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며 사업이 해당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sup>174)</sup>

만일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된 조건을 준수한다면 합법적으로 12개월간 인허가가 면제된다. 다만 핀테크 인허가 면제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감독기관에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핀테크 인허가 면제를 받았다고 하여도 진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완전한 인허가를 ASIC로부터 받아야 한다. 일반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SIC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반드시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sup>175)</sup>

173)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4.

174)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4.

175)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p.14~15.

## (2) 핀테크 인허가 면제 대상자

다음의 자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핀테크 인허가 면제를 신청하지 못하며, 회사법상 등록된 외국기업은 내국인이 아니라면 핀테크 인허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sup>176)</sup>

- (i)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자
- (ii) AFS 소유권을 보유한 자
- (iii) 인허가 면제를 받기 위하여 AFS 인허가 소유자로부터 임시대표로 임명된 자
- (iv) AFS 인허가를 받은 회사의 자회사

다음의 자는 여신업과 관련된 핀테크 인허가 면제를 신청하지 못한다.<sup>177)</sup>

- (i) 여신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자
- (ii) 여신업 인허가를 보유한 자
- (iii) 인허가 면제를 받기 위하여 여신업 인허가 소유자를 대리한 자
- (iv) 여신업 인허가를 받은 회사의 자회사

ASIC은 어떤 사람에게 핀테크 인허가 면제를 부여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sup>178)</sup>

- (i) 핀테크 인허가 면제와 관련이 없는 사업일 경우
- (ii) 면제 조건을 하나 또는 그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iii) 이전의 불법행위 등

176)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5.

177)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5.

178)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p.15.

#### (4) 테스트 가능 상품 및 서비스

핀테크 인허가 면제는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며 모든 금융서비스나 여신업에 적용되지 않는다.<sup>179)</sup>

##### 가. 금융서비스

핀테크 인허가 면제를 받은 자는 AFS 인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나, 금융상품 발행은 핀테크 인허가 면제를 받을 수 없다.<sup>180)</sup>

- (i) RG 257.58에 나열된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
- (ii) RG 257.58에 나열된 상품을 발행하는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행위

금융서비스 핀테크 인허가 면제는 다음의 금융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 (i) 호주거래소 상장증권
- (ii) 채권 및 주식 등
- (iii) 집합투자기구 지분
- (iv) 예금상품
- (v) 일부 종류의 일반보험상품
- (vi) ADI에 의해 발행된 지급결제상품

##### 나. 여신업

핀테크 인허가 면제는 여신업 인허가를 소유할 필요없이 특정 유형의 여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핀테크 인허가 면제는 여신을 직접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음

179)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7.

180)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7.

며, 핀테크 인허가 면제는 해당자가 다음과 같은 여신계약과 관련되어 중개자 또는 여신 제공보조자(credit assistance)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sup>181)</sup>

- (i) 총 여신금액이 \$25,000이하인 계약
- (ii) 연 이자가 최대 24%이하인 계약
- (iii) 한정책임대출과 관련이 없는 여신계약 (예, 역모기지 또는 소액여신계약)
- (iv) 소비자리스가 아닌 여신계약

각 상품 및 서비스 자격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 25] 및 [표 26]과 같다.<sup>182)</sup>

[표 25] 인허가 면제의 범위 - 금융서비스 및 여신업<sup>183)</sup>

금융서비스	면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자문 및 개인 자문을 제공하는 단계</li> <li>•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거래</li> </ul>
여신업	면제는 여신서비스에 적용(여신지원(credit assistant)과 중개인(intermediary) 역할을 하는 것)

181)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8.

182)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8.

183)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8.

[표 26] 인허가 면제범위 - 금융상품 및 여신계약<sup>184)</sup>

상품유형	면제 및 제외 범위
상장증권	모든 상장증권
유가증권, 채무증권	모든 유가증권, 채무증권, 국채 등
펀드	간단한 관리 투자 계획은 자금이 3개월 이내에 철회될 수 있는 은행 계좌에 적어도 자산의 80%를 투자하는 등록 제도이다. 투자가 10 일 이내 시장가치로 실현 될 수있는 협정에서
예금상품	모든 예금상품
보험상품	다음의 보험은 면제가 적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보험상품 (예, 가정용품 및 보석)</li> <li>• 개인 및 국내보험상품 (예, 휴대전화보험)</li> </ul> 다음의 보험은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보험</li> <li>• 자동차보험</li> <li>• 여행보험</li> <li>• 소비자여신보험</li> <li>• 질병 및 상해보험</li> <li>• 생명보험</li> </ul>
지급결제 상품	면제는 ADI에 의해 발행된 상품에 대해 자문 및 제공하는 행위로 제한됨
여신계약	다음의 여신계약은 면제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용 부동산 담보부 여신계약</li> <li>• 여신업법(National Credit Act)에 따른 추가적인 여신 의무계약(예: 역모기지 및 소액 여신계약)</li> <li>• 소비자 리스</li> </ul>

184)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p.18-19.

### (5) 핀테크 인허가 면제 제도의 적용 제외 분야

ASIC의 인허가 체계는 금융서비스와 여신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야에 있어서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허가 면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인허가 없이 일반소비자에게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 인허가 면제는 자문과 일부 상품의 중개와 같은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소비자를 기업의 제3의 채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따라서 핀테크 인허가 면제는 금융상품을 발행하거나 여신을 직접 제공하는 기업은 이용할 수 없다.<sup>185)</sup>

ASIC은 기본적으로 개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검토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서는 개별적으로 검토 될 수도 있다. 그에 대한 이유는 핀테크 인허가 면제가 다음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sup>186)</sup>

- (i) 복합상품 (예, 파생상품)
- (ii) 비유동성 상품 또는 쉽게 상환될 수 없는 상품
- (iii) 장기간의 상품 (예, 연금 및 생명보험)
- (iv) 기존에 취약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예, 소비자리스)

위의 표에 열거되지 않은 어떤 상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인허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인허가 면제를 받아야 한다.<sup>187)</sup>

185)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19.

186)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p.19~20.

187)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20.

## (6) 서비스 테스트 기간

핀테크 인허가 면제는 기본적으로 12개월(테스트 기간)동안 제공되며 ASIC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인허가 면제 신청을 한 후 14일에 시작한다. 신청자는 서면으로 테스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통보 받는다. ASIC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고려하는데 12개월이 테스트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AFS 또는 여신업 인허가 신청의 과정을 시작한다.<sup>188)</sup>

테스트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상품 및 서비스 제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sup>189)</sup>

- (i) AFS 또는 여신업 인허가 소유
- (ii) AFS 또는 여신업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 (iii) 테스트 기간을 연장하여 개별 면제를 받은 경우

테스트 기간의 종료 후 다른 기업과 같이 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상 금융 서비스 또는 여신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는 현재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또는 여신업을 포함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미리 계획하고 테스트의 종료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테스트 기간의 종료시기가 다가올 경우에도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테스트 종료 전에 상품과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sup>190)</sup>

188)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20.

189)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20.

190)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p.20~21.

**<사례5: 테스트 기간 종료 준비><sup>191)</sup>****<시나리오>**

Next Generation Financial Pty Ltd (NGF)는 지난 10개월 동안 핀테크 인허가 면제에 의존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해 왔다. NGF는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10개월 동안 ASIC에 AFS 인허가를 면제를 받았으며, 만약 추후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테스트가 종료된다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ASIC의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 중단하여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NGF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히 조치를 준비하고있다. 테스트 기간 11개월에 들어가서 NGF는 홈페이지 상에 AFS 인허가를 취득하기 전까지 신규고객을 받지 않을 것임을 공지하였다.

또한 NGF는 기존의 고객과 연락하여 인허가를 얻을 때까지 작업이 중단될 수 있을 것임을 공지하였고 고객의 문의에 응답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시트 및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고객이 연락할 수 있는 ASIC이 승인한 외부분쟁해결기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다.

**<코멘트>**

NGF는 테스트 기간의 종료에 대한 준비를 매우 잘하였으며 ASIC는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종료 후 NGF에 대해 AFS 인허가를 곧 발급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NGF는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였다.

**4. 핀테크 인허가 면제 제도의 적용 요건**

핀테크 인허가 면제 하에 금융서비스 및 여신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확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sup>192)</sup>

191)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21.

192)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22.

## (1) 면제 조건의 사유

핀테크 인허가 면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목표로 설계가 되었다.<sup>193)</sup>

- (i) 많은 수의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행위 또는 결과의 위험을 제한한다.
- (ii) 소비자가 테스트중인 상품과 서비스를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 (iii)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한다.

ASIC은 테스트를 하는 기간동안 핀테크 인허가 면제의 조건이 소비자 신뢰를 증가시킬 것으로 확신하며 면제의 조건은 AFS와 여신업 인허가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많은 의무를 적용한다. 이러한 조건을 미리 설정하면 테스트 기업이 테스트 종료 후에 인허가를 준비하는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194)</sup>

## (2) 면제 요건

ASIC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허가 면제 요건은 다음의 표와 같다.<sup>195)</sup>

[표 27] 인허가 면제요건의 내용<sup>196)</sup>

조 건	내 용
고객 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가 면제되는 핀테크 회사는 테스트에서 최대 100명의 일반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li> <li>• 전문가 고객에 대한 고객 제한은 없다.</li> </ul>

193)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22.

194)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22.

195)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p.27~28.

196)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p.27~28.

조 건	내 용
금액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스트와 관련되어 예금 상품, 증권, 국채, 지급결제 상품은 \$10,000를 초과하지 못함</li> <li>• 여신계약에 따른 여신상품은 \$2만 5천을 초과하지 못함</li> <li>• 일반적인 보험 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테스트 상품 및 서비스는 \$50,000를 초과하지 못함</li> <li>• 전문고객에 대한 금액제한은 없음</li> <li>• 테스트 기간동안 모든 고객에게 제공가능한 금액은 총 \$5백만을 초과하지 못함</li> </ul>
소비자보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스트에 참여하는 고객에게는 금융서비스지침에 따른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예를 들어, 상품 및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환불방법, 분쟁조정절차 등)</li> <li>• 개인금융자문(personal financial advice)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스트 기업은 공시의무와 최선이익의무(best interest duty)를 준수해야 함</li> <li>• 여신을 제공하는 테스트 기업은 여신정보에 대한 정보, 보상 및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정보 같은 일반적인 정보를 그들의 고객에게 제공해야 함</li> <li>• 테스트 기업은 ‘책임대출’(responsible lending)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li> </ul>
보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스트 기업은 다음의 적절한 보상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함</li> <li>• (최소요구사항) 소송가액 총액이 최소 \$1백만 상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li> <li>• (추가보상기간(run off cover)) 테스트 기업은 테스트 종료 후 12개월 동안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li> </ul>
분쟁조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스트 기업은 다음의 분쟁해결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함</li> <li>• ASIC 승인을 받거나 ASIC가 만든 기준이나 요건을 준수하는 IDR(Internal Dispute Resolution) 절차</li> <li>• ASIC 승인을 받은 하나 이상의 Financial Ombudsman Service와 같은 .EDR(external dispute resolution)제도 회원</li> <li>• 테스트 기간과 테스트 종료 후 12개월 기간동안 EDR 회원을 유지해야 함</li> </ul>

## 5. 테스트 결과 보고

핀테크 인허가 면제를 받은 기업은 테스트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ASI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테스트기간에 테스트 사업의 경험의 세부 사항을 설정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sup>197)</sup>

- (i) 테스트 기간 동안 고객의 수
- (ii) 고객 통계에 대한 일반 정보 (예: 연령, 위치 등)
- (iii) 보고되고 다루진 불만의 건수 및 내용
- (iv) EDR에 이관된 불만의 건수 및 내용
- (v) 테스트 기간 동안 확인되거나 또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 (vi) 장애로써 인식된 관련 규제들
- (vii) 수익과 비용 정보 (예: 재무 보고서 정보)

보고서의 세부사항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는 ASIC가 핀테크 인허가 면제의 운영과 효과를 검토하는 것에 한정되어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과 소비자가 직면한 주요 위험이나 문제를 식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98)</sup>

## 6. 테스트 기간 연장 또는 조건 변경

ASIC은 테스트 기간을 연장하거나 고객의 한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예, 최대 200명의 일반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다만 테스트 기간의 연장이

197)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p.30~31.

198)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31.

나 고객의 한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것이다.<sup>199)</sup>

### (1) 기간 연장 또는 조건 변경의 신청

ASIC은 다음의 신청에 대해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sup>200)</sup>

- (i) 테스트 기간 연장 (예, 추가적으로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
- (ii) 고객 수 증가 (예, 최대 200명의 일반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조건 변경)
- (iii) 그 밖의 조건들의 변경

### (2) 기간연장 및 변경(extension or variation)

ASIC은 일반적으로 핀테크 인허가 면제를 위해 12개월의 테스트 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를 판단하여 기간의 연장과 같은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sup>201)</sup>

- (i) 기간의 연장 또는 조건을 변경하려는 목적
- (ii) 시험 기간 확장을 모색하는 이유나 고객한도를 늘리려는 이유
- (iii) 단순한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사업모델의 다양성을 검증하려 하는지
- (iv) 테스트 기간이 시작된 날짜
- (v) 테스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경험, 분쟁 발생빈도, 부정행위 보고여부

199)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33.

200)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33.

201)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33.

(vi) 면제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ASIC가 고려한 일반 사항

ASIC은 일정한 기간의 테스트 경과를 보고 추가적인 기간연장을 제공할지를 판단 할 것이며 만약 충분히 남은 테스트 기간이 있고 기간연장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기간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sup>202)</sup>

## 7. 개별면제(Individual relief)

기존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인허가 면제 또는 ASIC의 핀테크 인허가 면제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개별면제를 ASIC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핀테크 인허가 면제에 대한 면제의 조건을 확장하고자 하거나 다양화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개별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RG 51와 RG 167 Licensing: Discretionary powers).<sup>203)</sup>

### (1) ASIC의 면제 권한

ASIC는 다음 사항에 대해 인허가를 면제할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ASIC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는 권한이 있으며 대표적인 사용례에는 핀테크 인허가 면제가 있다.<sup>204)</sup>

- (i) 회사법 하에서 AFS 인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 (ii) 여신업법에 따른 인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202)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33.

203)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34.

204)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34.

## (2) 상품 또는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개별면제

ASIC은 핀테크 인허가 면제의 범위를 뛰어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면제를 부여할지에 대한 고려를 할 것이며 관련 상황과 면제에 대한 ASIC의 정책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sup>205)</sup>

## (3) 개별면제 신청 절차

개별면제의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sup>206)</sup>

- (i)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전자 사본을 ASIC에게 제출함
- (ii)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함
- (iii) 신청서가 RG 51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함

## (4) 신청수수료

면제 신청과 관련된 수수료가 있다. ASIC은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sup>207)</sup>

- (i) 회사법 면제 수수료 지침 (RG 21)
- (ii) 여신업법 면제 수수료 지침 (RG 208)

205)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34.

206)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35.

207)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35.

## 제3절 싱가포르

### 1.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배경

싱가포르는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며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하여 싱가포르 사람들의 삶을 증진하는데 새로운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금융 센터를 육성하였다. 현재 금융기관은 그들이 실사를 수행하고 합법적인 규정의 요구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MAS)의 허가 없이 새로운 금융상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특정 고객의 유형에 대해서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실험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금융기술환경(핀테크)에서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점점 더 정교해지기 때문에 법률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규제 요구사항에 합법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부 금융회사 또는 스타트업 기업은 신중하게 그것을 실행하지 않기로 선택할 것이며 그 결과 유망한 혁신의 기회가 없어져 사회전체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MAS는 싱가포르를 스마트 금융센터로 만드는 변화의 핵심동력에는 혁신적인 기술사용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믿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sup>208)</sup>

### 2. 규제 샌드박스 접근법

MAS는 혁신적인 기업이 싱가포르 및 해외에서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핀테크 테스트를 장려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신청자)는 잘 정의된 공간 및 기간 내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해야 한다. 샌드박스는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전과 건전성을 유지하

208)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3([www.mas.gov.sg / Singapore-Financial-Centre / Smart-Financial-Centre / FinTech-Regulatory-Sandbox/ Understanding- and-applying-to-the-sandbox.aspx](http://www.mas.gov.sg/Singapore-Financial-Centre/Smart-Financial-Centre/FinTech-Regulatory-Sandbox/Understanding-and-applying-to-the-sandbox.aspx)), ([url:http://www.mas.gov.sg/~media/Smart%20Financial%20Centre/Sandbox/FinTech%20Regulatory%20Sandbox%20Guidelines.pdf](http://www.mas.gov.sg/~media/Smart%20Financial%20Centre/Sandbox/FinTech%20Regulatory%20Sandbox%20Guidelines.pdf)) 2017.10.31. 최종검색).

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하며 테스트 대상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지원자 신청서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및 규제 완화 요구사항이 결정된다. 승인이 나면 신청자는 금융서비스의 배포 및 운영의 책임주체가 된다. MAS는 샌드박스 신청기업에 대해 특정 법적 규제 요구사항을 완화하여 적절한 규제 지원을 제공한다.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참가자는 샌드박스를 종료하고 난 후 관련 법률 및 규제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sup>209)</sup>

### 3. 샌드박스의 목표 및 원리

MAS는 금융부문에서 혁신적이고 안전한 기술 채택을 장려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스마트 금융센터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잘 정의 된 공간 및 기간 범위 내에서 더 많은 핀테크 실험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세부 목표를 둔다.<sup>210)</sup>

- ① 효율성 증가를 가져올 것.
- ②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할 것.
- ③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
- ④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것

신청자는 샌드박스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샌드박스를 의도하지 않는 법적 규제 요구사항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sup>211)</sup>

- ① 금융서비스가 이미 싱가포르에서 제공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와 유사한 경우로 신청자가 다음 중 하나를 보여줄 수 없는 경우이다.
  - (i) 새로운 기술의 적용되고 있는 경우

209)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p.3-4.

210)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4.

211)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p.4-5.

(ii) 동일한 기술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

- ② 신청인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법적 규제 요구사항을 알면서도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이다.

#### 4. 샌드박스 평가기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MAS가 평가할 주요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sup>212)</sup>

- ① 금융서비스에 신기술을 포함하거나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시장에서 비교 가능한 제품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② 금융서비스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비자 또는 금융업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 또는 산업연구로부터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해 뒷받침 될 수 있어야 한다.
- ③ 신청자는 샌드박스 종료 후 더 광범위한 규모로 싱가포르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일 금융서비스를 싱가포르에 제공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싱가포르에 계속하여 일정한 기여를 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 ④ 샌드박스 테스트 시나리오 및 예상 결과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하며 샌드박스 참가자는 테스트시 MAS에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진행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 ⑤ 샌드박스가 소비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산업의 안전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경계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 ⑥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평가하여 완화시켜야 한다.
- ⑦ 금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안이나 샌드박스를 종료 한 후 더 광범위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할 것 등의 사안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212)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p.5-6.

## 5. 샌드박스 기간의 연장 및 종료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면 MAS에 의해 샌드박스 참가자에게 부여된 완화된 법률 및 규정 요구사항은 종료된다. 만약 샌드박스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샌드박스 참가자는 기간 만료전 1개월전에 MAS에 신청을 뒷받침 할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테스트를 받는 금융서비스 변경, 고객의 피드백 반영, 문제점 수정 등이 있을 수 있다. MAS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사례별로 검토 후 최종 승인 될 수 있다. 테스트가 종료되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샌드박스 참가자는 상업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sup>213)</sup>

- ① MAS와 샌드박스 참가자 모두 목표한 결과를 성취하였다.
- ② 샌드박스 참가자가 관련 법률 및 규정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하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샌드박스는 중단된다.

- ①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 결과가 MAS와 참가자간에 서로 합의된 목적을 성취 하는데 어렵다고 판단될 때이다.
- ② 샌드박스 참가자가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샌드박스 참가자는 먼저 MAS에 그러한 사실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 ③ 테스트를 통해 고객이나 금융시스템에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이다.
- ④ 테스트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이 금융서비스의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 ⑤ 샌드박스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이다.
- ⑥ 참가자가 테스트 기간동안 부여된 조건에 위반할 경우 MAS는 샌드박스를 종료할 수 있다.
- ⑦ 샌드박스 참가자가 MAS에게 샌드박스를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했을 때이다.

213)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p.6~7.

샌드박스 참가자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금융서비스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6. 신청 및 승인 절차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sup>214)</sup>

- 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자는 MAS 질문을 할 수 있으며 MAS는 그에대한 명확한 답을 하여야 한다. 또한 MAS는 샌드박스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과 테스트 과정에서 참가자와 계속해서 대화할 것이다.
- ②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MAS는 21일 영업일 이내에 신청서가 모든 요건에 적합하게 접수되었는지에 대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신청서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특정한 법 및 관련 규제요구 사항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다. 신청자는 신청서를 MAS와 논의 후 재제출(예: 경제조건 수정) 할 수 있다. 그 후 MAS는 신청자에게 샌드박스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면으로 안내할 것이다.
- ④ 신청서가 샌드박스의 목적과 원칙 또는 임의의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MAS의 판단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샌드박스의 목표, 원칙 및 평가 기준을 수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⑤ 신청서가 승인되면 샌드박스 참가자는 금융서비스가 샌드박스에서 운용되고 있음과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위험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공지는 고객들이 읽고 이해하였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⑥ 만약 테스트 기간동안 사건에 MAS와 논의된 금융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1개월전에 변경사유에 대해 MAS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MAS로부터 변경승인을 받기 전까지 참가자는 고객에게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14)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p.7~9.

- ⑦ MAS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참가자의 샌드박스 테스트 시작일, 만료일 및 주요한 샌드박스 관련 정보를 MAS 홈페이지 게시하여야 한다.

### 7. 규제 완화의 예

아래의 [표 28]과 [표 29]는 MAS가 샌드박스에 제공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공한다. 이는 예시에 불과하며 정확한 법률의 검토는 MAS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sup>215)</sup>

[표 28] 기존의 규제가 유지 되어야 하는 규정(예시)<sup>216)</sup>

1	고객정보 기밀유지 규정
2	신의성실과 관련된 적합성과 적절한 기준 규정
3	중개인에 의한 고객자금 분별관리 규정
4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지원금지 규정

[표 29] 기존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규정<sup>217)</sup>

1	자산관리 요구사항
2	이사회 구성
3	현금 잔액
4	신용등급
5	재무 건전성
6	자금의 지급능력 및 자본금

215)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p.10~11.

216)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10.

217)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p.10~11.

7	인허가 수수료
8	경영자 자격요건
9	기술위험관리지침 및 아웃소싱 지침과 같은 MAS 지침
10	최소유동자산
11	최소납입자본금
12	사업규모
13	평판
14	정보기록의무

## 8. 샌드박스 적용례

### <시나리오><sup>218)</sup>

- 스타트업 기업이 기존에 있던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조합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 하였지만, 이 금융서비스는 MAS에 의해 규제되거나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 이러한 회사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여 시장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였 을 때 위험과 문제점을 분석하려 한다.
- 하지만 테스트를 지도해 줄 선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 을지 불확실하다.
- 또한 이 회사는 초기 성장 단계여서 아직까지 기존의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 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회사는 MAS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 면제를 간절히 찾고 있다.

218)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17.

<기존 접근 방식><sup>219)</sup>

- 회사는 MAS에 허가 신청을 제출하고, 요구되는 특정 면제를 신청한다.
- 하지만 금융서비스의 혁신성을 감안할 때, MAS가 이 금융서비스를 기존의 금융회사의 서비스와 비교할만한 자체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기술을 이해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이 시장에 등장하기는 신청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으며 매우 긴 시간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혁신의 기회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이 회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싱가포르 밖에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샌드박스 접근법><sup>220)</sup>

-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의 기업은 MAS의 샌드박스 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다.
- MAS는 해당 신청서를 특정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샌드박스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다.
- 회사가 사업계획을 용이하게 세울 수 있기 하기 위해, MAS는 필요한 정보를 수령 한 후 21일 영업일 이내에 신청서가 샌드박스에 잠재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통보할 것이다.
- 그 후 MAS는 해당 회사와 함께 신청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을 계속하여 샌드박스로 진행할지 여부를 최종서면으로 공지한다.

[표 30] 규제샌드박스 평가기준표<sup>221)</sup>

평가기준	평가 (사례 및 정성적 기준)
금융서비스가 새로운 기술 또는 기존의 기술의 혁신을 포함하는가?	테스트 받는 금융서비스가 싱가포르에서 이용가능하지 않지만 만약 이용가능하다면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219)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17.

220)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p.17~18.

221)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18.

평가기준	평가 (사례 및 정성적 기준)
금융서비스가 소비자와 산업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지만 현재 법률과 규정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샌드박스 테스트 후에도 싱가포르 내에서 상업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지원자는 최근에 백만 달러의 펀딩을 받았고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두배의 금액이다. 또한 싱가포르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업계획과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테스트 시나리오와 기대 효과가 명료한가?	샌드박스는 50명의 소비자에게 6개월 동안 안전장치를 가지고 위험을 경감한 테스트를 할 것이다.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s)이 적절한가?	
중대한 위험이 적절히 통제되고 감경되었는가?	금융서비스는 다양한 위험의 시나리오에서 테스트를 거칠 것이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소비자에게 공지한 후 출구전략을 실행한다.
출구전략이 명료한가?	

## 제4절 말레이시아

### 1. 금융기술 Regulatory Sandbox의 목표 및 원칙

말레이시아에서 금융기술발전(핀테크)은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고객가치에 기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솔루션의 도입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규제 환경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의도하지 않게 혁신을 저해하거나 계획을 실행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및 절차가 포함된다. 따라서 은행은 핀테크 환경에 맞는 규제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왔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혁신 금융 기술이 실제적인 환경에서 배포되고 테스트 될 수 있도록 금융기술 Regulatory Sandbox(이하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sup>222)</sup>

222)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1  
(<https://www.bnm.gov.my/index.php?ch=57&pg=137&ac=533&bb=file> 2017.10.31. 최종검색)

위험과 실패는 혁신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당국은 샌드박스가 실제 환경에서 작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 또는 기타 위험으로부터 샌드박스 참가자 및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샌드박스는 기존의 법률 및 규정을 우회하는 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 및 규정 하에서 이미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은 적합하지 않다. 샌드박스 내에서 테스트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에 대해서 은행은 비즈니스모델이나 솔루션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또는 핀테크 회사에 대해 지침 및 조언을 제공하는 “비공식조정”(Informal Steer)의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다. 수정된 비즈니스 모델 및 솔루션이 혁신의 가치를 크게 줄이지 않는 한에서는 이 방법이 적합하다.<sup>223)</sup>

샌드박스에 참여할 응용 프로그램과 회사에 부여 될 수 있는 규제 유연성의 유형 및 범위를 고려함에 있어서 은행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하고,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이 샌드박스 참가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항상 샌드박스 내의 참가자의 수를 고려한다.<sup>224)</sup>

- ①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의 잠재적 이익
- ② 잠재적 위험과 그에 따른 규제 완화
- ③ 금융기관이나 핀테크회사의 무결성, 역량 및 실적

## 2. 참가 신청지원 대상 회사 및 제도 개시일

### (1) 참가 신청지원 대상 회사

샌드박스는 다음의 회사가 지원할 수 있다.<sup>225)</sup>

- ① FSA, IFSA, MSBA, DFIA에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 ② ①의 금융회사와 합작하는(collaborates) 핀테크 회사

223)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1.

224)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1~2.

225)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2.

- ③ 다음의 법상 인허가를 받은 핀테크 회사
- (i) Financial Services Act 2013 (FSA)
  - (ii) Islamic Financial Services Act 2013 (IFSA)
  - (iii) Money Services Business Act 2011 (MSBA).

## (2) 제도 개시일

샌드박스는 2016년 10월 18일에 발효된다.<sup>226)</sup>

### 3. 샌드박스 자격기준

샌드박스에 지원하려는 신청자는 중앙은행이 승인하는 다음의 자격기준을 입증해야 한다.<sup>227)</sup>

- ①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혁신적이다.
  - (i) 금융서비스의 편의성, 효율성, 보안 및 품질 향상
  - (ii) 말레이시아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또는 재정의 효율성 향상
  - (iii) 말레이시아 경제에 대한 투자 또는 자금조달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
- ② 신청인이 제품의 유용성과 기능을 입증하기 위해 또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련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 적절한 평가를 수행해 왔어야 한다.
- ③ 신청자가 샌드박스 과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는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과 손실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재무자원과 전문지식이 포함된다.
- ④ 신청자는 상품,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며 샌드박스 과정을 마친 후에도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적 규모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6)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2.

227)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4-5.

- ⑤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의 제공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법규, 규정 또는 은행에 의한 조정과 양립 할 수 없는지 여부이다. 만약 이 경우 은행은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을 테스트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 ⑥ 신청자가 신뢰와 청렴을 지닌 사람에 의해 주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금융회사와 합작하는 핀테크 회사는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것을 신청함에 있어 기존의 금융회사보다 좀더 완화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고부가가치 직업을 창조 하는데 의미있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핀테크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더 우호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sup>228)</sup>

#### 4. 잠재적 위험 및 안전장치

신청자는 금융회사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과 상품, 서비스 및 서비스의 테스트나 샌드박스내 솔루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파악하고 확인 된 위험에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장치를 평가할 때 은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sup>229)</sup>

- ① 재정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관행
- ② 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촉진
- ③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지원방지
- ④ 고객정보의 기밀유지
- ⑤ 지급결제시스템과 지급수단의 안전성, 신뢰성 및 효율성 증진
- ⑥ 지배적인 Shariah 기준과 함께 이슬람금융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의 일관성 확보
- ⑦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경쟁 장려

228)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5.

229)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5~6.

위에 언급된 안전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①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고객에게 적절히 공개하여야 하며, 고객이 그들의 부수적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한 것을 확인
- ②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고객의 수를 제한하고 거래금액 또는 횟수를 제한
- ③ 고객의 참여 여부를 특정 분야 또는 고객의 프로필에 의해 제한
- ④ 테스트기간을 제한하는 것
- ⑤ 샌드박스 참가자들에 대해 명시된 상황하에서 금전적 보상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비자 보상 수단을 제공
- ⑥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하고 유능한 자원을 투입하고 실패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위험 완화 솔루션을 구현

## 5. 신청 요건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전자 제출이 권장된다.<sup>230)</sup>

- ① 최고경영자(CEO)가 서명한 신청서를 CEO가 정식으로 승인한 지원자 또는 임원이 제출
- ② 당국에 의해 명시된 형식의 신청서
- ③ 신청서에서 제공한 정보를 실증하는 지원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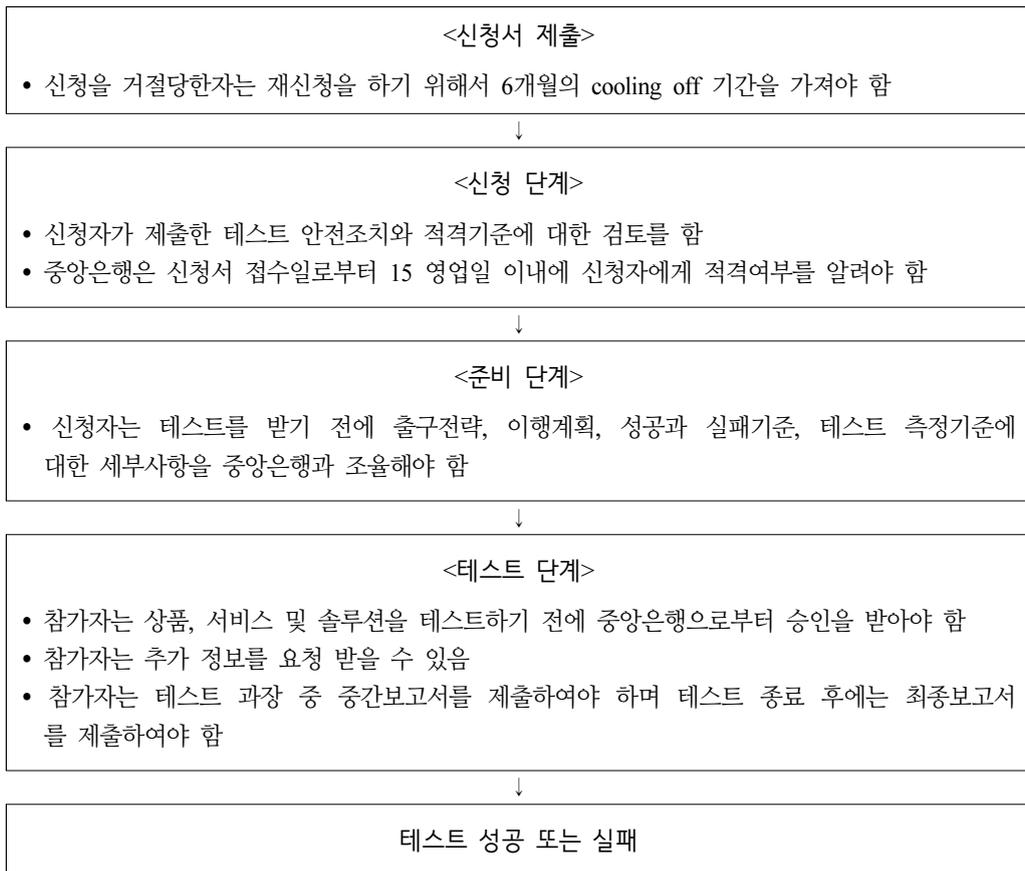
신청자는 성과측정의 적절한 지표달성을 위해 테스트가 의도한 주요 결과도 포함시켜야 한다. 은행은 완전한 신청서를 받은 후 근무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샌드박스에 대한 참가 자격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 후 중앙은행은 참가자들에 대해 다음의 테스트를 진행한다.<sup>231)</sup>

230)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6.

231)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6.

- ① 테스트의 범위 및 기간과 같은 매개 변수, 요구되는 규제 유연성 및 보고 빈도
- ② 테스트에서 시험 기간의 종료시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 ③ 테스트가 실패하거나 중단되어야하는 출구 전략
- ④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이 테스트를 마친 후 상업적 규모로 운영되었을 경우의 성공계획

[그림 4] 샌드박스 절차 순서도<sup>232)</sup>



232)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14.

## 6. 보고서 제출 및 확인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동안 은행은 참가자에게 테스트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수도 있다. 참가자는 테스트 기간 동안 정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참가자는 테스트 진행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중간 보고서에는 테스트와 관련된 기간, 복잡성, 규모 및 위험을 평가 등과 같이 은행과 참가자간에 합의한 것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의 정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sup>233)</sup>

- ① 주요 성과 지표, 주요 일정 및 통계 정보
- ② 사기 또는 조작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문제
- ③ ②에 언급 된 주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취한 조치

참가자들은 테스트가 종료하면 30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sup>234)</sup>

- ① 주요 성과, 주요 성과 지표 및 테스트의 성공 또는 실패 및 테스트의 결과
- ② 모든 사건 보고서와 고객의 불평에 대한 대응과 그에 관한 완전한 설명
- ③ 실패한 테스트의 경우 테스트에서 배운 교훈

중간 및 최종보고서는 CEO가 확인해야 하며 참여 기관과 참여 핀테크 회사에 의한 공동 테스트 상황의 보고서는 참여하는 기관의 CEO 및 참여하는 핀테크 회사의 CEO 모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sup>235)</sup>

233)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7~8.

234)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7~8.

235)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8.

## 7. 승인 만료 (Expiry of approval) 및 연장

테스트 기간이 만료되면 참가자가 테스트 기간 연장을 위한 은행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승인과 참가자들에게 부여된 규제 유연성은 자동으로 만료된다. 초기 테스트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테스트 기간을 연장하려면 참가자는 테스트 기간 만기 전 3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추가 소요 기간과 기간연장을 요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솔루션이 긍정적으로 테스트되지 않은 한 테스트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연장신청자는 연장된 기간 동안 테스트가 특정 이슈 또는 초반 테스트 기간 중에 확인된 위기에 좀더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중앙은행은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을 시장에 광범위하게 도입할 수 있는지 결정할 것이고, 만약 허용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참여 핀테크 회사들은 해당 인허가 승인 및 등록 기준에 대해 FSA, IFSA 및 MSBA에 의해 별도의 평가를 받게 된다.<sup>236)</sup>

중앙은행은 테스트 완료시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의 시장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지할 수 있다.<sup>237)</sup>

- ① 합의된 테스트 방법에 근거한 테스트 실패의 경우
- ②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이 의도하지 않은 공공 또는 재정 안정을 해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경우

## 8. 승인 취소 (Revocation of approval)

다음의 경우에 중앙은행은 언제든지 테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샌드박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sup>238)</sup>

236)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8.

237)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8.

238)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9-10.

- ① 참가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②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서에 중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 ③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참가자의 정직성과 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레이시아나 해외의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 ④ 청산중이거나 청산에 들어가는 경우.
- ⑤ 데이터 보안 및 기밀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⑥ 전체적으로 고객 또는 일반 대중에게 해가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⑦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의 반복적인 기술적 결함, 혼란 또는 사기사건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샌드박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중앙은행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sup>239)</sup>

- ① 참가자에게 취소 의사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참가자가 중앙은행에 취소 사유에 대해 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승인 취소에 대한 지연이 있을 경우 참가자, 고객, 금융시스템 또는 일반인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즉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참가자가 취소의 발효일 이후에 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참가자의 답변이 중앙은행에 의해 수락된다면 중앙은행은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sup>240)</sup>

승인 취소시 참가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up>241)</sup>

239)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9~10.

240)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9~10.

241)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9~10.

- ① 즉시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을 신규 고객 및 기존 고객에게 제공을 중단하고 출구 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 ② 고객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공지와 그들에게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테스트 기간 동안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밀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④ 참가자에 의해 제출된 안전조치에 따라 테스트에서 재정적 손실을 입은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⑤ ①~④ 조치들에 관한 보고서를 취소 후 3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절 홍콩

### 1. 도입 배경

아시아 금융중심지의 지위를 가진 홍콩은 중국에 주권이양 전까지 금융 등 각종 분야에서 영국의 제도적 영향을 받아 발전하여 온 바 있다. 영국이 2015년부터 운용하여 오고 있는 Fintech Innovation Hub 나 규제완화정책의 영향을 받아 홍콩도 2016년 9월부터 핀테크 이노베이션 허브(Fintech Innovation Hub)와 핀테크 규제 안전공간(Fintech Supervisory Sandbox)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sup>242)</sup>

홍콩 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은 핀테크 규제 안전공간 제도 도입의 목적을 “지급 서비스, 생체인증, 블록체인, 로봇틱스, 가상현실 등과 같은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가 은행업계에 도입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서비스와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되기 이전에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실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탄력적이고 유동적인 감독과 규제가 필요성이

242) 김인식, “아시아 각국 핀테크 규제안전공간 운영의 내용과 그 시사점”,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및 보조적 금융 감독 조치에 관한 법제분석 및 시사점 도출-제2차워크숍』(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41~42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데이터와 실제 사용자로부터 적절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두고 있다.<sup>243)</sup>

홍콩 금융관리국에는 핀테크규제 안전공간 제도를 전담하는 FFO(Fintech Facilitation Office)를 설치하고, “① 새로운 아이디어와 핀테크 서비스의 기업과 이와 관련된 행위 주체들이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 ② 새롭게 출현하는 시장의 참여자와 관리·감독자들이 해당 산업의 특성과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③ 핀테크 영역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해결방법을 탐색하는 조력자, ④ 홍콩 핀테크 관련 산업이 발전을 촉진하는 주체”<sup>244)</sup>로서 역할하고 있다.<sup>245)</sup>

## 2. 핀테크 규제 안전공간 제도 운용의 원칙과 특징

홍콩 금융관리국은 핀테크 규제 안전공간의 운용 원칙을 밝히고 있는 바, “① 홍콩 내에서 핀테크 및 다른 기술적 개념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② 규제 안전공간 내에서 은행 서비스나 상품을 관련 업계 종사자나 선택된 일부 소비자와 같이 제한된 사용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일반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③ 현행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sup>246)</sup>는 내용이 그것이다.

다만, 홍콩의 핀테크 규제 안전공간에 대한 참가 자격은 은행에게만 주어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규제안전공간이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243) 김인식, “아시아 각국 핀테크 규제안전공간 운영의 내용과 그 시사점”, 42면.

244) 김인식, “아시아 각국 핀테크 규제안전공간 운영의 내용과 그 시사점”, 42면.

245) 홍콩 금융관리국

(<http://www.hkma.gov.hk/eng/key-functions/international-financial-centre/fintech-facilitation-office-ffo.shtml>)

246) 김인식, “아시아 각국 핀테크 규제안전공간 운영의 내용과 그 시사점”, 42~43면.

## 제6절 시사점

### 1. 각국 Regulatory Sandbox 운용방식의 특징과 평가

#### (1) 영국

먼저, 영국의 경우 참가기업의 범위 측면에서 보자면, 코호트 방식을 통하여 혁신성/소비자편익/안전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업태나 Solution 구현방식에 제한을 받지 않고 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다양한 핀테크기업이 코호트 신청 기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그 발전 가능성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결제/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테스트베드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참가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FCA의 규제 완화 타당성 조사 기준에서는 규제장벽과 안전조치, 법적 안정성 등을 요소로 삼고 있는 바, 이러한 기준에 따라 FCA의 권한에 따른 규제유예나 법개정 작업을 통한 규제 면제 적용, 지침개정을 통한 다양한 규제완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EU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혁신기업의 Solution 구현과 금융감독조치의 적용을 위하여서는 영국의 금융 관련 법률의 개정 작업까지 Regulatory Sandbox 의 운용 목적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주도의 선제적 규제완화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별지도(Individual Guidance)와 같은 형태의 조언적 금융감독방식이나 규제면제(Waiver)와 같은 금융감독상의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상의 시범사업 성격을 띠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감독조치의 적용 사례는 최근 국내 Negative 규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일정한 금융감독 방식의 변화 가능성 검토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호주

호주의 경우에는 Regulatory Sandbox 참가를 통하여 인허가면제 조치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을 행위제한 방식으로 두고 있어서 주목할 만 하다. 즉, ‘① 소비자 규모를 한정하고, ②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위험성을 공지하고, ③ 관련 설명서 등의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④ 소비자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최소 1백만 호주달러 이상의 보장보험 가입, 테스트종료 후 12개월 이내 보상 가능)를 구축하도록 하며, ⑤ 금융감독당국이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갖출 것’ 등이 요구된다.<sup>247)</sup>

또한, 테스트 결과 보고 내용에 고객규모나 고객 통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외에도 ‘① 보고되고 다루어진 민원의 건수 및 내용, ② 외부분쟁해결절차인 EDR에 이관된 민원의 건수 및 내용, ③ 테스트기간 동안 확인되거나 직면한 문제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④ 장애로써 인식된 관련 규제들, ⑤ 수익과 비용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함으로써<sup>248)</sup> “규제적(Regulatory)” 관련 요소들에 대한 정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Regulatory Sandbox 참가기업에 대한 인허가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요건을 정하는 한편, 각 참가기업 특징에 따른 개별면제(Individual relief)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요건을 갖춘 참가기업에 대한 규제 테스트베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신청기업에 대한 참가승인 평가 기준에서 ‘혁신성’이나 기대효과, 경제조건, 위험관리 조치, 출구전략과 같은 기준 외에도, ‘소비자에 대한 이익’ 또는 ‘금융업

247)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p.22~23.

248)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Regulatory Guide 257), ibid, pp.30~31.

에 대한 이익'을 포함<sup>249)</sup>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샌드박스 종류 후에도 더 광범위한 규모의 금융서비스를 싱가포르 내에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갖출 것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역내 금융시장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4)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앙은행이 Regulatory Sandbox 참가기업에 대한 '비공식적 조정 (Informal Steer)' 방식의 감독기능을 수행한다.<sup>250)</sup> 특이할 만한 것은, 신청기업에 대한 참가승인 평가 기준에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이 테스트 종료 이후에 상업적 규모로 운영될 경우에 대한 성공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싱가포르의 경우에 그 평가기준에 '금융업에 대한 이익'이나 '역내 금융발전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취지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 (5) 홍콩

홍콩의 경우에는 Regulatory Sandbox에 대한 참가 자격이 은행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의 Regulatory Sandbox가 종합적인 핀테크산업 발전 및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는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우리나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운용에 대한 시사점

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고 있는 각 국가에서는 신청기업의 승인 평가기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혁신성', '소비자 편익', '준비성', '안전조치' 등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국가별로 '금융업에 대한 이익', '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도', '분쟁해결절차의 수립', '배상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49)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18.

250)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1.

또한, 금융감독조치 적용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규제유예기간 연장이나 조건변경 등의 신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샌드박스 운용 절차상 각 단계별로 필요한 평가기준을 적절하고 구체적인 요소들로 정하여 두고 있다. 특히, 샌드박스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서는 현행의 제도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핀테크기술업체의 참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테스트베드 운영상 필요한 각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단계별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조직의 개입을 통하여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제도 운영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에 대한 핀테크기술업체의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안정성과 법적 지위 확보도 필요하다. 즉,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운용을 통하여 참가기업에게는 신기술 기반의 금융상품과 서비스,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테스트베드 참가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규제요소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및 법개정 작업까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아래의 [표 31]은 영국 등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Regulatory Sandbox에서 샌드박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솔루션의 활용 및 금융감독조치의 적용을 고려한 단계별 운용절차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운용에 대한 절차 및 조직 운영 상 도입 가능한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표 31] 영국의 Regulatory Sandbox 운용 사례를 통하여 본  
우리나라의 운용 절차 수립방안

해외 사례		우리나라의 단계별 운용 절차 수립			
단계	수행 내용	단계	수행 내용	독립성/전문성 확보 (단계별 위원회 운영)	
1	혁신기업의 참가 신청	1	신기술사업자의 참가 신청서 제출		
2	FCA의 신청 검토	2	금융당국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3	테스트 방법 결정	3	신청인과 금융당국이 함께 시범사업 계획 수립		
4	FCA의 테스트 개시 허가		[운영위원회]의 승인	[운영위원회]	
5	테스트 실시 및 모니터링	4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감독시범사업(보조적 금융감독 조치 등) 실시	[멘토단] 운영	
		5	신청인의 신기술 시범사업 실시(소비자 보호조치 포함) -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6	결과보고서 제출 및 FCA의 평가	6	종료시 금융당국에 최종보고서 제출		
		7	금융당국의 결과 평가 절차	[평가위원회]	
7	테스트 통과된 서비스·상품에 대한 일반규제 적용 여부 결정	8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감독당국의 관련 조치	규제유예기간 연장	
				참가기업 손실액 정산 조치	[기금공제회]or[보험]
				기존 규제 적용	
	(FCA의 법규개정 작업)	9	금융당국과 평가위원회, 참가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 개선	[제도 개선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에는 EU법규 위반 금지 원칙)	10	신기술사업자/금융당국 간 제도적 환류시스템 완성	[관련 법률 제/개정]	

## 제4장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요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 제1절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의 정도
- 제2절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소
- 제3절 금융감독 시범사업 적용 대상/범위
-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제5절 시범사업 수행상의 고려 사항
- 제6절 금융규제의 적용방식 변화 필요성
- 제7절 소 결



## 제4장

#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요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하고 있는 금융감독 규제테스트베드는 아직까지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와 Open-API 등 일부 핀테크 분야에 대하여서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한정인가와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제도와 같이 현행 금융법 체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규제테스트베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영국 등은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 참가 업종에 다양한 코호트 기업들을 선발함으로써 로보어드바이저 영역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한정인가나 규제면제(waiver) 제도와 같이 우리 금융당국이 도입하고 있지 않은 형태의 다양한 규제완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핀테크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의 출시 수요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행 금융감독방식과 금융 관련 법제의 한계에 부딪혀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다양한 언론상의 지적은 앞서 제2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이러한 실무상의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무계/학계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대한 의견과 보조적 금융감독 조치, 미도입 금융감독 조치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금융당국이 2017년 3월 20일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도입 목적을 간단히 설명하고 관련 용례집을 배포한 다음,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문

하였다. 즉, 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 대한 인지 여부를 바탕으로 각각의 제도에 대한 의견과 규제테스트베드와 함께 수행해야 하는 보조적 금융감독조치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한편, 규제테스트베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 제·개정이 필요한지 설문하였다. 또한, 향후 테스트베드의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테스트베드 종료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평가기준 등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표 32]는 구체적인 설문항목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2] 금융감독 시범사업 관련 수요 및 현황 조사 설문 항목

구분	설문 주제	설문 항목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인지 여부	귀하는 위에서 설명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 찬반	귀하는 위에서 설명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에 대해 찬성 하십니까?
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정책 중 아래의 보기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4	보충적 금융감독조치 활용가능성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보충적 금융감독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의 보충적 금융감독조치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5	미도입 제도 찬반	재 활용되고 있는“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이외에도 현행 금융업법 체계와 맞지 않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 당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후 추진해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도입 제도의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한정인가 ② 특례적용 ③ 규제 면제 ④ 인허가 면제

구분	설문 주제	설문 항목
6	업체 선정 요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 요건 중 귀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개)
7	사업자 선정 판단 요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시 아래의 항목을 판단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좋은지 각 항목마다 표시해 주세요.
8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
9	테스트베드 운영상 중점 대처 사항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 애로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위 세 가지 정책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애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법령 개정 및 제정 찬반	현재 금융위원회가 도입중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현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외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금융업법 체계에 부합하는 법령 개정 및 특별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2	테스트베드 종료시 문제 대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테스트베드 종료시 업체의 우려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참가 종료 후 참여기업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
14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찬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참여할 경우, 참여기업의 비용문제 및 후발주자의 무임승차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지요?
14-1	참여기업 인센티브 종류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찬성한다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을까요? (두 개)

구분	설문 주제	설문 항목
15	테스트베드 평가항목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어떤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하면 좋을지, 아래의 항목에서 각 항목마다 표시해 주세요.
15-1	평가항목 자유 의견	위의 15번의 평가 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평가항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16	신 금융서비스 활성화 애로점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핀테크 등 온라인 기반 금융서비스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	금융규제 개선 관련 자유 의견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제1절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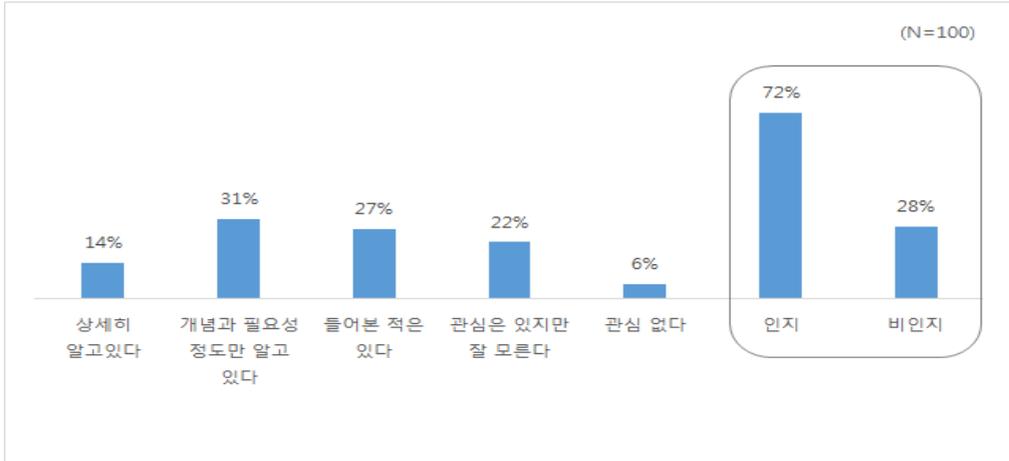
###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인지 여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상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14%, ‘개념과 필요성 정도만 알고 있다’는 응답이 31%, ‘들어본 적은 있다’는 응답이 27%,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이 22%, ‘관심없다’는 응답이 6%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총 72%로, 비인지하고 있다는 응답 2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특성별 분류에 따라 살펴본다면, 금융업계 실무자들 중에서도 핀테크 업계의 경우 70%가 개념과 필요성 등에 대한 정보 이상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핀테크 업계 실무자들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인지 여부

정량 문 1) 귀하는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표 3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례수	상세히 알고 있다	개념과 필요성 정도만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관심 있지만 잘 모른다	관심 없다
전 체		100	14%	31%	27%	22%	6%
대분류	전문가	20	35%	35%	15%	15%	-
	업 계	60	8.3%	35%	30%	23.3%	3.3%
	일반소비자	20	10%	15%	30%	25%	20%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b>16.7%</b>	<b>53.3%</b>	16.7%	13.3%	-
	은 행	15	-	26.7%	33.3%	33.3%	6.7%
	금융투자	8	-	-	62.5%	25%	12.5%
	보 험	7	-	14.3%	42.9%	4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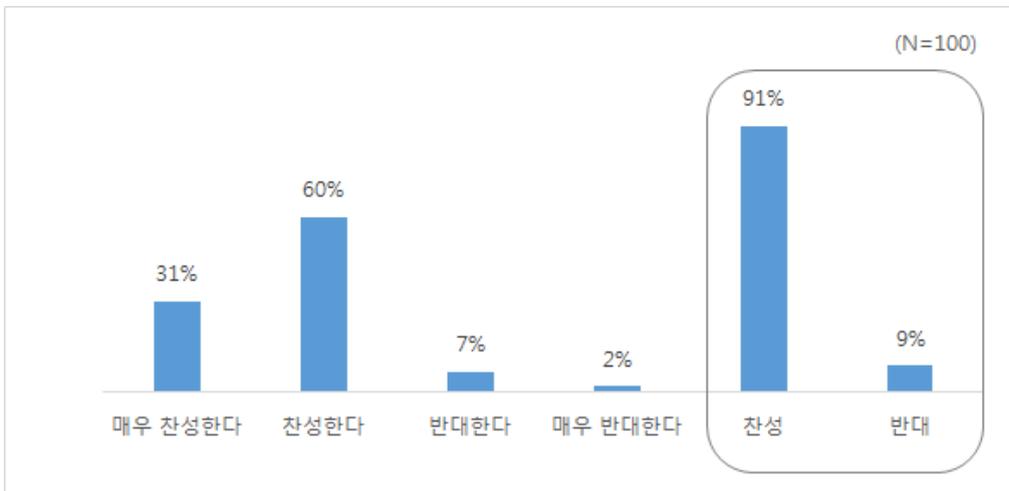
## 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 찬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의 찬반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31%, ‘찬성한다’는 응답이 60%, ‘반대한다’는 응답이 7%,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2%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91%, 대체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9%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성별 분류에서는 핀테크 실무자들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찬성 의견이 96.7%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도 12.5%로 나타나 주의를 끌게 한다.

[그림 6]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 찬반

정량 문 2) 귀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표 34]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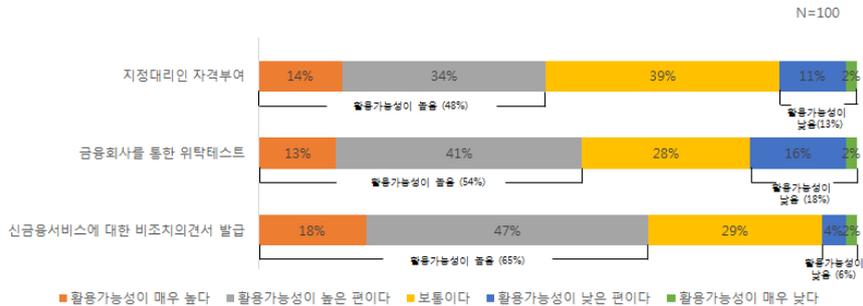
		사례수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한다	반대 한다	매우 반대 한다
전 체		100	31.0	60.0	7.0	2.0
대분류	전문가	20	45.0	45.0	5.0	5.0
	업 계	60	26.7	65.0	6.7	1.7
	일반소비자	20	30.0	60.0	10.0	-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36.7	60.0	3.3	-
	은 행	15	20.0	66.7	13.3	-
	금융투자	8	12.5	75.0	-	12.5
	보 험	7	14.3	71.4	14.3	-

### 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 중 활용가능성에 대한 설문에서,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이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65%가 응답하였으며,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서비스’는 54%, ‘지정대리인 자격부여’는 48%가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7]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

정량 문 3)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정책 중 아래의 보기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정책 별 상세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발급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고시 「법령 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 제4호의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로 정의되며, 국무총리훈령인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 제4호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금융회사 등에 새로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금융행정지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조치 의견서의 발급은 금융회사 등의 당사자가 특정서비스 및 상품판매 행위를 하기 전에 금융감독 당국에 그 행위의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문의하면, 금융감독 당국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회신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비조치 의견서 발급은 기존의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의등장이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된다.<sup>25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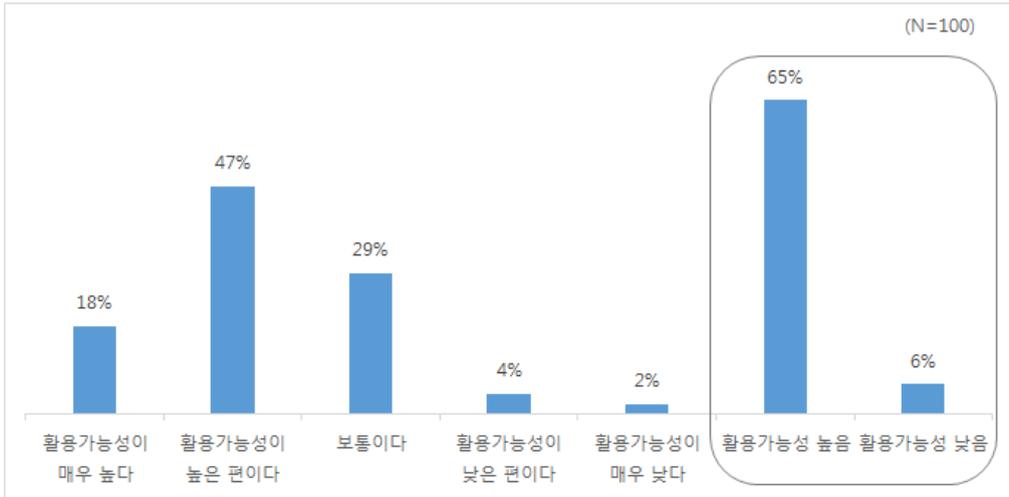
이러한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발급”의 활용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18%, ‘활용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는 응답은 47%, ‘보통이다’는 응답은 29%, ‘활용가능성이 낮은 편이다’는 응답은 4%,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응답은 2%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그룹 응답자와 핀테크업계 실무자들의 경우 비조치 의견서 발급의 활용성을 비교적 높게 판단하여 응답한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이러한 비조치 의견서 발급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중요성에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51) 김병덕, 『국내 금융환경을 감안한 비조치 의견서 제도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원, 2면; 김은집·허은진, “비조치 의견서제도에 대한 소고”, 『BFL』 제75호, 2016.1, 70면.

[그림 8]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비조치 의견서 발급)

정량 문 3-1)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정책 중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발급”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 (비조치 의견서 발급)

		사례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활용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활용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다
전 체		100	18.0	47.0	29.0	4.0	2.0
대분류	전문가	20	25.0	50.0	10.0	5.0	10.0
	업 계	60	18.3	41.7	35.0	5.0	-
	일반소비자	20	10.0	60.0	30.0	-	-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33.3	40.0	23.3	3.3	-
	은 행	15	6.7	33.3	53.3	6.7	-
	금융투자	8	-	50.0	50.0	-	-
	보 험	7	-	57.1	28.6	14.3	-

## 2)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는 미인가 핀테크기술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하여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sup>252)</sup>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의 활용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13%, ‘활용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는 응답은 41%, ‘보통이다’는 응답은 28%, ‘활용가능성이 낮은 편이다’는 응답은 16%,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응답은 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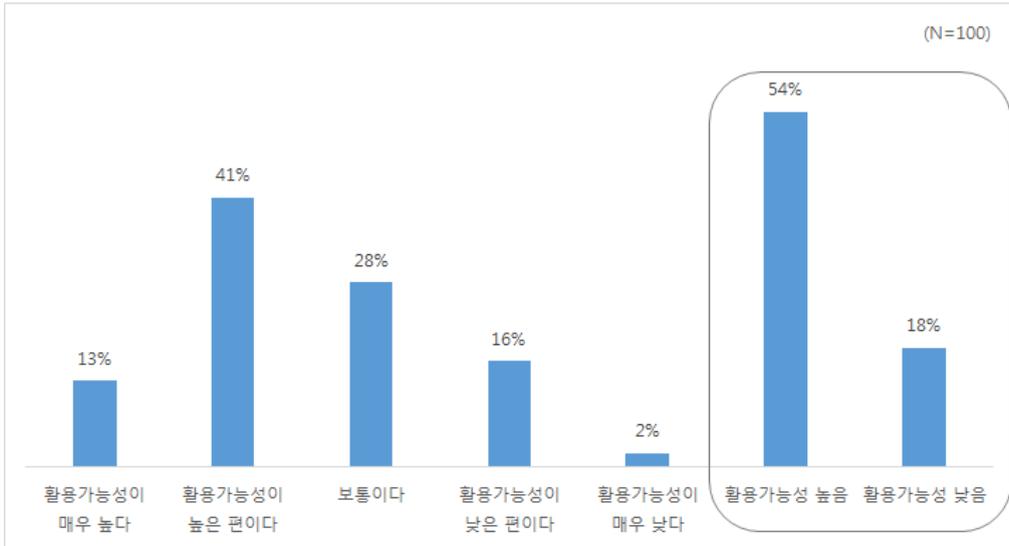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의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54%로 활용가능성이 낮다는 견해(1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위탁테스트의 경우, 설문결과는 핀테크업계 실무자와 다른 설문자 그룹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핀테크업계 실무자의 경우 56.7% 정도로만 그 활용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서 평균 수준의 기대감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핀테크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잘 반영할 필요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252) 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마련”, 2017. 3. 2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3면.

[그림 9]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위탁테스트)

정량 문 3-2)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정책 중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6]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 (위탁테스트)

		사례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활용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활용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다
전 체		100	13.0	41.0	28.0	16.0	2.0
대분류	전문가	20	20.0	35.0	25.0	15.0	5.0
	업 계	60	11.7	41.7	30.0	15.0	1.7
	일반소비자	20	10.0	45.0	25.0	20.0	-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10.0	46.7	26.7	13.3	3.3
	은 행	15	13.3	33.3	40.0	13.3	-
	금융투자	8	12.5	37.5	37.5	12.5	-
	보 험	7	14.3	42.9	14.3	28.6	-

### 3)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sup>25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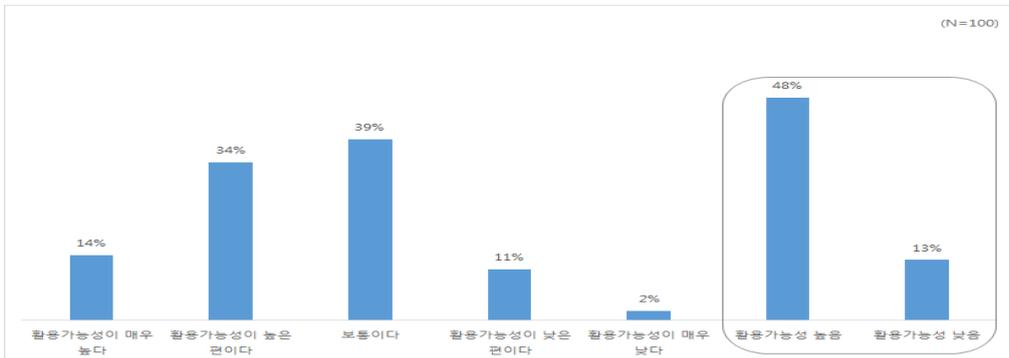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의 활용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14%, ‘활용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는 응답은 34%, ‘보통이다’는 응답은 39%, ‘활용가능성이 낮은 편이다’는 응답은 11%,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응답은 2%로 나타났다.

“지정대리인 자격부여”의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48%로 활용가능성이 낮다는 견해(1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지정대리인 자격부여 제도에 대하여서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나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 테스트 제도에 비해서 그 활용가능성을 다소 낮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지정대리인 자격부여)

정량 문 3-3)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정책 중 “지정대리인 자격부여”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53) 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마련”, 2017. 3. 2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3면.

특히, 은행 실무자들의 경우 활용가능성을 26.6%만이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활용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도 다른 그룹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정대리인 자격부여에 대한 은행권의 기대가 상당히 낮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금융회사가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본질적 업무’의 영업 범위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 (지정대리인 자격 여부)

		사례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활용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활용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다
전 체		100	14.0	34.0	39.0	11.0	2.0
대분류	전문가	20	25.0	30.0	30.0	10.0	5.0
	업 계	60	13.3	36.7	36.7	11.7	1.7
	일반소비자	20	5.0	30.0	55.0	10.0	-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16.7	36.7	33.3	10.0	3.3
	은 행	15	13.3	13.3	53.3	20.0	-
	금융투자	8	12.5	50.0	37.5	-	-
	보 험	7	-	71.4	14.3	14.3	-

#### 4. 보충적 금융감독조치 활용가능성

영국은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 제도 도입과 함께 금융감독 상 다양한 시범적 감독방식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개별지도(individual guidance)와 같은 조언적 금융감독방식이나 규제면제(waiver)와 같은 특례적용방식이 그것이다. 특히, 영국의 개별지도(individual guidance)는 “테스트 수행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테스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sup>254)</sup>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개별지도 제도는 우리나라의 유권해석과 그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많으며,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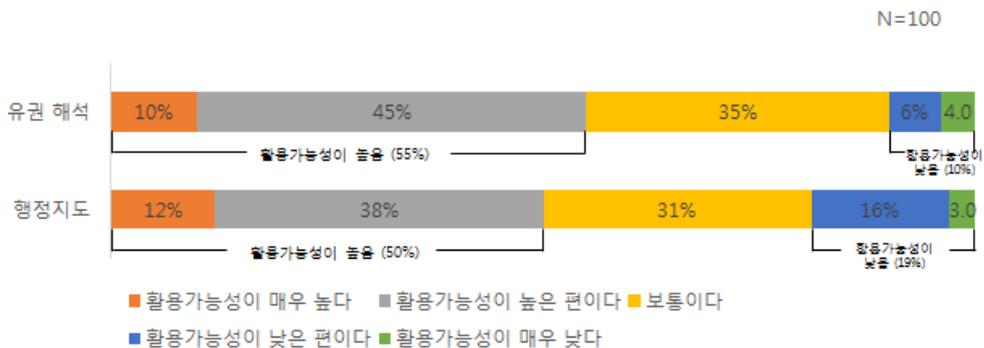
254) 구자현 외, 『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2016. 9, KDI, 140면.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제도<sup>255)</sup>, 행정지도 등 우리 금융당국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감독방식들의 보충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고시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과 국무총리훈령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에서도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와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금융위원회가 도입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대한 적용 제도 이외에도 유권해석이나 행정지도 등 보충적 금융감독조치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설문에, ‘유권 해석’에 대하여서는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55%가 응답하였으며, ‘행정지도’는 50%가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1] 보충적 금융감독조치 활용 가능성

정량 문 4)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보충적 금융감독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의 보충적 금융감독 조치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마다 표시주세요.



255) 비조치의견서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서는 기존의 다양한 논의들을 통하여 행정법상 ‘확약’이라는 해석과 ‘행정지도’라는 해석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김진철, “비공식적 행정행위로서의 No-action Letter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2008, 322~323면; 한국행정연구원, 『사전심사청구제도의 확대적용 방안: No-Action Letters를 중심으로』, 2007.6., 5면; 김병덕·이순호·윤혜선, 『국내 금융환경을 감안한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16.298~127면 등), 본 보고서에서는 비조치의견서의 법적 성격 자체에 대한 논의 보다는 보충적 금융감독조치로서의 금융감독 방식의 활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로 한다.

보충적 금융감독조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유권해석과 행정지도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설문은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sup>256)</sup>로서, 우리 금융당국은 보충적 금융감독 조치로 활용 중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2조 제4호 “금융행정지도”의 정의 및 제3장(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방식 및 절차 등) 제7조~제16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운영규정 제2조 제4호의 단서에 따르면, 금융행정지도는 감독 행정작용이나, 법령 해석(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통보, 분쟁조정 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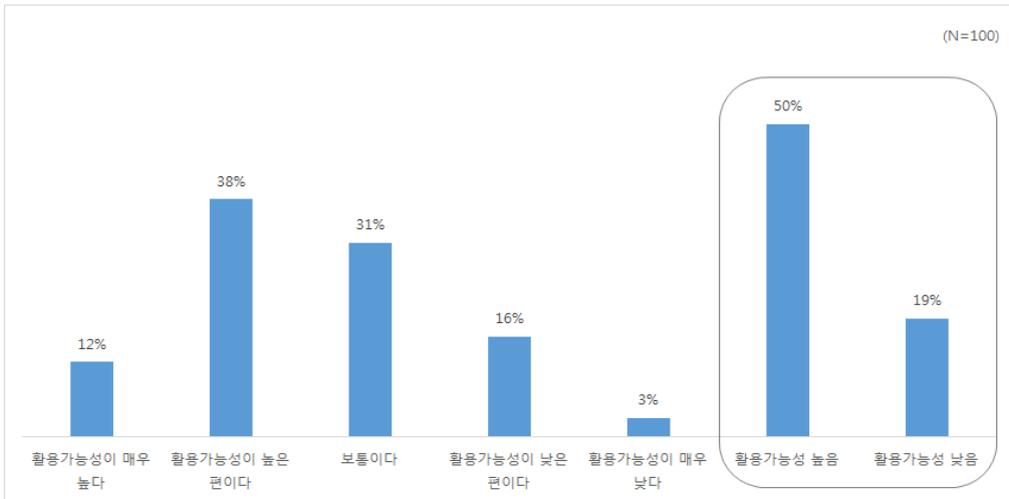
금융행정지도의 경우에도 운영규정 제2조 4호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 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조문의 형식으로 하는 행위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하여, 그 행정목적은 “금융회사 등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지도”의 활용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12%, ‘활용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는 응답은 38%, ‘보통이다’는 응답은 31%, ‘활용가능성이 낮은 편이다’는 응답은 16%,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응답은 3%로 나타났다. “행정지도”의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50%로 활용가능성이 낮다는 견해(1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5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358면.

[그림 12] 보충적 금융감독조치 활용 가능성(행정지도)

정량 문 4-1)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보충적 금융감독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충적 금융감독조치 중 “행정지도”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성별 분석결과를 보건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은행 실무자들의 경우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20%에 불과한 반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로서 다른 응답자 그룹에 비하여 2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핀테크업계 실무자들의 경우 활용가능성을 56.6%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핀테크업계를 제외한 다른 금융권 실무자들의 응답비율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이는 핀테크업계 실무자들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보충적 금융감독 조치인 행정지도의 활용가능성을 다른 금융업계 실무자들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금융투자업계 실무자들의 경우 행정지도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12.5%, 은행 실무자들의 경우 20%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금융규제가 강한 업종의 경우 행정지도나 다음 설문항목인 유권해석 등의 보충적 금융 감독 조치에 대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

[표 38] 보충적 금융 감독 조치 활용가능성(행정지도)

		사례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활용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활용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다
전 체		100	12.0	38.0	31.0	16.0	3.0
대분류	전문가	20	25.0	40.0	15.0	10.0	10.0
	업 계	60	8.3	31.7	38.3	20.0	1.7
	일반소비자	20	10.0	55.0	25.0	10.0	-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13.3	43.3	26.7	13.3	3.3
	은 행	15	-	20.0	40.0	40.0	-
	금융투자	8	-	12.5	75.0	12.5	-
	보 험	7	14.3	28.6	42.9	14.3	-

## 2) 유권해석

유권해석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금융규제 기준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일정한 해석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유사한 개념으로 “법령해석”이 있으며, 이는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인 작업’<sup>257)</sup>을 말한다. 특히, 법제처 등이 ‘통상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정부유권해석”이라고 한다.

최근, 핀테크와 관련하여 K뱅크의 인가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 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과정의 투명성과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을 통한 객관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sup>258)</sup>

257) 법제처 홈페이지 - 법령·해석정보 - 법령해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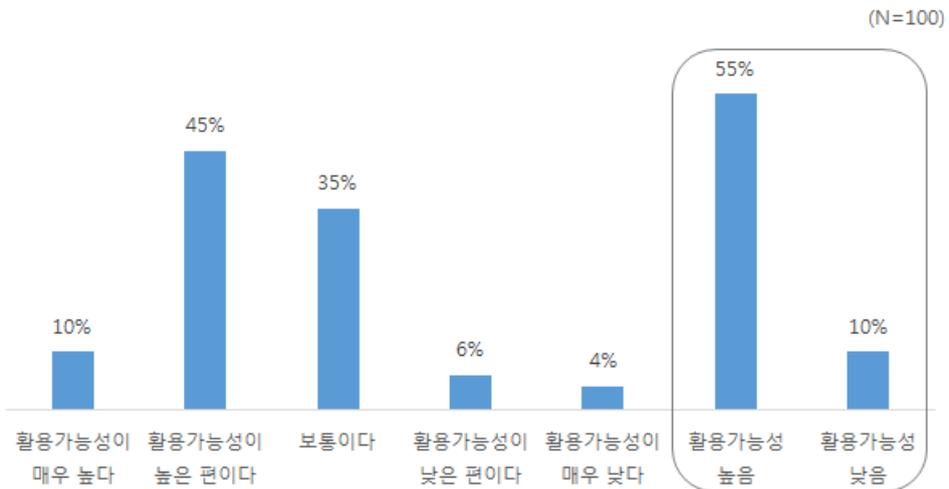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lawAnalysisInfo/lawAnalysisInfos> 2017.10.31. 최종검색)

258)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 현황 및 1차 권고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10.11.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활용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10%, ‘활용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는 응답은 45%, ‘보통이다’는 응답은 35%, ‘활용가능성이 낮은 편이다’는 응답은 6%,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응답은 4%로 나타났다. “행정지도”의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55%로 활용가능성이 낮다는 견해(1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13] 보충적 금융감독조치 활용 가능성(유권해석)

정량 문 4-2)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보충적 금융감독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충적 금융감독조치 중 “유권해석”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성별 결과를 본다면, 전문가 그룹은 70%, 일반소비자 60%가 유권해석의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금융업계에서는 유권해석의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응답비율이 은행업계와 금융투자업계 실무자들 각각 33.3%와 35%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시범인가 과정에서의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점 지적 이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게 한다. 특히, 금융규제가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져 있는 금융투자업의 경우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제도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은행업의 경우 보다 매우 높게 나온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유권해석이 나 행정지도에 대한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각각 25%, 12.5%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은 향후 더욱 구체적인 연구 수행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39] 보충적 금융 감독 조치 활용가능성(유권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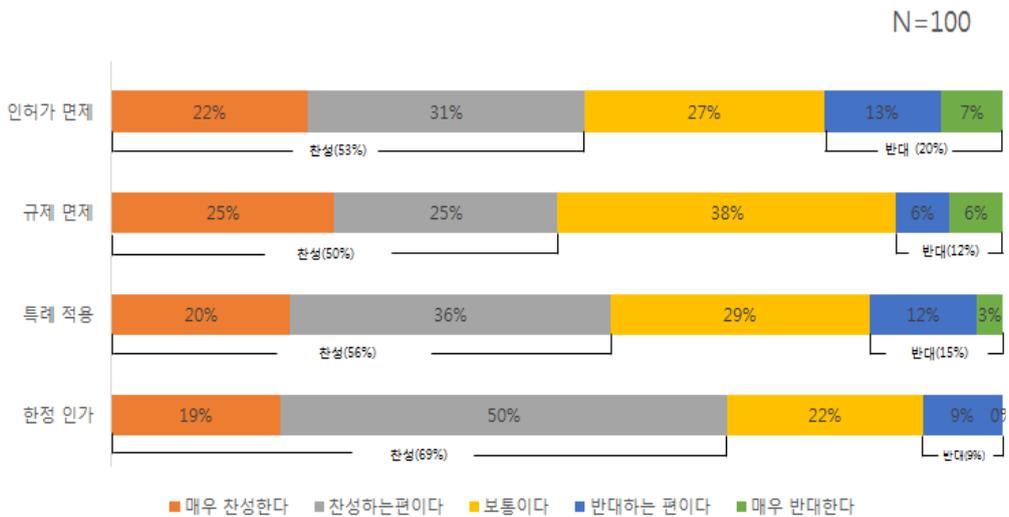
		사례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활용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활용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다
전 체		100	10.0	45.0	35.0	6.0	4.0
대분류	전문가	20	25.0	45.0	15.0	-	15.0
	업 계	60	8.3	40.0	43.3	6.7	1.7
	일반소비자	20	-	60.0	30.0	10.0	-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13.3	46.7	30.0	6.7	3.3
	은 행	15	-	33.3	53.3	13.3	-
	금융투자	8	-	25.0	75.0	-	-
	보 험	7	14.3	42.9	42.9	-	-

### 5. 미도입 제도에 대한 찬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어야 할 미도입 제도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에서, ‘한정인가’의 도입은 69%가 찬성하였고, ‘특례적용’에 대하여서는 56%, ‘인허가 면제’ 53%, ‘규제 면제’ 50% 순으로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림 14] 미도입 제도 찬반

정량 문 5)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이외에도 현행 금융업법 체계와 맞지 않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 당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후 추진해야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도입 제도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각 항목마다 표시해 주세요.



### 1) 한정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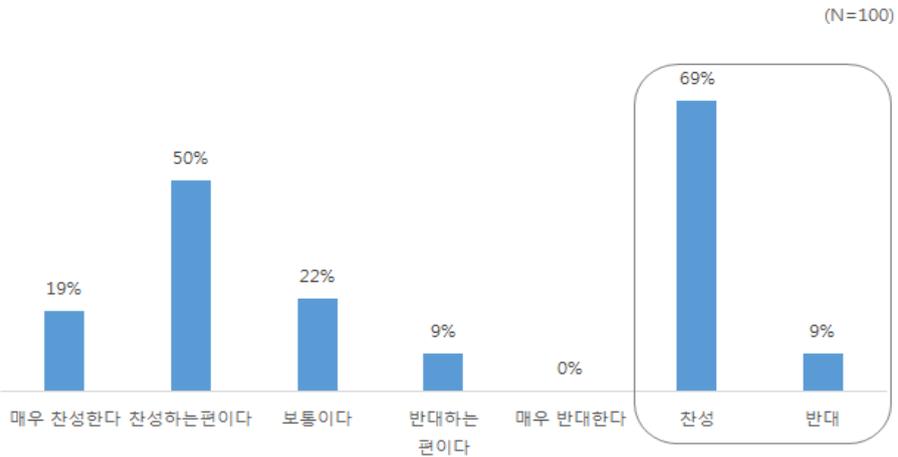
“한정 인가”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법규상의 인가요건 중에서 규제테스트베드 내에서의 솔루션 테스트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한정인가(tailored authorization)를 부여하여 규제테스트베드 범위 내에서 해당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선택적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 핀테크 관련 한정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 사례를 들 수 있겠다. 즉,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서만 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사례에서 부관 형식으로 영업방식에 대한 제한을 가한 바 있다.

향후, 금융규제안전공간 제도의 운용 발전 현황에 따라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영업범위 관련 제한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동안 인가를 해주는 한시인가의 형태 도입도 기대된다.

이러한 “한정 인가” 제도의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19%,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50%, ‘보통이다’는 응답은 22%,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9%,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한정인가”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가 69%로 반대한다는 견해(9%)보다 60% 이상 현저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15] 미도입 제도 찬반(한정인가)

정량 문 5-1)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이외에도 현행 금융업법 체계와 맞지 않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 당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후 추진해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한정인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한정인가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서는 전문가 그룹이나 일반소비자가 각각80%, 85%의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업계보다 더욱 그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금융업계 실무자들 중에서는 핀테크업계 실무자들이 찬성의견이 73.4%로 가장 높게 집계된 반면, 다른 금융업종의 경우 찬성의견이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었다.

[표 40] 미도입 제도 찬반(한정인가)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100	19.0	50.0	22.0	9.0	0
대분류	전문가	20	45.0	35.0	10.0	10.0	-
	업 계	60	13.3	46.7	31.7	8.3	-
	일반소비자	20	10.0	75.0	5.0	10.0	-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16.7	56.7	23.3	3.3	-
	은행	15	6.7	40.0	40.0	13.3	-
	금융투자	8	12.5	25.0	50.0	12.5	-
	보험	7	14.3	42.9	28.6	1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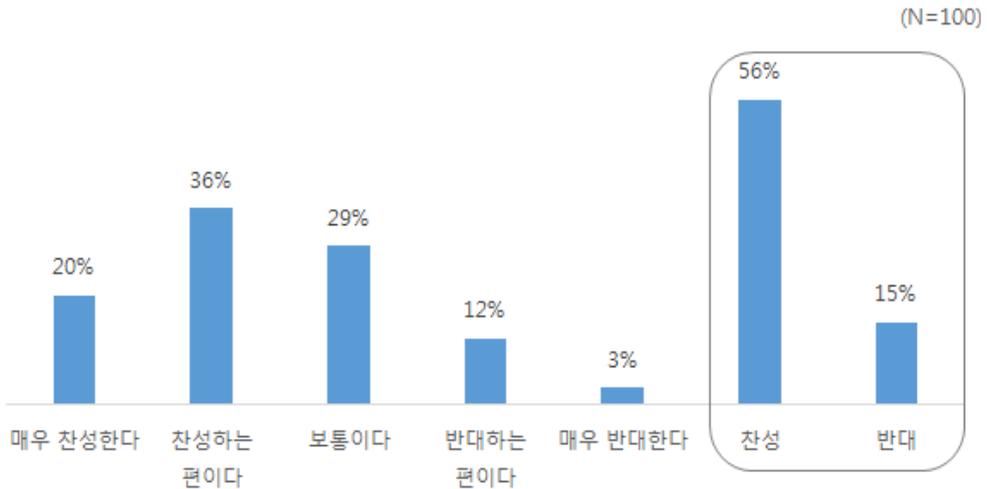
## 2) 특례적용

특례 적용은 해당 업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면제(waiver) 방식과 달리 특정 금융회사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금융규제를 면제하거나 변경하여 일부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 금융당국은 특례적용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국제금융 관련 법규 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특례적용 방식의 조치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20%,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36%, ‘보통이다’는 응답은 29%,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2%,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3%으로 나타났다. “특례 적용”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가 56%로 반대한다는 견해(15%)보다 더 높았다.

[그림 16] 미도입 제도 찬반(특례적용)

정량 문 5-2)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이외에도 현행 금융업법 체계와 맞지 않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 당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후 추진해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특례적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특례적용 방식의 도입에 대하여서는 핀테크업계 실무자의 찬성 비율(60%) 보다 금융투자업계 실무자의 찬성 비율(75%)이 더 높게 조사되어 흥미를 끌게 한다. 이는 금융규제가 엄격하고 복잡하지만, 핀테크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요가 높은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규제 특례적용을 통한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그 활용도가 더욱 높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41] 미도입 제도 찬반(특례적용)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100	20.0	36.0	29.0	12.0	3.0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대분류	전문가	20	35.0	20.0	20.0	15.0	10.0
	업 계	60	20.0	35.0	31.7	11.7	1.7
	일반소비자	20	5.0	55.0	30.0	10.0	-
중분류	핀테크	30	23.3	36.7	26.7	13.3	-
	은행	15	6.7	13.3	60.0	13.3	6.7
	금융투자	8	37.5	37.5	12.5	12.5	-
	보험	7	14.3	71.4	14.3	-	-

### 3) 규제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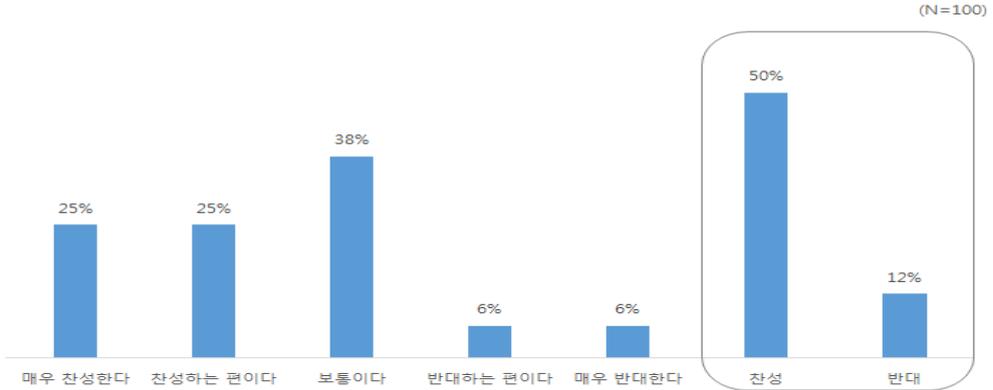
규제 면제는 영국과 같이 FCA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해당기업이 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CA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 특정 규제를 유예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규제 면제(waiver) 제도를 의미한다. 특정기업의 특정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혁신성을 가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춘 모든 업체에게 관련 규제면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금융법체계가 Negative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특정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법률 수권 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규제 면제의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25%,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25%, ‘보통이다’는 응답은 38%,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6%,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6%으로 나타났다.

“규제 면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가 50%로 반대한다는 견해(12%)보다 3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17] 미도입 제도 찬반(규제면제)

정량 문 5-3)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이외에도 현행 금융업법 체계와 맞지 않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 당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후 추진해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규제 면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또한,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위의 특례적용과 동일하게 금융투자업계 실무자들의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75%로 조사되어 규제면제 제도에 대하여서도 특례적용과 마찬가지로 실무적 기대감이 높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표 42] 미도입 제도 찬반(규제 면제)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체		100	25.0	25.0	38.0	6.0	6.0
대분류	전문가	20	25.0	20.0	35.0	5.0	15.0
	업계	60	28.3	26.7	33.3	6.7	5.0
	일반소비자	20	15.0	25.0	55.0	5.0	-
중분류	핀테크	30	33.3	26.7	30.0	6.7	3.3
	은행	15	6.7	13.3	53.3	13.3	13.3
	금융투자	8	37.5	37.5	25.0	-	-
	보험	7	42.9	42.9	14.3	-	-

#### 4) 인허가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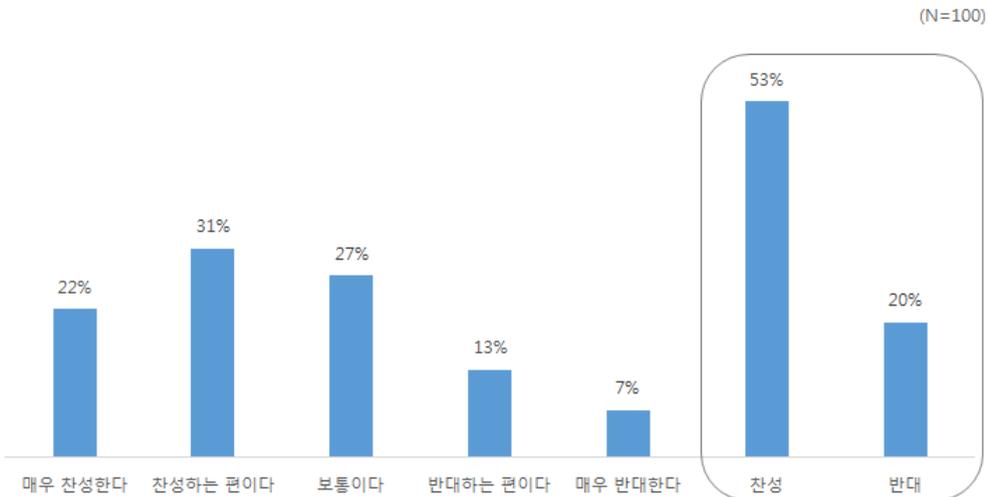
인허가 면제는 일부 금융서비스나 상품판매 등에 대하여 현행 법규상 적용되는 인허가 없이 서비스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이러한 인허가면제제도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인허가 면제의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22%,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31%, ‘보통이다’는 응답은 27%,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3%,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7%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면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가 53%로 반대한다는 견해(20%)보다 더 높았다.

[그림 18] 미도입 제도 찬반(인허가 면제)

정량 문 5-4)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이외에도 현행 금융업법 체계와 맞지 않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 당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후 추진해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인허가 면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특성별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정인거나 특례적용, 규제면제 등의 설문에서와 달리 금융투자업계 실무자들의 찬성의견 보다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찬성의견(71.5%)가 높게 집계되어 규제테스트베드 내에서 특정 보험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허가 면제 수요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핀테크업계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3.3%에 그치는 반면 80%의 응답자가 찬성하고 있어서 이목을 끈다.

[표 43] 미도입 제도 찬반(인허가 면제)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100	22.0	31.0	27.0	13.0	7.0
대분류	전문가	20	35.0	15.0	20.0	20.0	10.0
	업 계	60	23.3	36.7	26.7	8.3	5.0
	일반소비자	20	5.0	30.0	35.0	20.0	10.0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33.3	46.7	16.7	3.3	-
	은 행	15	6.7	20.0	40.0	13.3	20.0
	금융투자	8	12.5	25.0	50.0	12.5	-
	보 험	7	28.6	42.9	14.3	14.3	-

## 6.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인지 정도나 찬성 여부, 현재 국내 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 도입된 새로운 금융감독 방식에 대한 찬반, 미도입제도에 대한 도입 찬반 등의 정량조사 설문을 통하여 각 설문항목에 대한 각 분야별로 규제테스트베드 운용이나 보조적 금융감독조치 등 금융감독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핀테크업계 주요 실무자들과 전문가회의 방식으로 정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 (1) 정성조사 결과

###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 대한 업계 실무자들의 기대감

[정성조사 문1]

<제시문>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실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9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정량조사 문2), 지정대리인 자격부여,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비조치의견서 발급에 대하여 각각 그 활용성이 낮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13%(긍정48%), 18%(긍정54%), 6%(긍정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지도와 유권해석 등 보조적 금융감독조치에 대하여서도 반대하는 의견은 19%(찬성의견 50%)와 10%(찬성의견 55%)로 집계되어 전체적으로 금융감독조치에 대한 그 활용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현행의 금융감독 시스템과 현 단계에서 금융위가 실시하고 있는 규제테스트베드에 대하여 정량조사 응답자들이 대부분이 호의적인 기대와 지지를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추가질문>

그렇다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 설문에서는(정량조사 문14) 그 결과가 찬성 67%, 반대 7%로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의미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에 대한 호의적인 기대나 지지와 관련이 있을까요?

<추가질문>

한편, 2016년 9월 KDI의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신청의향이 없다고 한 답변은 54%(있다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신청의향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핀테크 기업의 대부분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 규제당국과의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핀테크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지, 아니면 이를 통해 또 다른 규제의 명목을 찾고자 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 규제 당국이 원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방향성은, 소비자 보호도 증진시키고, 핀테크 산업도 증진시키고자 함인데,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 제도만으로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들어가지 못하는 업권이 대부분이다.

## 2)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제도

[정성 문2-6]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정책 이외에도 현행 금융업법 체계와 맞지 않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당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후 추진해야 할 제도들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한정인가(69%), 특례적용(56%), 인허가면제(53%), 규제면제(50%) 순으로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5). 이러한 응답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핀테크 업체의 경우, 제도에 막혀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체 인가 요건 중 테스트베드 시행에 필요한 인가 요건만 갖추면 한시인가를 부여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한정인가 방법을 가장 선호하게 된다.

- 인허가면제와 규제면제의 경우에는 금융법 체계나 관련 규제 체계가 복잡한 측면이 있어 실현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실무상 최소한의 검증도 받지 않은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 경우 신뢰를 기초로 하는 핀테크시장 자체의 존립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범위를 다방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 다만, 업종별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각 제도별로 그 찬성의견에 변화를 보이는 경우 (보험업종의 경우 인허가면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오거나, 특례적용이나 규제면제의 경우 금융투자업종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옴)에는 그 세부업종별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제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2) 시사점

###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 대한 업계 기대효과

핀테크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감독방식의 변화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에도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규제테스트베드나 보충적 금융감독조치의 적용과 같은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각 조치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해당 규정들을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법 제정 여부나 법적 근거 규정 도입에 대한 논의는 해당 설문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 2)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제도

현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에 적용되는 금융감독 조치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나 지정대리인 제도, 위탁테스트 제도에 그치고 있다. 한정인가의 경우, 핀테크분야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시범인가 과정에서 영업방식의 제한을 통한 한정인가를 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테스트베드 운영상 적용시킨 금융감독 시범사업 사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량조사 결과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관련 금융감독 조치들의 도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찬성의 의견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한정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정성조사 결과에서는 이러한 정량조사 결과의 원인을 ① 복잡다단한 금융법 체계 내에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②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금융/핀테크 영역의 경우 면제기업들의 시장진출이 시장 자체의 존립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③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바, 한정인가 방식의 금융감독 시범사업 외에 다른 조치들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각 제도의 도입 시에는 정성조사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i) 전체 금융법 체계의 정합성이나 국제금융규범 수준에 맞는 감독조치의 도입을 통하여 제도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ii) 특례적용 대상이나 규제면제/인허가면제 대상 선정시에 혁신성 기준 외에도 소비자편익이나 소비자보호 기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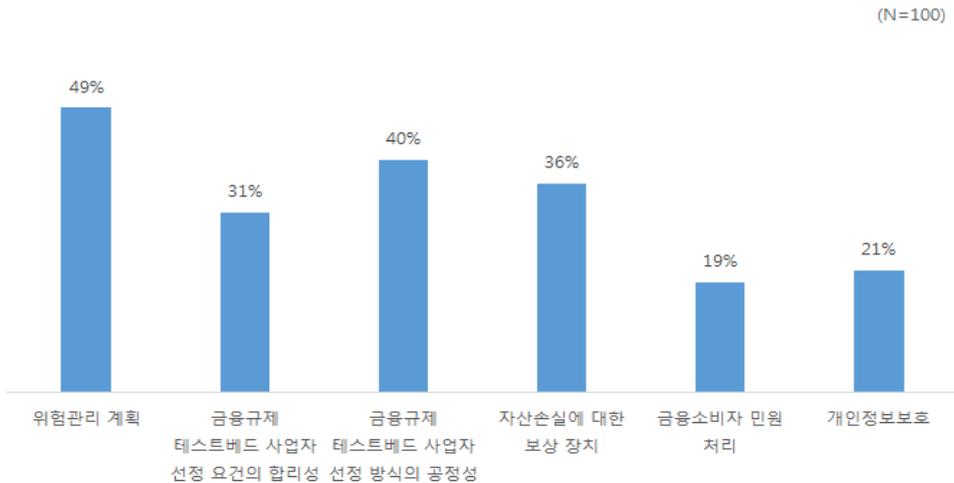
## 제2절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소

### 1. 규제테스트베드 운영상 중점 대처 사항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위험관리 계획’(49%),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 방식의 공정성’(40%), ‘자산손실에 대한 보상 장치’(36%),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 요건의 합리성’(31%), ‘개인정보보호’(21%), ‘금융소비자 민원 처리’(1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상 중점 대처 사항

정량 문 9)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를 골라 주세요. (복수 응답)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문가/업계/소비자 간 그룹별 조사결과에 패턴 차이가 있어서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의 경우 테스트베드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중 중점 대처 사항에 대하여, 위험관리계획(65%), 사업자 선정방식의 공정성(40%), 소비자민원처리(30%), 자산손실에 대한 보상장치(25%), 선정 요건의 합리성(20%)과 개인정보보호(20%)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위험관리계획(45%)와 자산손실에 대한 보상장치(45%)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소비자민원처리에 대하여서는 20% 정도의 응답률을 보여 개인정보보호(30%) 응답률 보다 다소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또한, 업계 실무자들 중에서도 핀테크업계 실무자들과 다른 금융업 실무자들의 경우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위험관리계획(60%)과 자산손실에 대한 보상장치(46.7%), 사업자 선정방식의 공정성(40%), 개인정보보호(26.7%), 소비자민원처리(20%), 사업자 선정요건의 합리성(6.7%) 순서로 집계되었으나, 금융투자업계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자선정요건의 합리성(62.5%), 위험관리계획

(50%), 사업자선정방식의 공정성(50%), 자산손실에 대한 보상장치(25%)로만 응답하여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핀테크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방식의 공정성과 선정요건의 합리성, 위험관리계획, 자산손실에 대한 보상장치, 금융소비자민원처리, 개인정보보호 순서로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중점 대처사항을 꼽고 있다.

[표 44]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상 중점 대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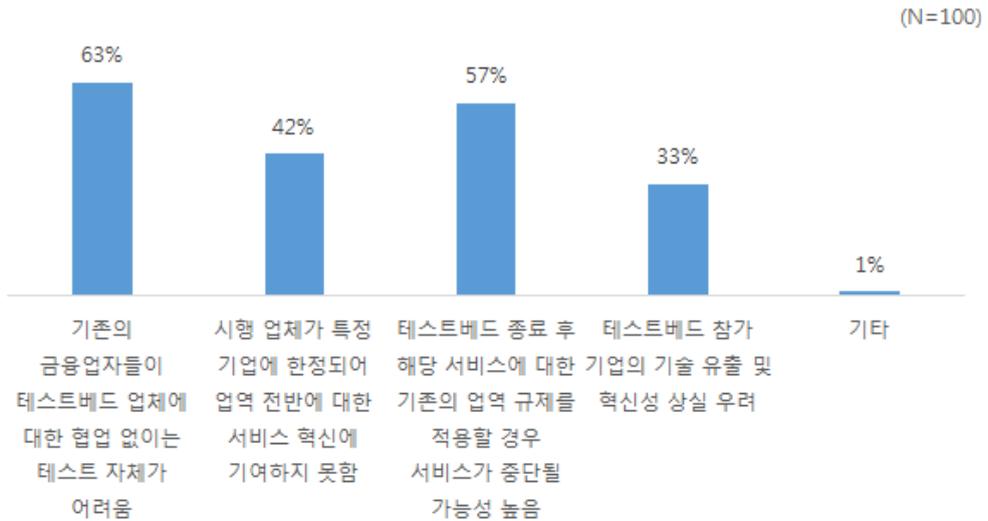
		사례수	위험관리 계획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사업자 선정 요건의 합리성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사업자 선정 방식의 공정성	자산손실에 대한 보상 장치	금융 소비자 민원 처리	개인 정보 보호
전 체		100	49.0	31.0	40.0	36.0	19.0	21.0
대분류	전문가	20	65.0	20.0	40.0	25.0	30.0	20.0
	업 계	60	45.0	33.3	46.7	36.7	15.0	18.3
	일반소비자	20	45.0	35.0	20.0	45.0	20.0	30.0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36.7	43.3	50.0	33.3	16.7	13.3
	은 행	15	60.0	6.7	40.0	46.7	20.0	26.7
	금융투자	8	50.0	62.5	50.0	25.0	-	-
	보 험	7	42.9	14.3	42.9	42.9	14.3	42.9

## 2.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되는 실무상의 애로사항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의 예상 애로점에 대해, ‘기존 금융업자들이 테스트베드 업체에 대한 협업 없이는 테스트 자체가 어려움’(63%), ‘테스트베드 종료 후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업역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 높음’(57%), ‘시행 업체가 특정 기업에 한정되어 업역 전반에 대한 서비스 혁신에 기여하지 못함’(42%), ‘테스트 베드 참가 기업의 기술 유출 및 혁신성 상실 우려’(3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되는 실무상의 애로사항

정량 문 10)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세 가지 정책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애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를 골라주세요. (복수 응답)



특성별 분류에 따라 살펴보다라도 전체적으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기존의 금융업자들의 테스트베드 업체에 대한 협업 없이는 테스트 자체가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가 가지는 주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향후 테스트베드 운영상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되는 실무상의 애로사항

	사례수	기존의 금융업자들이 테스트베드 업체에 대한 협업 없이는 테스트 자체가 어려움	시행 업체가 특정 기업에 한정되어 업역 전반에 대한 서비스 혁신에 기여하지 못함	테스트베드 종료 후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업역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 높음	테스트베드 참가 기업의 기술 유출 및 혁신성 상실 우려	기타	
전 체	100	63.0	42.0	57.0	33.0	1.0	
대분류	전문가	20	60.0	45.0	60.0	30.0	-
	업 계	60	65.0	40.0	61.7	31.7	-
	일반소비자	20	60.0	45.0	40.0	40.0	5.0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63.3	40.0	63.3	33.3	-
	은 행	15	73.3	26.7	66.7	33.3	-
	금융투자	8	75.0	50.0	50.0	12.5	-
	보 험	7	42.9	57.1	57.1	42.9	-

### 3. 신금융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제도상 애로사항

앞서 제2장 제1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핀테크 유형별 발전 저해 규제 요소 지적에 대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확한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신금융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애로사항을 설문하였다.

즉, 신금융서비스가 활성화 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에 적용받는 규제가 여러 법에 중첩되어 있다’(62%), ‘신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38%),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외의 규제가 너무 많다’(34%),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가 매우 적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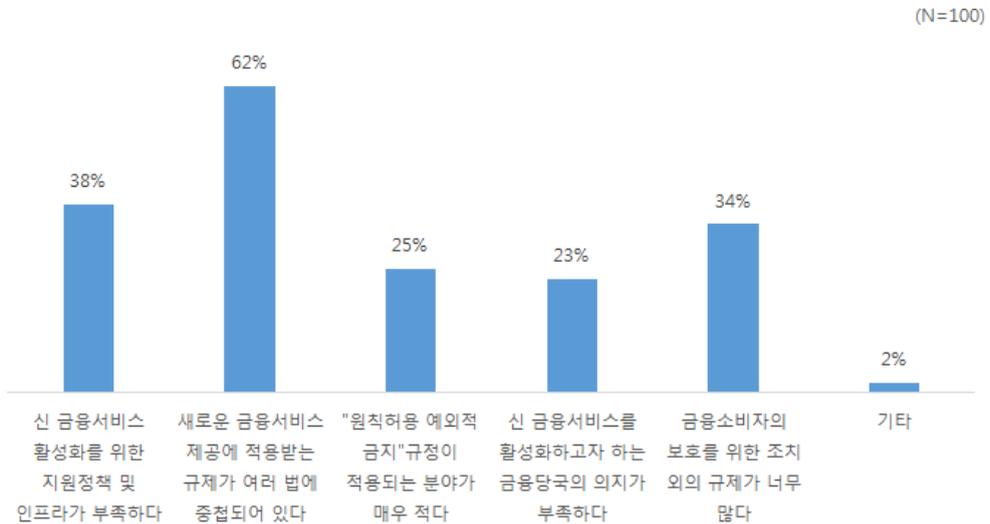
‘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23%)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측면의 제도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그룹별 응답자들이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에 적용받는 규제가 여러 법에 중첩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집계된 점이다. 향후 규제의 명확성과 중복적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 신금융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제도상 애로사항

정량 문 16)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핀테크 등 온라인 기반 금융서비스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를 골라주세요. (복수 응답)



[표 46] 신금융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제도상 애로사항

		사례수	신 금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에 적용받는 규제가 여러 법에 중첩되어 있다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가 매우 적다	신 금융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외의 규제가 너무 많다	기타
전 체		100	38.0	62.0	25.0	23.0	34.0	2.0
대분류	전문가	20	40.0	60.0	35.0	20.0	25.0	5.0
	업 계	60	36.7	65.0	21.7	20.0	40.0	1.7
	일반소비자	20	40.0	55.0	25.0	35.0	25.0	-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36.7	66.7	16.7	20.0	50.0	3.3
	은 행	15	53.3	60.0	40.0	-	20.0	-
	금융투자	8	25.0	62.5	25.0	25.0	37.5	-
	보 험	7	14.3	71.4	-	57.1	42.9	-

#### 4.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 (1) 정성조사 결과

#####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되는 실무상의 애로사항

[정성 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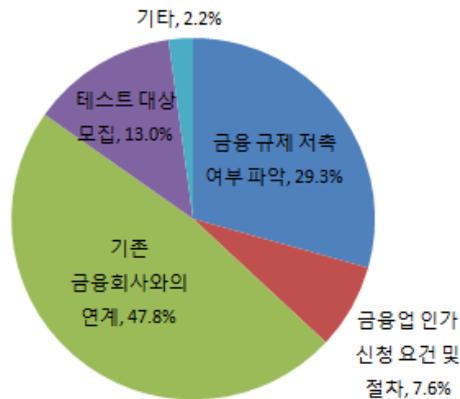
<제시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 애로점에 대해, '기존의 금융업자들이 테스트베드 업체에 대

한 협업 없이는 테스트 자체가 어렵기 때문'(63%)과 '테스트베드 종료 후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업역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음'(57%) 항목에 높은 응답을 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10).

한편, 2016년의 KDI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솔루션 테스트 관련 애로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림 ] 금융 솔루션 테스트 관련 애로 사항



이러한 2가지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당국이 추가적으로 고안하여야 할 필수적인 조치들이 있을까요?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기존 금융회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기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과 협업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협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기존 금융회사에서는 협업을 하고 싶어도, 최소 10개 이상의 부서와 논의 및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 이러한 실무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간다면 앞으로 핀테크기술 기업과 금융회사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핀테크산업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 2) 신금융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제도상 애로사항

[정성 문 5-3]

제시문: 신 금융서비스가 활성화 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에 적용받는 규제가 여러 법에 중첩되어 있다’(63%), ‘신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38%),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외의 규제가 너무 많다’(34%),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가 매우 적다’(25%), ‘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23%)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응답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귀하가 생각하시는 신금융서비스 활성화 애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규제가 여러법에 중첩되어 있다라는 의견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외화송금과 관련하여서는 소비자보호 조치로서 3억원 이상의 이행보증금 예탁과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주어지는 한편, 자금세탁방지나 금융실명제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도 기본적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금융사고가 날 경우 사업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소비자 보호 증진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해외의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도 도입과 함께 과징금 등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이러한 강력한 사후제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시사점

###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에 따른 실무적 수요 해결 방향

2016년의 KDI보고서<sup>259)</sup>에 따르면 ‘금융 솔루션 테스트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하여서도 기존 금융회사와의 연계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이번 본 연구에서의 조사에서도 기존의 금융회사가 테스트베드 참가업체에 대한 협업을 하지 않는다면 테스트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술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이 실무상 가장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sup>260)</sup>를 통하여 ‘지급결제, 보안·인증 등 은행업 분야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신용정보,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은행·금융지주회사·생명보험 등 7개 금융회사<sup>261)</sup>가 참여하여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운영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는 핀테크기업의 위탁테스트 참여신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담당하게 되고, 핀테크지원센터 주관으로 민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해당 신청 기업의 위탁테스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는 민간협의체를 통한 위탁테스트 적합성 여부 평가 등의 기준을 ‘위탁테스트가 즉시 시행가능한지 여부, 소비자의 효용 증가 여부(사행성 배제) 등’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위탁테스트 조건 등에 대하여서는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개별적 협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62)</sup> 다음의 [표 47]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정할 수 있는 협의 사항의 범위와 기준을 예시한 것이다.

259) 구자현 외, 앞의 보고서, 214면.

260)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위탁테스트) 시행을 위한 민간협의체 확대운영”, 보도자료([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위원회 소식] - [보도자료]), 2017.10.18., 4면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105](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105) 2017.10.31.).

261) KB Innovation HUB, 신한 FUTURE'S LAB, 위비핀테크 Lab,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 Lab, IQ Lab, NH핀테크 혁신센터, DREAMPLUS 63 한화생명 핀테크센터

262)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위탁테스트) 시행을 위한 민간협의체 확대운영”, 5면.

[표 47]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간 위탁테스트 협의 사항(예)<sup>263)</sup>

구 분	주요 내용
기간	위탁테스트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선정(예 : 3~6개월)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되, 금융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테스트 대상자는 최소화
금융소비자 보호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프로그램을 위탁 사용하는 금융회사가 대외적인 손해배상 책임 → 금융회사는 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사후 구상청구 가능
테스트 계획	①일정 및 주요 테스트 항목, ②테스트 방식, ③금융소비자 보호(배상보험 등), ④위험 평가, ⑤기술도용 방지 등

향후 해당 민간협의체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위탁테스트에 대한 상설기구로서 정기회의 개최와 적합성 평가, 관련 정보 공개 등의 기능을 잘 수행해 나간다면, 위탁테스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신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설계

위에서 소개한 핀테크업계 실무자들의 규제 중첩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의 언론보도나 전문가들의 지적을 통해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내용이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P2P방식의 환전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실제로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위의 정성조사에서 지적된 「외국환관리법」<sup>264)</sup>, 「개인정보보호법」<sup>265)</sup>, 「금융실명거

263)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위탁테스트) 시행을 위한 민간협의체 확대운영”, 5면의 표 인용.

264)

외국환관리법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외에도 그 등록 형태와 서비스 적용 방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sup>266)</sup> 내지 「전자서명법」<sup>267)</sup>등의

<p>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li> <li>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li> <li>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li> </ol> <p>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

265)

개인정보보호법
<p>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li> <li>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li> </ol> <p>② 삭제</p>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266)

전자금융거래법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라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p>

<p>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li> <li>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li> <li>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li> <li>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li> </ol>
<p>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자금이체업무</li> <li>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li> <li>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li> <li>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li> <li>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li> </ol> <p>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li> <li>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li> </ol> </li> <li>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li> </ol> <p>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p> <p>④ 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p> <p>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①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li> <li>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li> <li>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li> <li>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li> <li>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p>

267)

전자서명법
<p>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법률에 따라 각각의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전서비스에 대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이 법에 따라 ‘가상통화취급업자’로서의 규제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268)</sup>

이와 같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규가 여러 법률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각각의 금융서비스 형태나 업태에 따라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향후, 각각의 금융서비스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고안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입법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각각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유형별로 금융당국이나 협회 또는 민간협업체 차원에서 해당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각각의 규제에 대한 법규 매뉴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②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 ③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⑤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8)

<b>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b>
<p>제6장 가상통화취급업</p> <p>제46조의3(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① 가상통화취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가 만들어진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li> <li>2. 가상통화를 구입하거나 가상통화취급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가상통화취급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가상통화를 중개·교환·매매 등을 하는 자(이하 “가상통화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통화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li> <li>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 것</li> <li>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li> </ol> <p>③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제3절 금융감독 시범사업 적용 대상/범위

### 1. 업체 선정 요건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 요건은 영국에서와 같은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 영업 지역(scope; 자국 금융시장 내에서 주된 활동을 목표로 하는지), ② 서비스 혁신성(genuine innovation; 기존에 상용화된 서비스에 비해 충분한 혁신성을 지니는지), ③ 소비자 편익(consumer benefit; 금융소비자에게 어떠한 직간접적 수혜를 제공하는지), ④ 테스트에 대한 수요(need for sandbox; 새로운 금융상품을 종전의 규제 틀에서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지), ⑤ 테스트 준비정도(ready for testing; 신청기업이 실제 상황에서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그 주요 요건이 된다.<sup>269)</sup>

금융위원회가 2016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하여 제시한 위의 5가지 요건에 더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있어서 금융감독방식의 실질적인 변화 요인에 전체 금융시장 및 금융규제 체계에 대한 영향력 부분을 알아보기로 하자 해당 설문에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추가하였다.

조사 결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 요건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어떠한 직간접적인 수혜를 제공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기업의 선정시에 고려하여야 할 요건의 중요성 순서는 [소비자 혜택] 금융소비자에게 어떠한 직간접적 수혜를 제공하는지(56%), [서비스 혁신성] 기존의 상용화된 서비스에 비해 충분히 혁신성을 지니는지(48%), [테스트 필요성] 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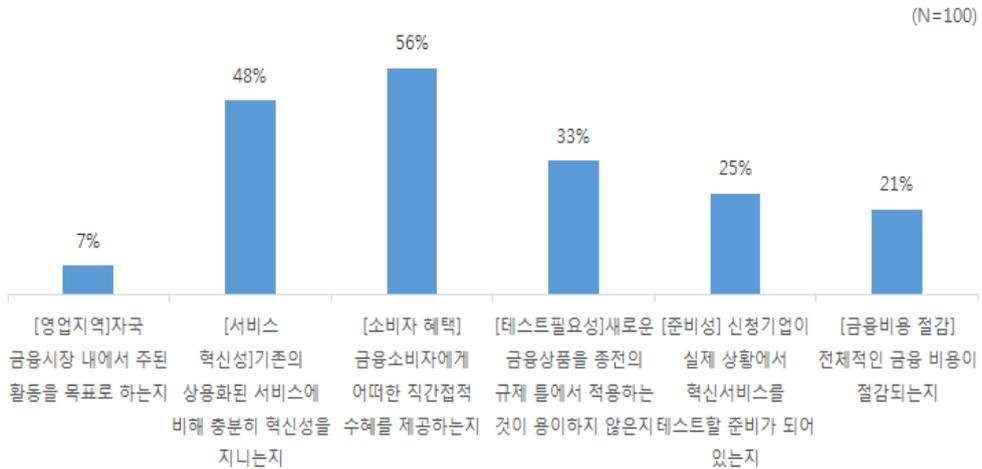
269)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앞의 자료, 4면.

운 금융상품을 종전의 규제 틀에서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지’(33%), ‘[준비성] 신청 기업이 실제 상황에서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25%), ‘[금융비용 절감] 전체적인 금융 비용이 절감되는지’(21%), ‘[영업지역] 자국 금융시장 내에서 주된 활동을 목표로 하는지’(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조사결과에서는 영업지역 요건(7%) 보다 금융비용 절감 요건(21%)의 응답 비율이 3배 이상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 요건

정량 문 6)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 요건 중 귀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개를 골라 주세요. (복수 응답)



[표 48]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 요건

	사례수	[영업 지역] 자국 금융시장 내에서 주된 활동을 목표로 하는지	[서비스 혁신성] 기존의 상용화된 서비스에 비해 충분히 혁신성을 지니는지	[소비자 혜택] 금융소비자에게 어떠한 직간접적 수혜를 제공하는지	[테스트 필요성] 새로운 금융 상품을 종전의 규제 틀에서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지	[준비성] 신청기업이 실제 상황에서 혁신 서비스를 테스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금융비용 절감] 전체적인 금융 비용이 절감 되는지	
전 체	100	7.0	48.0	56.0	33.0	25.0	21.0	
대분류	전문가	20	-	60.0	40.0	55.0	40.0	5.0
	업 계	60	5.0	43.3	61.7	26.7	23.3	25.0
	일반소비자	20	20.0	50.0	55.0	30.0	15.0	25.0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6.7	56.7	60.0	30.0	13.3	30.0
	은 행	15	6.7	20.0	73.3	20.0	26.7	40.0
	금융투자	8	-	25.0	50.0	37.5	37.5	-
	보 험	7	-	57.1	57.1	14.3	42.9	-

## 2.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 요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서는 영국의 Regulatory Sandbox에서와 같이 5가지 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참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단 요건에 대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핀테크기술이나 규제테스트베드 참가업체의 경우에는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혁신성과 소비자편익에 대한 판단 요건으로서 일반적인 기업 평가에 적용되는 업력이나 자본금규모, 인력규모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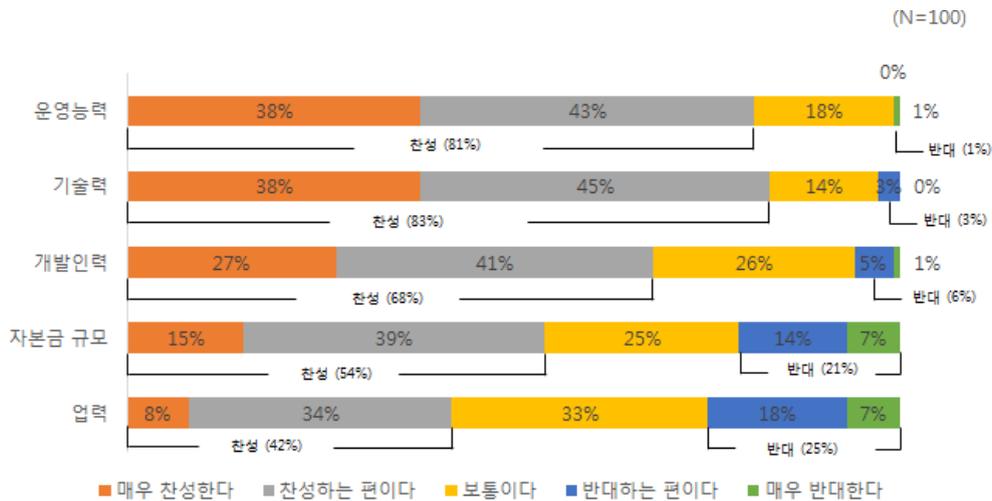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테스트베드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고려할 만한 판단 요소로서 기술력, 운영능력, 전문인력규모 등을 추가하여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그림 23]과 같이, 기술력(83%), 운영능력(81%), 개발인력(68%), 자본금 규모(54%), 업력(42%)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23]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

정량 문 7)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시 아래의 항목을 판단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좋은지 각 항목마다 표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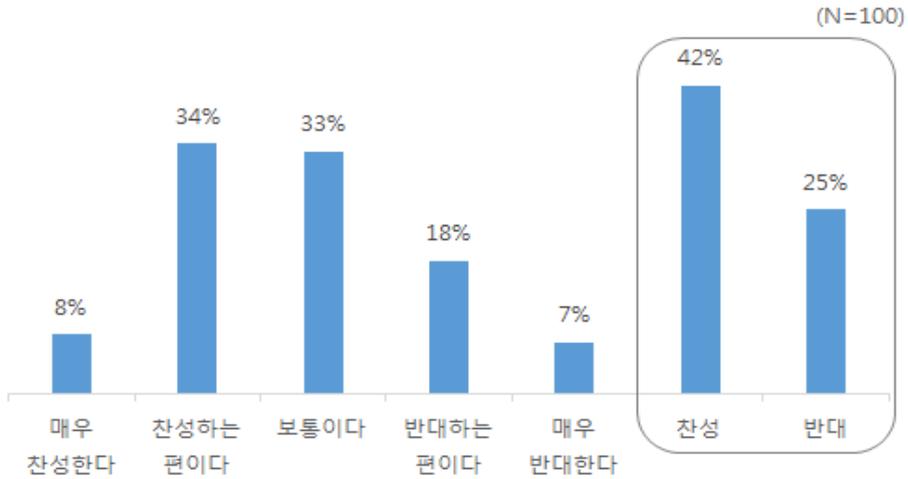
### 1) 업력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시 “업력”을 판단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지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8%,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34%, ‘보통이다’는 응답은 44%,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8%,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7%로 나타났다.

“업력”을 업체 선정 판단요건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가 42%로 반대한다는 견해(2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업력)

정량 문 7-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시 “업력”이 판단요건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지 표시해 주세요.



[표 49]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업력)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체		100	8.0	34.0	33.0	18.0	7.0
대분류	전문가	20	-	40.0	25.0	25.0	10.0
	업계	60	10.0	28.3	40.0	13.3	8.3
	일반소비자	20	10.0	45.0	20.0	25.0	-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6.7	23.3	26.7	26.7	16.7
	은행	15	13.3	26.7	60.0	-	-
	금융투자	8	25.0	37.5	37.5	-	-
	보험	7	-	42.9	57.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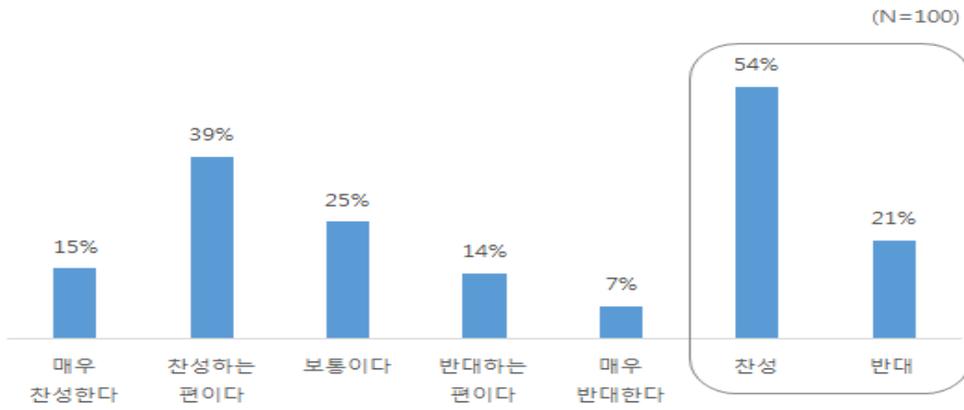
## 2) 자본금 규모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시 “자본금 규모”를 판단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지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15%,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39%, ‘보통이다’는 응답은 25%,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4%,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7%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규모”를 업체 선정 판단요건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가 54%로 반대한다는 견해(2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의 특성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핀테크업체 종사자 응답률에는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 금융사인 은행이나,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의 종사자의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50%를 훨씬 상회하는 반면, 핀테크업체 종사자의 경우 34.4%의 응답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향후 혁신성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 판단요건을 정하는 입법기준 마련 시에 기존 업계에서 보이고 있는 ‘자본금 규모’ 요건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다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25]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자본금 규모)

정량 문 7-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시 “자본금 규모”가 판단요건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지 표시해 주세요.



[표 50]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자본금 규모)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100	15.0	39.0	25.0	14.0	7.0
대분류	전문가	20	5.0	40.0	25.0	15.0	15.0
	업 계	60	16.7	33.3	28.3	15.0	6.7
	일반소비자	20	20.0	55.0	15.0	10.0	-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16.7	16.7	30.0	26.7	10.0
	은 행	15	20.0	40.0	33.3	6.7	-
	금융투자	8	25.0	62.5	12.5	-	-
	보 험	7	-	57.1	28.6	-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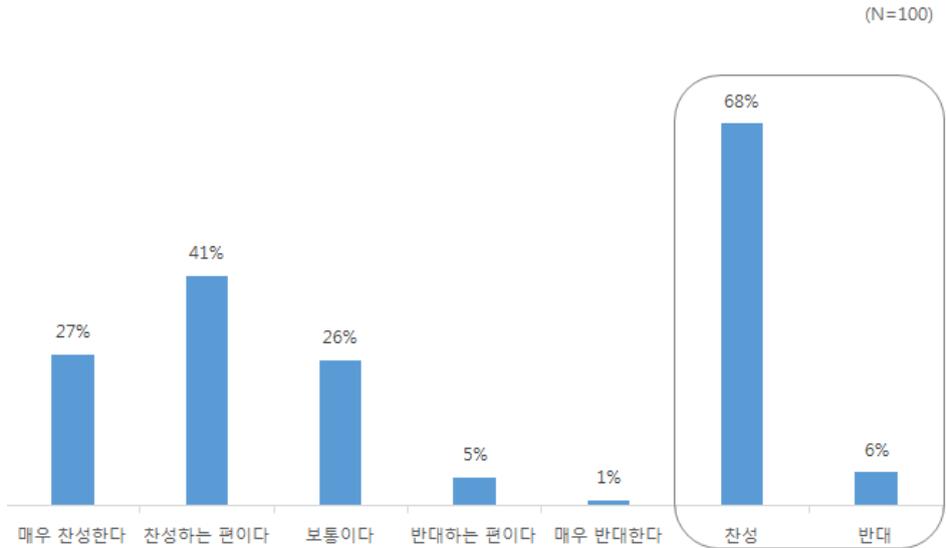
### 3) 개발 인력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시 “개발 인력”을 판단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지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27%,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41%, ‘보통이다’는 응답은 26%,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5%,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1%으로 나타났다.

“개발 인력”을 업체 선정 판단요건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가 68%로 반대한다는 견해(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개발 인력)

정량 문 7-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시 “개발 인력”이 판단요건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지 표시해 주세요.



[표 51]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개발 인력)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체		100	27.0	41.0	26.0	5.0	1.0
대분류	전문가	20	35.0	50.0	15.0	-	-
	업계	60	21.7	41.7	30.0	5.0	1.7
	일반소비자	20	35.0	30.0	25.0	10.0	-
중분류	핀테크	30	16.7	36.7	33.3	10.0	3.3
	은행	15	26.7	53.3	20.0	-	-
	금융투자	8	37.5	25.0	37.5	-	-
	보험	7	14.3	57.1	28.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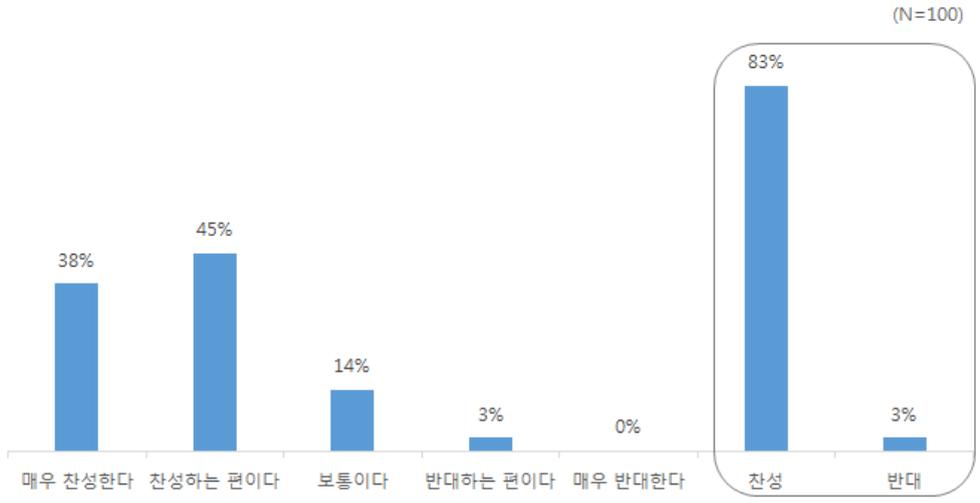
#### 4) 기술력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시 “기술력”을 판단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지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38%,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45%, ‘보통이다’는 응답은 14%,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3%,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기술력”을 업체 선정 판단요건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가 83%로 반대한다는 견해(3%)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27]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기술력)

정량 문 7-4)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시 “기술력”이 판단요건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지 표시해 주세요.



[표 52]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기술력)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100	38.0	45.0	14.0	3.0	1.0
대분류	전문가	20	35.0	55.0	10.0	-	-
	업 계	60	40.0	38.3	18.3	3.3	1.7
	일반소비자	20	35.0	55.0	5.0	5.0	-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33.3	36.7	26.7	3.3	3.3
	은 행	15	33.3	53.3	6.7	6.7	-
	금융투자	8	50.0	25.0	25.0	-	-
	보 험	7	71.4	28.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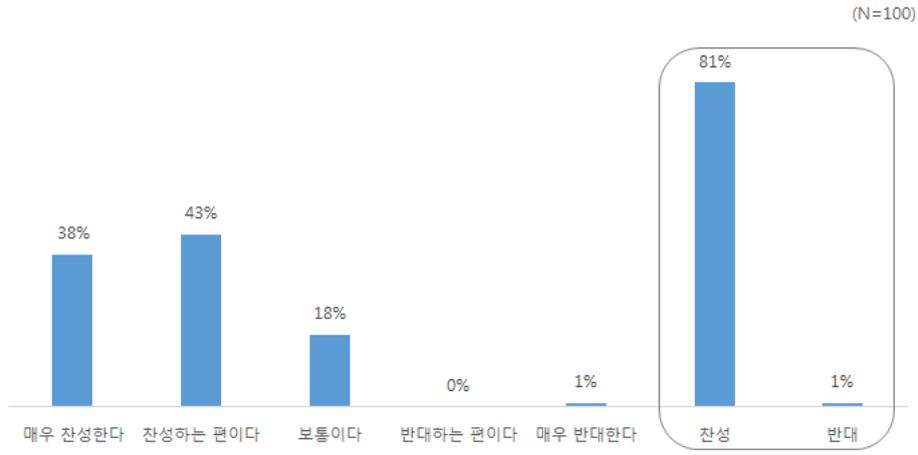
### 5) 운영능력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시 “운영 능력”을 준비성 판단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지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38%,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43%, ‘보통이다’는 응답은 18%,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0%,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1%으로 나타났다.

“운영 능력”을 업체 선정 판단요건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가 81%로 반대한다는 견해(1%)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28]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운영 능력)

정량 문 7-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시 “운영 능력”이 판단요건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지 표시해 주세요.



[표 53]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운영 능력)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100	38.0	43.0	18.0	1.0	1.0
대분류	전문가	20	35.0	55.0	10.0	-	-
	업 계	60	43.3	33.3	21.7	1.7	1.7
	일반소비자	20	25.0	60.0	15.0	-	-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33.3	40.0	26.7	-	3.3
	은 행	15	40.0	33.3	20.0	6.7	-
	금융투자	8	62.5	12.5	25.0	-	-
	보 험	7	71.4	28.6	-	-	-

### 3.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 (1) 정성조사 결과

[정성 문2-2]

제시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중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항목으로, 위험관리계획(49%),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 방식의 공정성(40%), 자산손실에 대한 보상장치(36%) 등이 높은 응답결과가 나왔습니다(정량조사 문9).

한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 요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으로 ‘소비자 혜택’(56%), 서비스 혁신성(48%), 테스트 필요성(33%), 준비성(25%), 금융비용 절감(21%), 영업지역(7%)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정량조사 문6).

또한 업체 선정시 준비성 판단요건으로 어떤 항목을 포함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는 응답에서 기술력(83%), 운영능력(81%), 개발인력(68%), 자본금규모(54%), 업력(42%)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정량조사 문7).

이러한 항목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귀하가 생각하시는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요건은 무엇입니까?

- 선정과정에 대한 큰 이론이 없다. 핀테크 업체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기술력에 있으므로, 테스트베드 선정 판단 기준 역시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핀테크 기업이 대부분 스타트업이고, 테스트베드 목적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때, 자본금 규모 및 업력을 선정 판단 요건의 비중 있는 요소로 보는 응답은 그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2) 시사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시 업체에 대한 준비성 판단요건에 대한 척도 방식의 설문에서, 기술력 요건(83%)과 운영능력 요건(8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인력 요건도 68%에 이르렀다. 상대적으로 자본금 규모 요건은 54%, 업력 요건은 42% 순으로 조사되어 일반적인 기업 평가에 대한 기준과 달리 혁신성을 가장 주요한 요소로 하는 핀테크기업들의 경우 기술력과 운영능력, 개발인력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참가업체 선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나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운용하는 목적과 핀테크분야 기술 발전에 대한 고려,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균형감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선정요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정요건 마련에는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Regulatory Sandbox 참가 요건은 FCA Innovation Hub 지원 요건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편익이 발생하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Regulatory Sandbox 참가 요건(i) 목적 적합성과 ii) 진정한 혁신, iii) 고객 효용, iv) 샌드박스 참가에 대한 테스트 필요성, v) 적용대상 규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리스크 최소화 노력 등)<sup>270)</sup>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진정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71)</sup>

이러한 고민은 FCA 규제완화 타당성 조사 기준에서도 나타나는데, FCA는 규제완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① 규제장벽(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 할 때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장벽과 해당 규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② 안전조치(테스트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비된 안전조치), ③ 법적안정성(해당 상품·서비스가 EU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어 FCA의 규제완화 가능성이 없는 경

270) 금융투자협회, “英 Regulatory Sandbox의 도입 현황 및 시사점”, 8면.

271)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7.

우를 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다.<sup>272)</sup> FCA는 이러한 타당성 조사 기준을 통하여 혁신성이 강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기존의 규제 장벽 일부를 완화시켜, 금융규제에 대한 정부 개정안 작업을 제도의 고려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미인가 사업자와 기인가 사업자 모두 Regulatory Sandbox에 참가가 가능하며,<sup>273)</sup> 미인가 기업에 대하여서는 맞춤형 승인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일단 샌드박스에 참여하게 되면 한정인가를 통하여 솔루션 테스트에 필요한 다양한 보충적 금융감독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규제테스트베드 참가기업이 FCA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FCA는 해당 미인가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의 인가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요건을 적용하게 된다.<sup>274)</sup>

##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1. 금융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영국은 금융소비자 편익을 규제 안전공간 대상 사업자 선정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Regulatory Sandbox 참가 지원 사업자의 영업모델이 금융소비자에게 가져올 편익을 주요한 평가 요건으로 하고 있다.<sup>275)</sup>

제3장에서 상세히 소개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Regulatory Sandbox 참가기업들의 솔루션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4종류의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sup>276)</sup> 즉, ① 일정범위의 고객에 대하여서만 위험성을 고지한 후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②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보호 조치 및 보상 규정을 둘 수

272)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3.

273) 노형식, “규제 안전공간 도입 해외사례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포커스』 주간 금융브리프 25권 42호, 금융연구원, 2016.11.26~12.9., 12면.

274) 금융투자협회, “英 Regulatory Sandbox의 도입 현황 및 시사점”, 8~9면.

275) 노형식, “규제 안전공간 도입 해외사례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포커스』 주간 금융브리프 25권 42호, 금융연구원, 2016.11.26~12.9., 12면.

276)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p.9~10.

있으며, ③ 별도의 민원처리 절차(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통한 분쟁해결, ④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 조치와 이를 위한 자력의 구비 등이 그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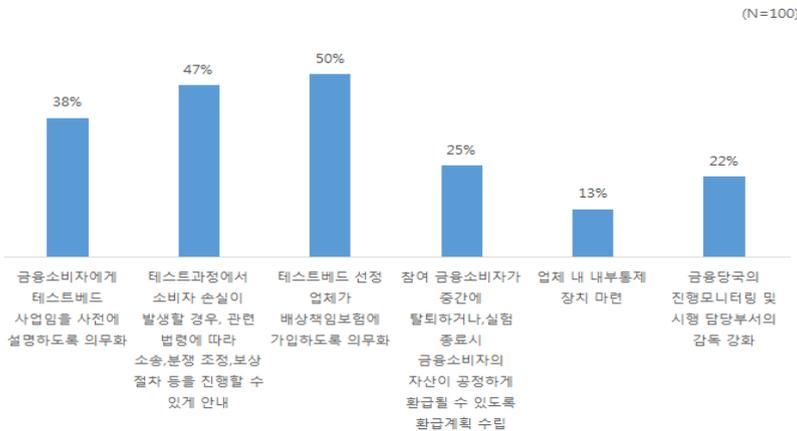
호주의 경우에는 고객 수와 금액 제한을 기초로, 소비자 보호 원칙 준수 의무, 손실에 대한 보상 계획, 고유의 분쟁해결제도 등을 갖출 것을 인허가 면제의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제테스트베드 참가하는 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소비자보호 조치 및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감독 조치를 보기로 제시하여 설문하였다.

즉, ‘테스트베드 참여 선정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50%), ‘테스트과정에서 소비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분쟁 조정·보상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47%), ‘금융소비자에게 테스트베드 사업임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38%), ‘참여 금융소비자가 중간에 탈퇴하거나, 실험 종료시 금융소비자의 자산이 공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계획 수립’(25%), ‘금융당국의 진행 모니터링 및 시행 담당부서의 감독 강화’(22%), ‘업체 내 내부통제 장치 마련’(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금융 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정량 문 8)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를 골라 주세요. (복수 응답)



[표 54] 금융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사례수	금융 소비자에 게 테스트 베드 사업임을 사전에 설명 하도록 의무화	테스트 과정에서 소비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분쟁 조정, 보상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	테스트 베드 선정 업체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하도록 의무화	참여 금융 소비자가 중간에 탈퇴 하거나, 실험 종료시 금융 소비자의 자산이 공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계획 수립	업체 내 내부통제 장치 마련	금융 당국의 진행 모니터링 및 시행 담당부서 의 감독 강화	
전 체	100	38.0	47.0	50.0	25.0	13.0	22.0	
대분류	전문가	20	55.0	40.0	55.0	15.0	-	35.0
	업 계	60	31.7	46.7	48.3	31.7	16.7	18.3
	일반소비자	20	40.0	55.0	50.0	15.0	15.0	20.0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46.7	50.0	46.7	36.7	10.0	6.7
	은 행	15	20.0	60.0	46.7	20.0	20.0	33.3
	금융투자	8	-	25.0	50.0	25.0	37.5	25.0
	보 험	7	28.6	28.6	57.1	42.9	14.3	28.6

## 2.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 (1) 정성조사 결과

[정성 문 3]

제시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테스트베드 선정 업체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50%)와 “테스트과정에

서 소비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분쟁 조정, 보상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47%)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8).

각 소비자 보호조치 미이행시 제재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테스트베드 선정 업체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공제의 형태도 논의 되고 있지만, 공제의 경우 업종별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요율 산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업력이 적은 회사의 경우 요율 산정을 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 (2) 시사점

위의 정량조사 결과 및 정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제테스트베드 참여 업체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분쟁처리절차의 안내 등이 소비자보호의 가장 주요한 이슈로서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핀테크업체의 배상책임 보험 사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있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7조(임시허가)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속처리를 신청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같은 조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거나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간주된 경우,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은 1회에 한 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해당 이용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성격이나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임시허가의 영향을 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⑧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감독당국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해당 제도는 핀테크분야의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제도 설계에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7조의 “임시허가” 제도에 서 임시허가에 따른 위험의 보완을 위하여 제4항에서는 서비스제공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시허가”를 받기 위한 법정 요건으로서 사전규제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되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해당 이용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후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입법례에 따라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제도 운용 시에도 금융당국은 사전적 규제로서 업체 선정을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보상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7조 제4항의 보증보험 가입의무는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손실액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료나 콘텐츠 이용료의 금액 수준과 달리 금융서비스의 경우, 금융상품·서비스 구매금액을 포함한 원금과 수수료의 합계액이 손실 및 손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호주의 사례에서 본다면, 인허가 면제 요건으로서 소비자 손실에 대한 보상계획으로서 ‘최소요구사항’과 ‘추가보상기간’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즉, 최소보상액이 소송가액 기준 총액이 1백만 달러(8억6천만원 상당) 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테스트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run off cover)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테스트베드 사업임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참여금융소비자가 중간에 탈퇴하거나 솔루션 운영의 종료시에 금융소비자의 자산이 공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사전적 요건으로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서 업체 내에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해당 솔루션의 운영 체계에 업체 내부적으로 자율적 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제적합성 판단 업무와 기술운용 및 개발 인력 간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금융당국의 진행모니터링 기제와 제도 시행 담당부서의 감독 기능 강화를 통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건의 규정 필요성과 도입방안은 아래 제5절에서 더욱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한다.

## 제5절 시범사업 수행상의 고려 사항

2016년 9월 KDI의 보고서<sup>277)</sup>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신청의향이 없다고 한 답변은 54%(있다 46%)에 이르고 있으며, 해당 조사에서 신청의향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는 이번 연구에서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실시에 찬성 의견이 91%로 집계된 것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기술 기업들의 실무상 우려사항이나 애로사항들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법규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항목을 함께 설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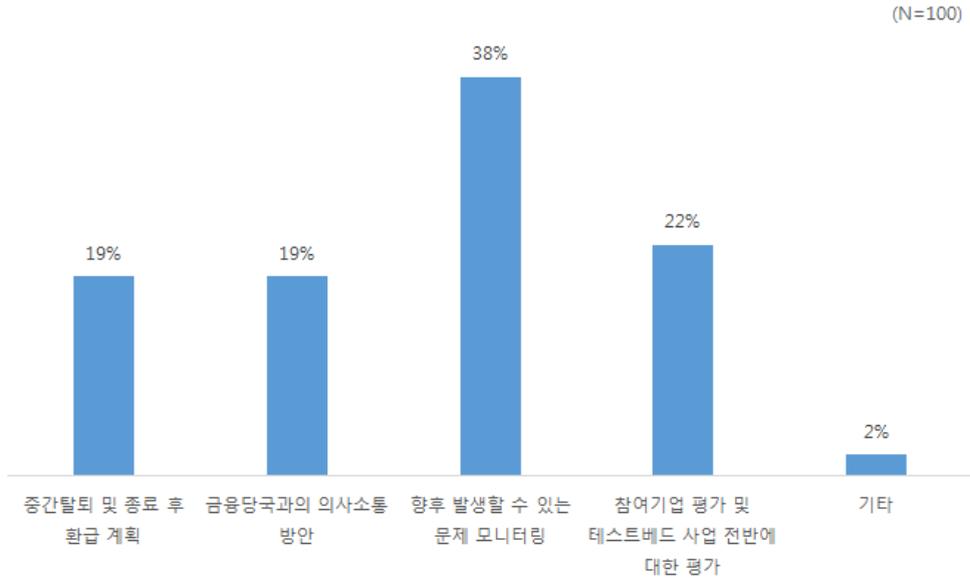
### 1. 테스트베드 종료 시 중점적 대처사항

조사결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항목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모니터링’(38%), ‘참여기업 평가 및 테스트베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22%), ‘중간탈퇴 및 종료 후 환급계획’(19%), ‘금융당국과의 의사소통 방안’(19%) 순으로 나타났다.

277) 구자현 외, 앞의 보고서, 212면.

[그림 30]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시 중점적 대처사항

정량 문 1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다면, 전체적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모니터링’에 대한 응답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온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금융당국과의 의사소통 방안’을 62.5%로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특히, 이러한 2개 항목 외에 다른 항목에 대하여서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규제체계에서 가장 복잡다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경우, 해당 그룹 응답자들은 금융당국과의 의사소통 구조 확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금융감독 시범사업 추진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표 5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시 문제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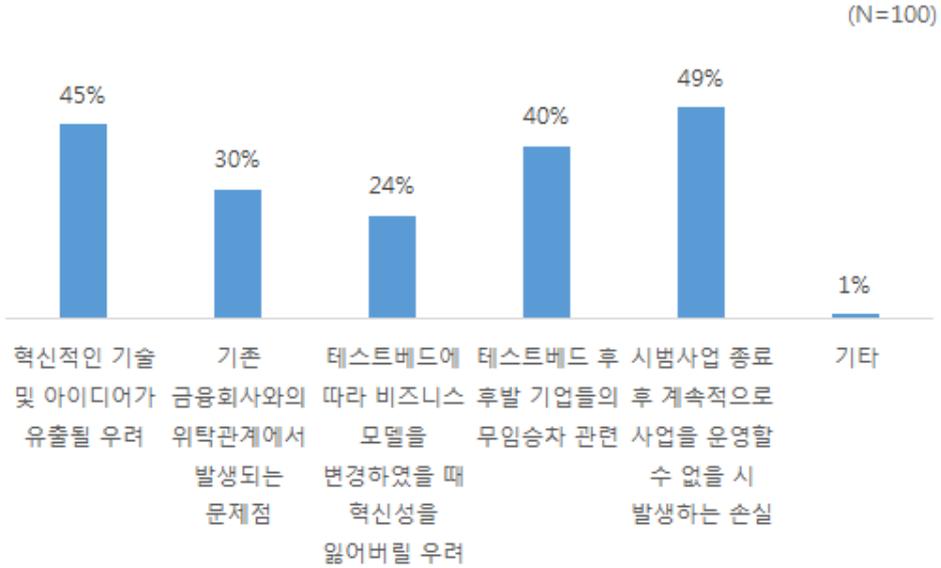
		사례수	중간탈퇴 및 종료 후 환급 계획	금융 당국과의 의사소통 방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모니터링	참여기업 평가 및 테스트베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기타
전체		100	19.0	19.0	38.0	22.0	2.0
대분류	전문가	20	10.0	10.0	40.0	40.0	-
	업계	60	21.7	23.3	40.0	13.3	1.7
	일반소비자	20	20.0	15.0	30.0	30.0	5.0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20.0	23.3	43.3	10.0	3.3
	은행	15	40.0	6.7	40.0	13.3	-
	금융투자	8	-	62.5	37.5	-	-
	보험	7	14.3	14.3	28.6	42.9	-

## 2. 테스트베드 종료시 업체의 우려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참가 종료 후 참여기업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점으로는, ‘시범사업 종료 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시 발생하는 손실’(49%),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가 유출될 우려’(45%), ‘테스트베드 후 후발 기업들의 무임승차 관련’(40%), ‘기존 금융회사와의 위탁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30%), ‘테스트베드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였을 때 혁신성을 잃어버릴 우려’(24%)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림 3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시 업체의 우려점

정량 문 1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참가 종료 후 참여기업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를 골라주세요. (복수 응답)



[표 56]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시 업체의 우려점

	사례수	혁신적인 기수 및 아이디어 가 유출될 우려	기존 금융회사와의 위탁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테스트베드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였을 때 혁신성을 잃어버릴 우려	테스트베드 후 후발 기업들의 무임승차 관련	시범사업 종료 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시 발생하는 손실	기타	
전체	100	45.0	30.0	24.0	40.0	49.0	1.0	
대분류	전문가	20	50.0	30.0	25.0	30.0	65.0	-
	업계	60	46.7	26.7	23.3	40.0	48.3	1.7
	일반소비자	20	35.0	40.0	25.0	50.0	35.0	-
중분류	핀테크	30	50.0	30.0	23.3	33.3	56.7	3.3
	은행	15	66.7	20.0	26.7	40.0	33.3	-
	금융투자	8	25.0	25.0	37.5	25.0	25.0	-
	보험	7	14.3	28.6	-	85.7	71.4	-

### 3.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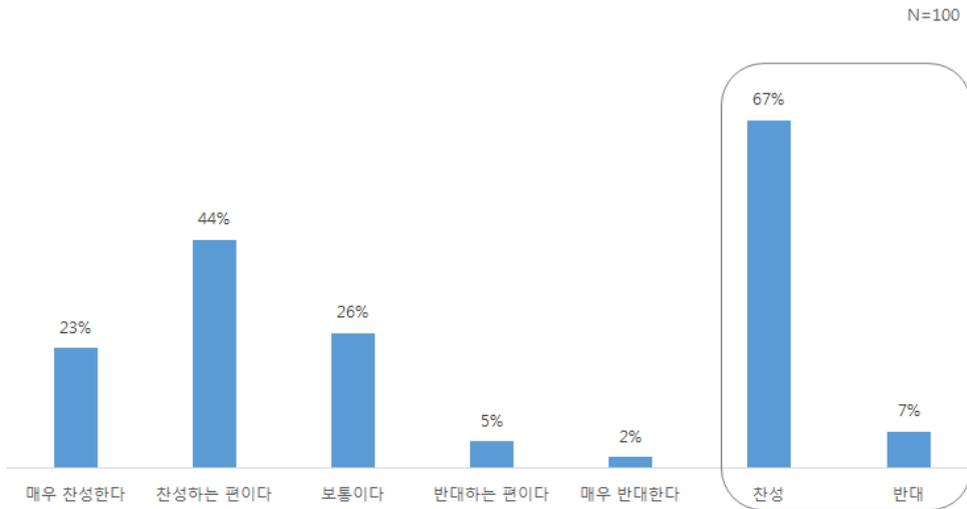
####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찬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23%,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44%, ‘보통이다’는 응답은 26%,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5%,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2%로 나타났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가 67%로 반대한다는 견해(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찬반

정량 문 14)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기업의 비용문제 및 후발주자의 무임승차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를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지요?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금융업계 실무자들 중에서도 은행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핀테크나 보험업계 실무자들과 유사한 수준의 찬성 의견을 보이는 한편, 금융투자업계 실무자들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반대하는 의견이 25%로서 다른 응답자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7]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찬반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체		100	23.0	44.0	26.0	5.0	2.0
대분류	전문가	20	40.0	40.0	20.0	-	-
	업계	60	23.3	43.3	23.3	6.7	3.3
	일반소비자	20	5.0	50.0	40.0	5.0	-
중분류	핀테크	30	30.0	46.7	20.0	3.3	-
	은행	15	13.3	46.7	26.7	6.7	6.7
	금융투자	8	12.5	25.0	37.5	25.0	-
	보험	7	28.6	42.9	14.3	-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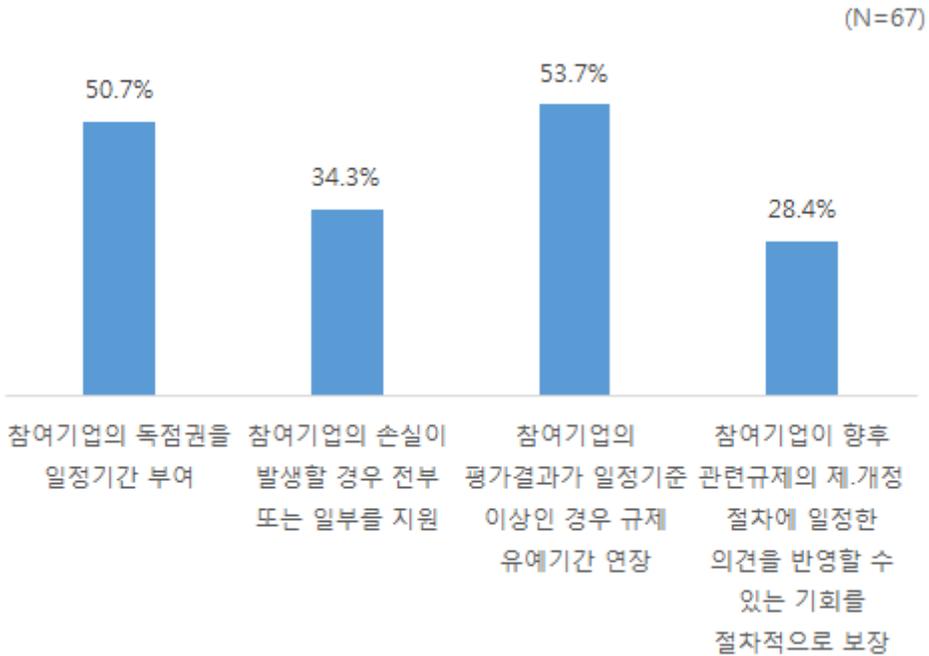
## 2)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종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할 경우(N=67, 복수 응답)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을지의 응답으로, ‘참여기업의 평가결과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규제 유예기간 연장’(53.7%), ‘참여기업의 독점권을 일정기간 부여’(50.7%), ‘참여기업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34.4%), ‘참여기업이 향후 관련 규제의 제·개정 절차에 일정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28.4%)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33] 참여기업 인센티브 종류

정량 문 14-1) (문 14-의 ①②번 응답자만)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찬성한다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을까요?  
두 개를 골라주세요. (복수 응답)



[표 58] 참여기업 인센티브 종류

		사례수	참여기업의 독점권을 일정기간 부여	참여기업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참여기업의 평가결과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규제 유예기간 연장	참여기업이 향후 관련 규제의 제·개정 절차에 일정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
전 체		67	50.7	34.3	53.7	28.4
대분류	전문가	16	43.8	31.3	68.8	43.8
	업 계	40	57.5	40.0	47.5	22.5
	일반소비자	11	36.4	18.2	54.5	27.3
업계 중분류	핀테크	23	60.9	30.4	47.8	34.8
	은행	9	55.6	55.6	44.4	-
	금융투자	3	33.3	66.7	66.7	-
	보험	5	60.0	40.0	40.0	20.0

#### 4. 테스트베드 평가 항목 기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어떠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문에서, ‘사업운영의 투명성’ 항목이 85%로 가장 많이 찬성하였으며, ‘사업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의 편익정도’ 항목이 84%로 찬성하였고, ‘금융시장 발전 등 국민 경제 기여 정도’, ‘사업의 수익성’, ‘자본의 적정성’, ‘인적 물적 자원 투입 정도’ 순으로 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 기업 선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선정 요건과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사업의 혁신성이나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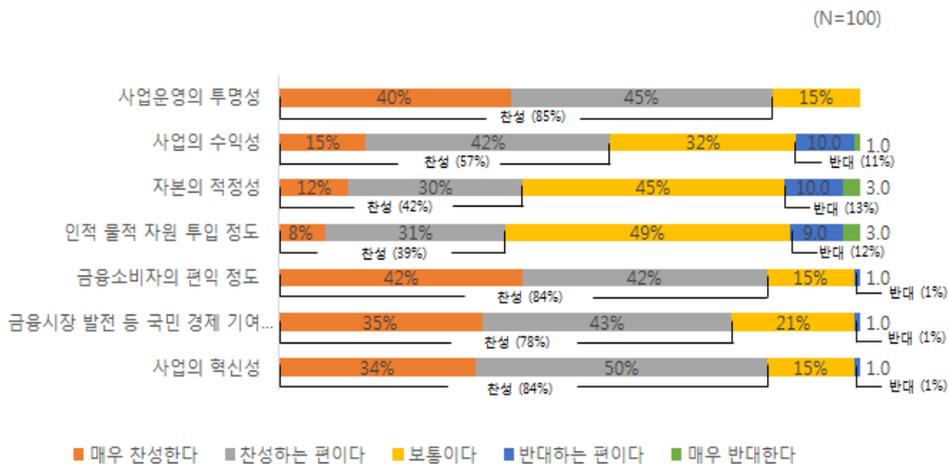
84%로서 상당히 높게 평가한 한편, 규제테스트베드 내에서 솔루션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인 점을 반영하듯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85%로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 발전 등 국민 경제 기여도 항목에 대하여서도 78%로 평가하고 있는 점에서 향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에 이러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Regulatory Sandbox 참가신청에 대한 승인 평가기준에 ‘금융업에 대한 이익’ 내지 ‘역내 금융발전 기여도’ 등을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테스트 종료 후 상업적 규모로 운영될 경우에 대한 성공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서 참고할 만 한 사례가 되겠다.

자본의 적정성이나 인적·물적 자원 투입 정도와 같이 외관적인 기업 규모와 관련 있는 항목에 대하여서는 각각 42%와 39%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그림 34]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기업에 대한 사업운영 평가항목

정량 문 1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어떤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하면 좋을지, 아래의 항목에서 각 항목마다 표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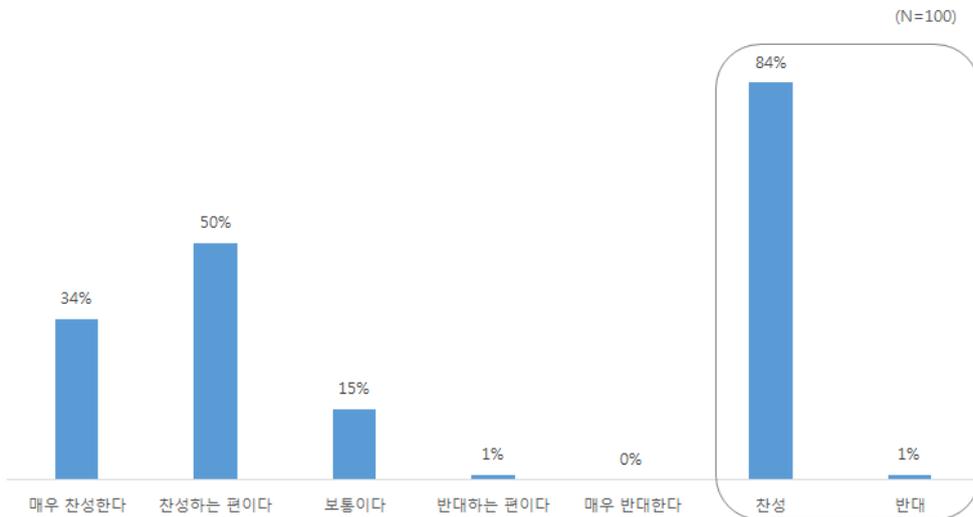


### 1) 사업의 혁신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사업의 혁신성’을 평가 항목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34%,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50%, ‘보통이다’는 응답은 15%,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 ‘매우 반대한다’는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사업의 혁신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는 견해가 84%로 반대한다는 견해(1%)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사업의 혁신성)

정량 문 15-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사업의 혁신성”을 평가항목으로 하면 좋을지, 표시해 주세요.



[표 59]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사업의 혁신성)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100	34.0	50.0	15.0	1.0	-
대분류	전문가	20	45.0	50.0	5.0	-	-
	업 계	60	33.3	48.3	16.7	1.7	-
	일반소비자	20	25.0	55.0	20.0	-	-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43.3	46.7	10.0	-	-
	은 행	15	13.3	60.0	26.7	-	-
	금융투자	8	25.0	25.0	37.5	12.5	-
	보 험	7	42.9	57.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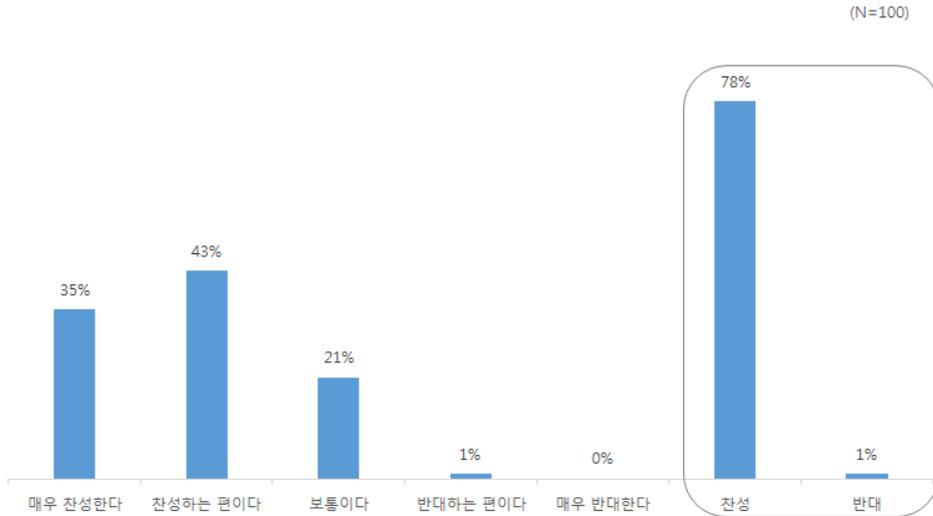
## 2) 국민 경제 기여 정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국민 경제 기여 정도’를 평가 항목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35%,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43%, ‘보통이다’는 응답은 21%,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 ‘매우 반대한다’는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국민 경제 기여 정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는 견해가 78%로 반대한다는 견해(1%)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6]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국민 경제 기여 정도)

정량 문 15-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금융시장 발전 등 국민 경제 기여 정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면 좋을지, 표시해 주세요.



[표 60]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금융시장 발전 등 국민 경제 기여 정도)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100	35.0	43.0	21.0	1.0	-
대분류	전문가	20	40.0	40.0	20.0	-	-
	업 계	60	30.0	48.3	20.0	1.7	-
	일반소비자	20	45.0	30.0	25.0	-	-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33.3	43.3	23.3	-	-
	은행	15	20.0	60.0	13.3	6.7	-
	금융투자	8	25.0	50.0	25.0	-	-
	보험	7	42.9	42.9	14.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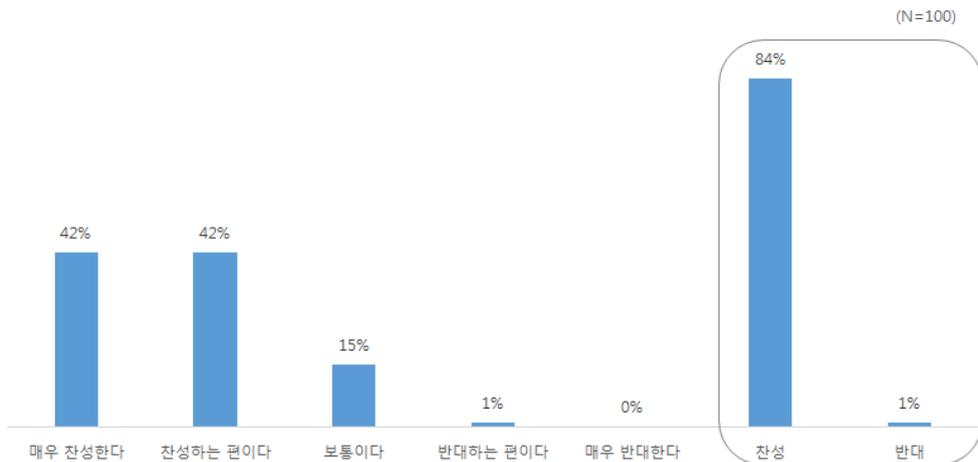
### 3) 금융소비자의 편익 정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금융소비자의 편익 정도’를 평가 항목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42%,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42%, ‘보통이다’는 응답은 15%,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 ‘매우 반대한다’는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금융소비자의 편익 정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는 견해가 84%로 반대한다는 견해(1%)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7]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금융소비자 편익 정도)

정량 문 15-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금융소비자의 편익 정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면 좋을지, 표시해 주세요.



[표 6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금융소비자 편익 정도)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체		100	42.0	42.0	15.0	1.0	-
대분류	전문가	20	50.0	40.0	5.0	5.0	-
	업계	60	41.7	43.3	15.0	-	-
	일반소비자	20	35.0	40.0	25.0	-	-
중분류	핀테크	30	46.7	40.0	13.3	-	-
	은행	15	40.0	53.3	6.7	-	-
	금융투자	8	12.5	37.5	50.0	-	-
	보험	7	57.1	42.9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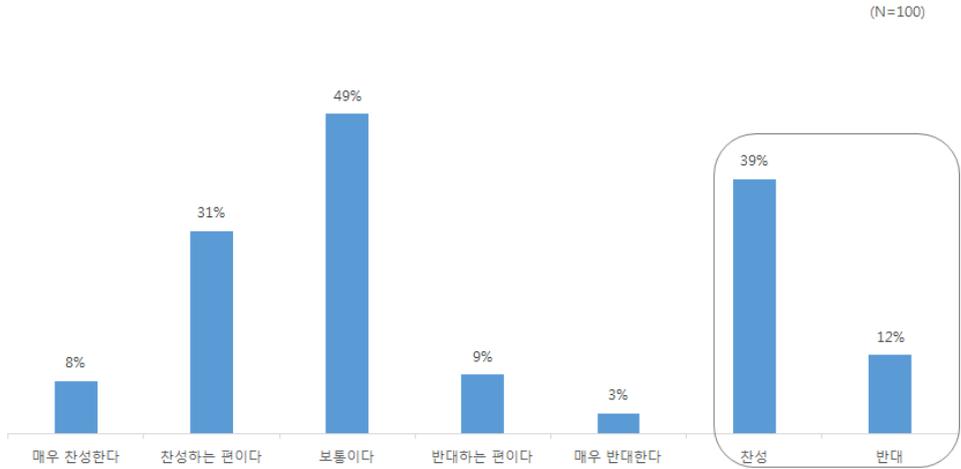
#### 4) 인적 물적 자원 투입 정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인적 물적 자원 투입 정도’를 평가 항목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8%,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31%, ‘보통이다’는 응답은 49%,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9%, ‘매우 반대한다’는 3%로 응답하였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인적 물적 자원 투입 정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는 견해가 39%로 반대한다는 견해(12%)에 비해 다소 높지만,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 찬성의 비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그림 38]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인적 물적 자원 투입 정도)**

정량 문 15-4)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인적 물적 자원 투입 정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면 좋을지, 표시해 주세요.



**[표 6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인적 물적 자원 투입 정도)**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체		100	8.0	31.0	49.0	9.0	3.0
대분류	전문가	20	5.0	40.0	45.0	5.0	5.0
	업계	60	8.3	30.0	51.7	10.0	-
	일반소비자	20	10.0	25.0	45.0	10.0	10.0
중분류	핀테크	30	3.3	26.7	53.3	16.7	-
	은행	15	20.0	20.0	60.0	-	-
	금융투자	8	12.5	37.5	37.5	12.5	-
	보험	7	-	57.1	42.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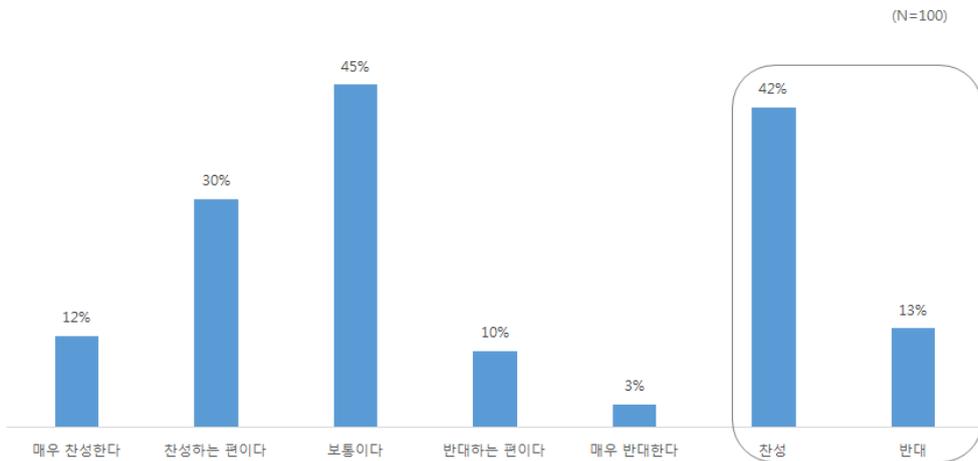
### 5) 자본의 적정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 항목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12%,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30%, ‘보통이다’는 응답은 45%,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0%, ‘매우 반대한다’는 3%로 응답하였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는 견해가 42%로 반대한다는 견해(1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39]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자본의 적정성)

정량 문 15-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자본의 적정성”를 평가항목으로 하면 좋을지, 표시해 주세요.



[표 6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자본의 적정성)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100	12.0	30.0	45.0	10.0	3.0
대분류	전문가	20	15.0	25.0	45.0	15.0	-
	업 계	60	11.7	28.3	46.7	10.0	3.3
	일반소비자	20	10.0	40.0	40.0	5.0	5.0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10.0	20.0	46.7	16.7	6.7
	은 행	15	20.0	33.3	46.7	-	-
	금융투자	8	-	50.0	37.5	12.5	-
	보 험	7	14.3	28.6	57.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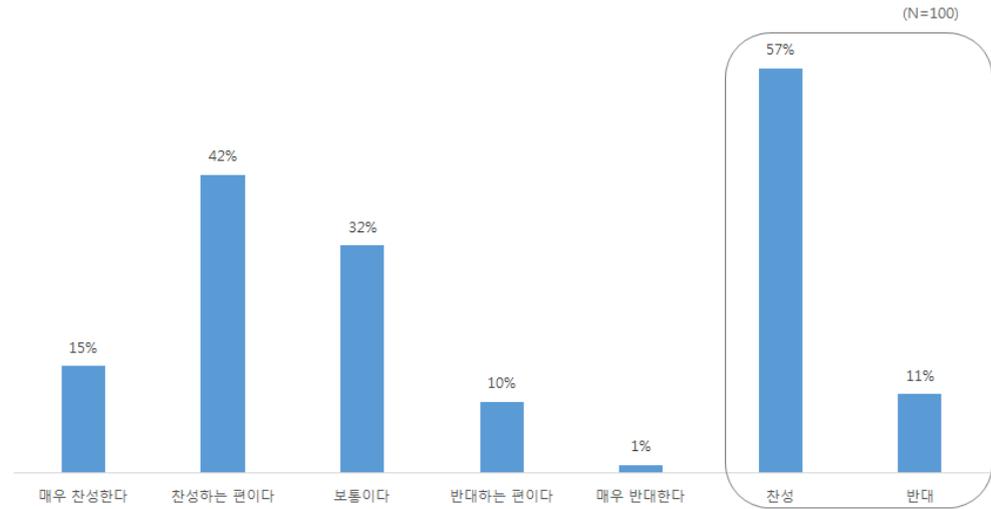
#### 6) 사업의 수익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 항목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15%,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42%, ‘보통이다’는 응답은 32%,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0%, ‘매우 반대한다’는 1%로 응답하였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는 견해가 57%로 반대한다는 견해(11%)에 비해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그림 40]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사업의 수익성)

정량 문 15-6)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항목으로 하면 좋을지, 표시해 주세요.



[표 64]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사업의 수익성)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100	15.0	42.0	32.0	10.0	1.0
대분류	전문가	20	10.0	45.0	35.0	10.0	-
	업 계	60	18.3	40.0	28.3	11.7	1.7
	일반소비자	20	10.0	45.0	40.0	5.0	-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16.7	36.7	30.0	13.3	3.3
	은 행	15	13.3	53.3	26.7	6.7	-
	금융투자	8	12.5	37.5	37.5	12.5	-
	보 험	7	42.9	28.6	14.3	1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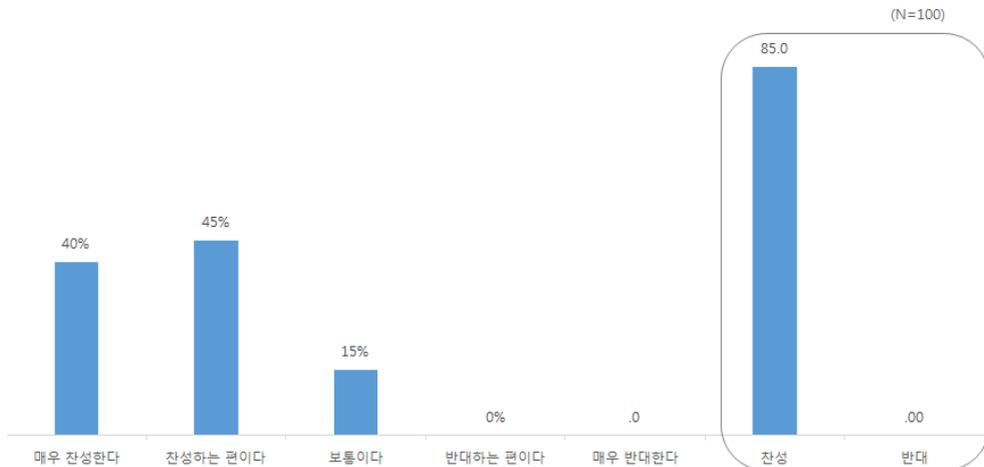
### 7) 사업운영의 투명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평가 항목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40%,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45%, ‘보통이다’는 응답은 15%,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0%, ‘매우 반대한다’는 0%로 응답하였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는 견해가 85%로 반대한다는 견해(0%)에 비해 매우 높게 응답하였다.

[그림 4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사업운영의 투명성)

정량 문 15-7)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운영 평가시,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평가항목으로 하면 좋을지, 표시해 주세요.



[표 6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사업운영의 투명성)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체		100	40.0	45.0	15.0	-	-
대분류	전문가	20	30.0	55.0	15.0	-	-
	업계	60	45.0	41.7	13.3	-	-
	일반소비자	20	35.0	45.0	20.0	-	-
중분류	핀테크	30	43.3	43.3	13.3	-	-
	은행	15	60.0	33.3	6.7	-	-
	금융투자	8	25.0	37.5	37.5	-	-
	보험	7	42.9	57.1	-	-	-

## 5.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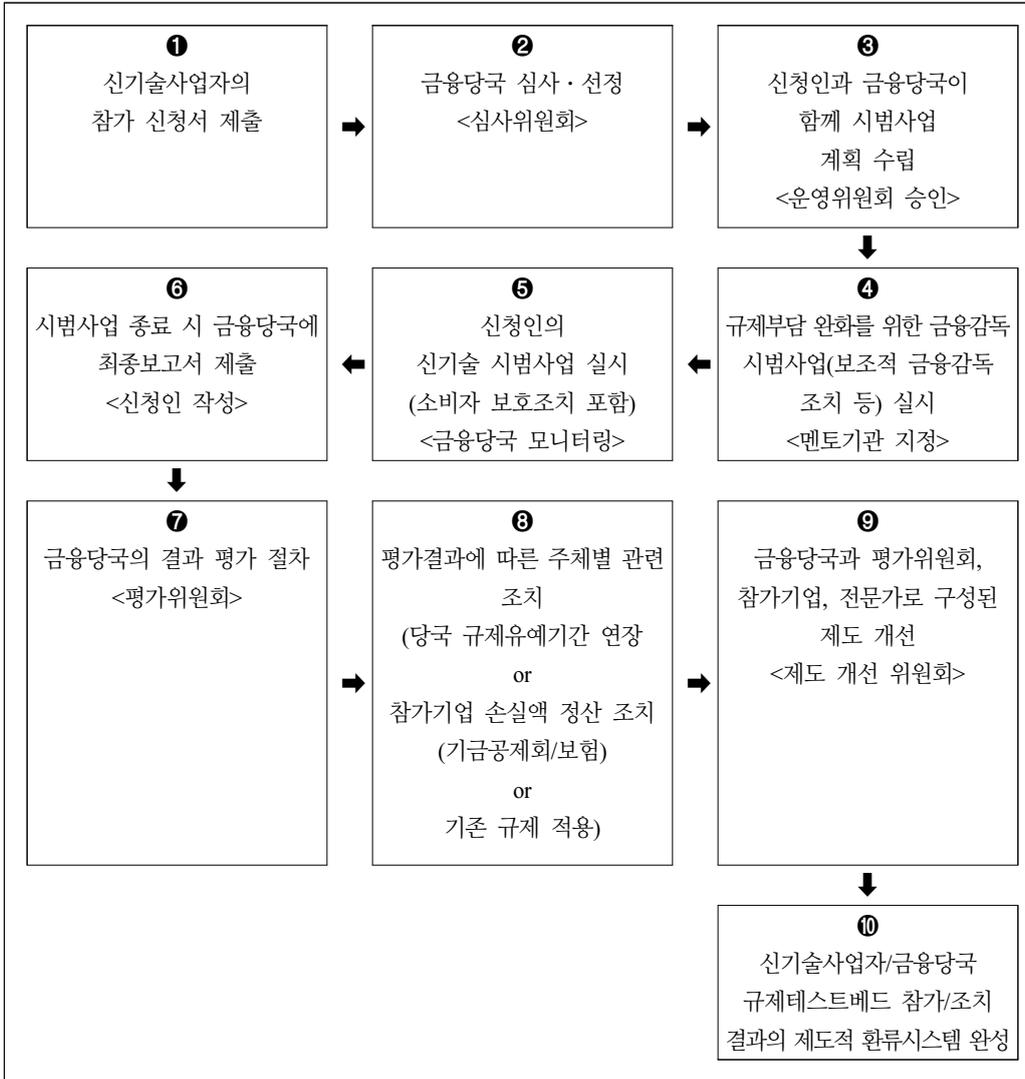
### (1) 정성조사 결과

####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절차에 대한 신뢰도 확보방안

[정성 문 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절차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여 보았습니다.

각 단계별 조직체계 및 운용사항에 대하여 절차적 또는 내용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래의 표에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기재해 주세요. 각 단계별 절차 및 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신뢰도 확보방안을 함께 제시해주세요.



-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멘토를 지정하는 문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핀테크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멘토기관이 필요치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멘토 기관’이 경쟁자이면서 동업자 일 수도 있어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멘토링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멘토 기관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핀테크 업체들은 부족한 면이 많으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인식을 주는 면이 있어서, 핀테크 업계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생각이 든다.
- 미국의 경우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스타트업 핀테크 업체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회사의 생존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규제를 들여다보고 의견을 낼 여력이 없다.
- 핀테크 업체들이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시장이 커질 때까지 지켜봐주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핀테크의 개별 업종으로 들어가면, 금융권이든 금감원이든 신기술에 대해 핀테크 업체만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없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종합상담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핀테크 기업이 정말로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 후 사업운영의 평가항목

[정성 문 2-3]

제시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 후 사업운영의 평가항목으로, 사업운영의 투명성(85%), 금융소비자 편익정도(84%), 사업의 혁신성(84%), 금융시장 발전 등 국민경제 기여 정도(78%), 사업의 수익성(57%), 자본의 적정성(42%), 인적 물적 자원 투입정도(39%) 순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15).

귀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외에도 추가적인 평가항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 ‘사업의 수익성’ 항목의 경우 테스트베드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자칫하면 등수매기기가 될 우려가 있다.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국가R&D사업 제안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하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기술의 진보와 개발의 사업의 확장과 유지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테스트베드를 잘 진행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3) 테스트베드 종료 후 우려점

[정성 문 5-2]

제시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시 시범사업 참가 종료 후 참여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점에 대해, ‘시범사업 종료 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시 발생하는 손실’(49%)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유출될 우려’(45%), ‘테스트베드 후 후발 기업들의 무임승차 관련’(40%)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13). 이러한 이유 때문에 테스트베드 참여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떠한지 질문에, 67%가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정량조사 문 14), 인센티브 종류에 대해 ‘참여기업의 평가결과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규제 유예기간 연장’(53.7%), ‘참여기업의 독점권을 일정기간 부여’(50.7%) 등이 높게 응답되었습니다(정량조사 문14-1).

귀하는 시범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부와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후발 업체의 무임승차는 이미 발생하고 있으나, 핀테크 업체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기술력 등으로 차별화 및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혁신성을 잃어버릴 염려는 크지 않다.

- 참여기업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핀테크 기업의 업력과 사업 성숙도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핀테크 업체의 경우 독점권을 받고 싶어하지만, 성숙한 핀테크 업체의 경우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사업 경쟁력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독점권 보다는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업체의 경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신에 모란정이 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심사가 더 세밀해 지고, 심사기간이 늘어난 경우도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이러한 경우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고, 혁신성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또한 핀테크의 경우 업계간 경쟁구도 때문에 서비스가 노출될 경우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아서 테스트베드 참여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 후 실제로 서비스가 잘 되지 않고, 선전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규제 당국에서도 테스트베드를 단순히 시범으로 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핀테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시사점

###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절차에 대한 신뢰도 확보방안

2016년의 KDI 보고서<sup>278)</sup>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테스트베드제도 도입 초기 모델로서 멘토링 역할을 하는 후견인 제도 도입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즉, 핀테크기술 업체의 솔루션 제공에 관계되는 각종 기관(금융기관 및 협회) 및 금융기술 전문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통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존 금융기관의 기술 도

278) 구자현 외, 앞의 보고서, 217~219면.

용 위험이 일부 방지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해당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멘토단에는 금융감독 시범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금융테스트베드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금융규제 관련 전문가나 영국의 Sandbox Umbrella 와 같이 참가기업에 대한 일정한 규제 정합성을 제공하는 방식의 협력자 구조가 없는 점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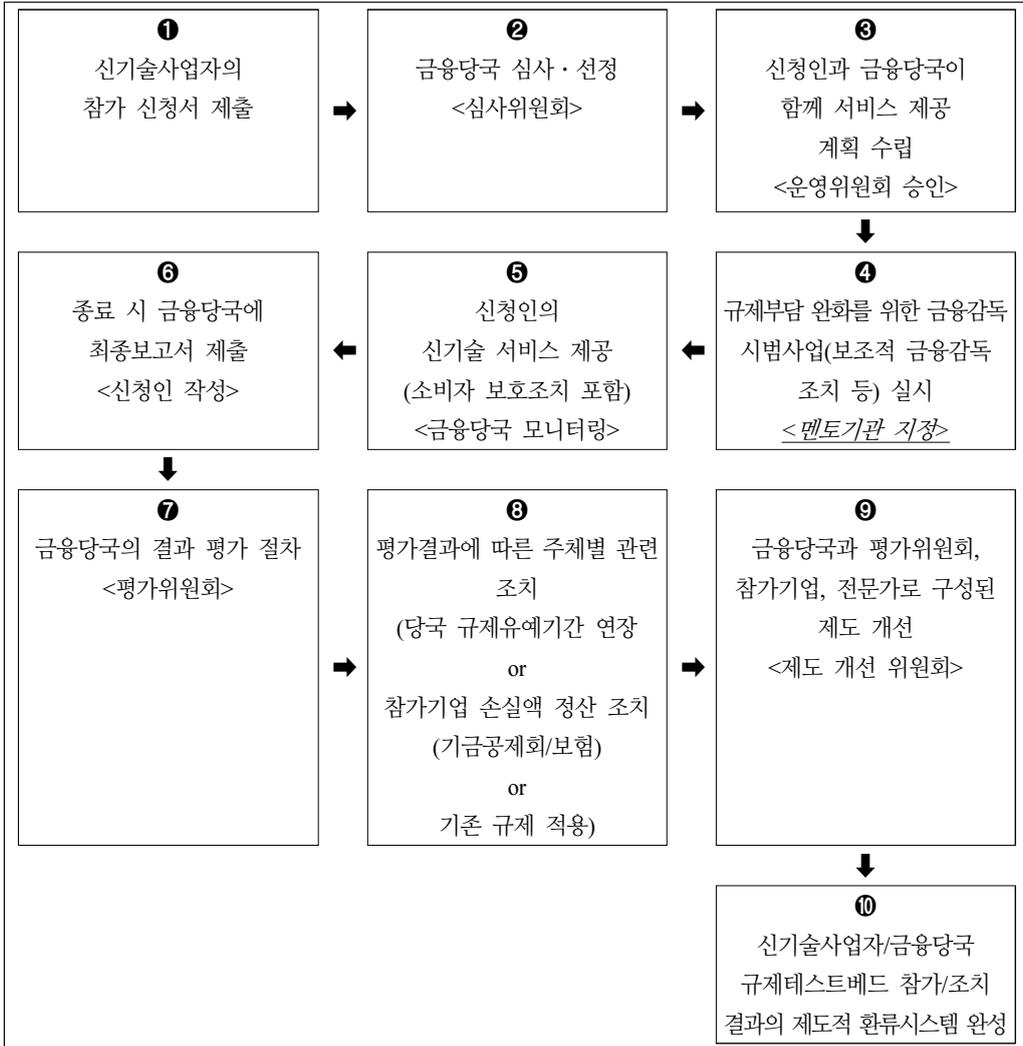
특히, 이번 FGI 방식의 정성조사에서는 멘토링제도 도입에 대한 핀테크업계 실무자들의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정성조사에서 본 연구자가 핀테크업계 실무자들에게 제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절차는 다음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절차는 2016년의 KDI 보고서 220면 [그림 8-15]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영 흐름도를 기초로 3개의 절차를 더 추가하여 작성한 내용이다. 즉, 금융당국의 금융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종료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에 금융당국이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주체별 관련 조치(규제유예기간 연장 또는 참가기업 손실액 정산, 기존 규제 적용)를 후속작업으로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금융당국과 평가위원회, 테스트베드 참가기업,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영국의 FCA 사례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 개정 작업까지 제도적 환류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sup>279)</sup>

다만, '멘토기관 지정' 방식에 대하여서는 정성조사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 제6절 이하의 시사점 부분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멘토단 운영'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279) 2016년의 KDI 보고서 204면 마지막 단락에서는 '제도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체계 등 도입을 고려할 필요 있음'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20면 이하의 운영 흐름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운영 절차에 도입하지 않은 바 있다.

[그림 4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절차



특히, 이번 연구의 정성조사에서는 보듯이 업계의 의견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 당국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핀테크기술 기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위에서 제시된 제7단계에서 제9단계의 절차 도입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와 금융당국 간

규제테스트베드 참가 결과에 대한 제도적 환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 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 후 사업운영의 평가항목 기준 마련

한편, 이번 연구의 정량조사 결과에서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 후 사업운영의 평가항목에 사업운영의 투명성(85%), 금융소비자 편익정도(84%), 사업의 혁신성(84%), 금융시장 발전 등 국민경제 기여 정도(78%), 사업의 수익성(57%), 자본의 적정성(42%), 인적 물적 자원 투입정도(39%) 순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정성조사에서는 ‘사업의 수익성’ 항목의 경우 테스트베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하여, 향후 규제테스트베드 참가기업 평가 기준에 사업규모와 같은 외부적 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과 같은 등수매기기 식의 평가 기준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국가R&D 사업 제안시 가산점을 주자는 제안에 대하여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번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금융비용절감과 같이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벤처부나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기제를 구축하여 이러한 R&D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테스트베드 종료 후 우려사항 해소

정량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핀테크업계 실무자들은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참가기간 종료 후, 해당 신기술서비스의 중단이나 아이디어 유출, 후발기업들의 무임승차 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성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실무자들의 경우 후발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는 시장 형성과정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과 경쟁력 있는 기술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자신감도 일견 보이고 있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정성조사 결과에서는 규제 테스트베드 참가기업에 대한 독점권 보다는 해당 핀테크기술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관련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규제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호주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제도 운용 사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해당 국가에서는 규제유예 기간 연장에 대한 절차나 신청범위 변경에 대한 요건 등이 절차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예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 후 서비스가 실제로 지속되지 않고 선전용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효용성이나 신뢰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규제 당국의 제도 운용에 대한 안정성과 명확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감독 시범사업으로서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제도 운용이 업계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하여서는 기존에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과 유사한 개선방향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논의들을 참고하여 본다면, 2016년 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① 비조치의견서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②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 처리 및 회신 권한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③ 금융감독원장의 비조치의견서 회신 시 취하지 않는 법적 조치의 개념을 명확히 하며, ④ 금융감독원장의 비조치의견서 회신 시 금융위원회의 구속력 유무를 명확하게 하고, ⑤ 금융감독원장의 비조치의견서 회신에 대한 상대방의 지위 및 신뢰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 등을 결론부분에서 제시한 바 있다.<sup>280)</sup>

이러한 논의와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현재에도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제도의 한 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위탁대리인이나 지정대

280) 김병덕, 『국내 금융환경을 감안한 비조치의견서 제도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원, 2016. 2., 124~127면.

리인과 같은 제도 뿐만 아니라 미도입제도에 대한 도입 가능성 검토 과정에서도 유사한 논의 구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6절 금융규제의 적용방식 변화 필요성

### 1. 기존 법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2016년 이후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단기 입법전략에 대하여서는 검토를 한 상태이다. 단기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신설하거나 또는 그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규제테스트베드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sup>28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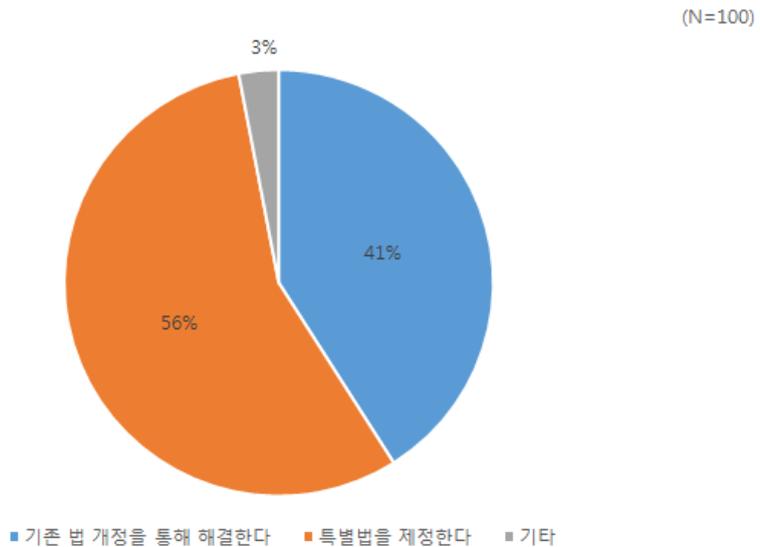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법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 방식 중 더 선호하는 방식을 설문하였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이외의 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때, 금융업법 체계에 부합하는 법령 개정 및 특별법 추진 중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56%로, 기존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는 의견 41%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81) 구자현 외, 앞의 보고서, 210~216면.

## [그림 43] 기존 법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정량 문 11) 현재 금융위원회가 도입중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현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외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금융업 법 체계에 부합하는 법령 개정 및 특별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연구에서 해당 설문을 고안하는 과정 중 2차례의 전문가회의를 실시한 바 있는데, 설문개발 과정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을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는 특별법 제정 찬성에 대한 평균 수치는 56%에 불과한 점이 특이사항으로 판단된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응답자 그룹별로 본다면 금융투자업계의 실무자들은 특별법 제정에 전일 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핀테크업계나 금융투자업계, 보험업계 모두 특별법 제정 쪽의 의견이 강한데 비하여, 은행 실무자들의 경우 기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아 각 세부 금융업종별 견해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시범인가를 통한 제도 도입과정에서 보았듯이 기존 업권과 핀테크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들 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금융업 재편에 대한 경계심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표 66] 기존 법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사례수	기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한다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타
전체		100	41.0	56.0	3.0
대분류	전문가	20	50.0	40.0	10.0
	업계	60	35.0	65.0	-
	일반소비자	20	50.0	45.0	5.0
중분류	핀테크	30	33.3	66.7	-
	은행	15	60.0	40.0	-
	금융투자	8	-	100.0	-
	보험	7	28.6	71.4	-

## 2. 기타 금융규제 개선 관련 견해

이번 연구의 조사에서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의견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된 자유 제안 의견

- 인허가 중심이 아닌 금융업계 전문가 중심의 정책개발 필요
- 혁신기업의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불법행위 등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규제의 방향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

-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및 특별법 제정 검토 필요
- 소비자의 권익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시 충분히 규제개선의 실익이 있다면 과감히 풀어주어야 하나, 정치적 고려가 너무 많고 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보다는 리스크 측면의 고려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규제개선이 안되고 있음. 따라서, 도전정신을 가지고 핀테크 사업을 하려는 회사가 규제개선을 위해 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적, 물적 투자를 한 후 사멸을 하고 그 위에 후발주자가 엄청난 혜택을 보고 무주공산으로 길을 가는 어이없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음. 이런 연유로 많은 열정에 넘치고 충분한 사업기회를 가지고 있던 많은 좋은 회사들이 길만 닦아 놓고 도산을 하는 사례가 많음. 반드시 이런 가치 있는 노력을 한 선도적 기업에는 채택시 사업 방식에 대한 일정기간 타 경쟁사 진입에 대한 유예를 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국금융사에는 핀테크를 통한 혁신적 활동을 하려는 기업은 사라질 것임
- 테스트베드 후 일정 평가에 따라 사업이 영속될 수 있는 기반(법개정 사항 도출 및 절차 보장등)이 마련되어야 참여 기관의 적극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규제를 초월하여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운영이 가능하길 바랍
- 개별 금융규제가 마련된 최초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법/규정의 형식적 문언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 형평을 도모하지 못한 획일적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 문제가 발생
- 반영을 위한 현실적인 업계지원
- 해외금융선진국의 제도 법규 등 벤치마킹 필요
- 금융규제가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임
-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하였으나, 향후 손실 발생 등 소비자가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융 감독 기관은 민원 제기시 소비자보호라는 명목 하에 다시 금융기관을 압박하게 됨. 이러한 민원평가까지 모두 자유로울 수 있어야 진정한 테스트베드가 시행될 것이라 생각
-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통한 금융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자유제안 의견은 기존에 다양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접하여 왔던 실무계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있어서 향후 금융규제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나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제도 도입과 운용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실제적인 실무상의 요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하여 모든 규제를 초월하는 입법의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입법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모든 법제가 상위법규에 따라야 하는 법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현행 금융법 체계가 너무 복잡다단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든 법규를 일시에 모두 네거티브방식의 규제체제로 변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도 새로운 금융감독방식의 적용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하기도 하고, 그러한 FCA의 규제적용방식 변경이나 관련 법규의 제정 시에도 EU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법리적 한계를 가지게 된다.

### 3.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 (1) 정성조사 결과

##### 1) ‘(가칭) 제도개선위원회’의 필요성

[정성 문 2-4]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제도 운영을 통한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가칭)제도개선위원회’가 규제테스트베드 참가기업의 의견 수렴과, 이를 기초로 한 법규 개정안 마련, 금융당국의 금융감독 조치 및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제안 등의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참여기업과, 금융감독 당국 간의 의사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핀테크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화 과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칭)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핀테크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 보호 및 법제화를 위한 의사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 2) 정책적/재정적 후속조치

[정성 문2-5]

그렇다면, 참가기업의 평가결과 성적별로 규제테스트베드 종료 후, 실질적인 정책적/재정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테스트베드에서 실시한 서비스 및 상품 중지예 따른 참가기업 손실 보상(금융소비자보호 조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보상 및 배상한 금액, 기술개발비용, 서비스/상품 운영 비용 등)에 대한 기금/공제회 설립 및 보험가입을 통한 처리가 필요하다.
- 규제테스트베드 종료 후 기존 금융규제가 적용되므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테스트베드에서 적용되었던 조치들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 법 개정 필요시 법개정 전 규제면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의 경우 긍정적이지만, 서비스 업종별로 달라질 수 있다.

## 3) 특별법 추진 여부

[정성 문 5]

현재 도입중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이외의 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때, 금융업법 체계에 부합하는 법령 개정이 좋을지, 특별법 추진이 좋을지 묻는 질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56%로 기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자(41%)는 의견보다 높게 응답되었습니다(정량조사 문 11). 특별법 제정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 핀테크기업의 경우 특별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 핀테크 기업의 경우, 관련 법과 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편으로 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경우 오히려 규제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한 한 기존 법안에 서비스의 몸집을 줄여서라도 들어가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P2P의 경우, 사업을 시작할 당시 규제법이 없어, 다른 법을 차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다보니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새로운 특별법이 만들어질 경우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많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규제로 인해 사업자체의 존립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핀테크의 경우 업권별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업권별 특수한 경우까지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 해외송금업의 경우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기자본 20억원을 비롯해, 전산설비, 외환 전문인력, 외환 전산망을 갖출 경우 소액 해외 송금업에 등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에서 송금과 관련한 연계업무를 지원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 (2) 시사점

### 1) 정책적/재정적 후속조치의 수행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가한 기업들 중, 제7단계에서 실시한 평가절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서는 규제테스트베드 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제도상의 우대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앞서 밝힌 바 있다.

한편, 테스트베드에서 실시한 금융서비스 및 상품의 제공은 기간 종료 후 평가에 따라 중지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참가기업은 다양한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금융소

비자보호 조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 본 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업체가 규제테스트베드 제도 내에서 해당 솔루션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운영 비용 및 기술개발비용 등에 대하여서는 아직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핀테크기술업체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에 따른 비용 발생분에 대한 재정적 후속조치에 대하여서는 기금설립 방식이나 공제회 설립·운영 방식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금설립의 경우에는 기금에 필요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에 대하여서는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산업측면에서의 지원필요성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입법례들로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22조<sup>282)</sup>,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sup>283)</sup> 등 다양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겠다.

282)

<b>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b>
제22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③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지원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이전하는 기업, 교육·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 항에서 “기업등”이라 한다) 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의 지식기반산업 집적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283)

<b>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b>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삭제

## 2) ‘(가칭) 제도개선위원회’ 조직과 구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정착을 위하여서는 참여기업과 금융감독 당국 간의 의사소통 창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칭)제도개선위원회’와 같은 의사소통창구가 마련되면 핀테크기술 기업의 실무적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비자 보호 및 규제테스트베드에 적용되는 보충적 금융감독 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기능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앞에서 제시한 10단계의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운영 절차에 있어서 제2단계 ‘심사위원회’나 제3단계의 ‘운영위원회’, 제7단계의 ‘평가위원회’, 제9단계의 ‘제도개선위원회’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자료제공 협조 등 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각의 조직 구성은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당국 규제담당자와 협회나 각 업체 등의 핀테크업계, 기존 금융업자, 핀테크 관련 기술 전문가, 핀테크 관련 규제전문가 등의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된 동일비율의 위원회로 구성하여 상호 간 의견 교류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모든 사안을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방식과 사안별로 전문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서는 심사위원회나 평가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등은 각 핀테크기술별로 요구되는 세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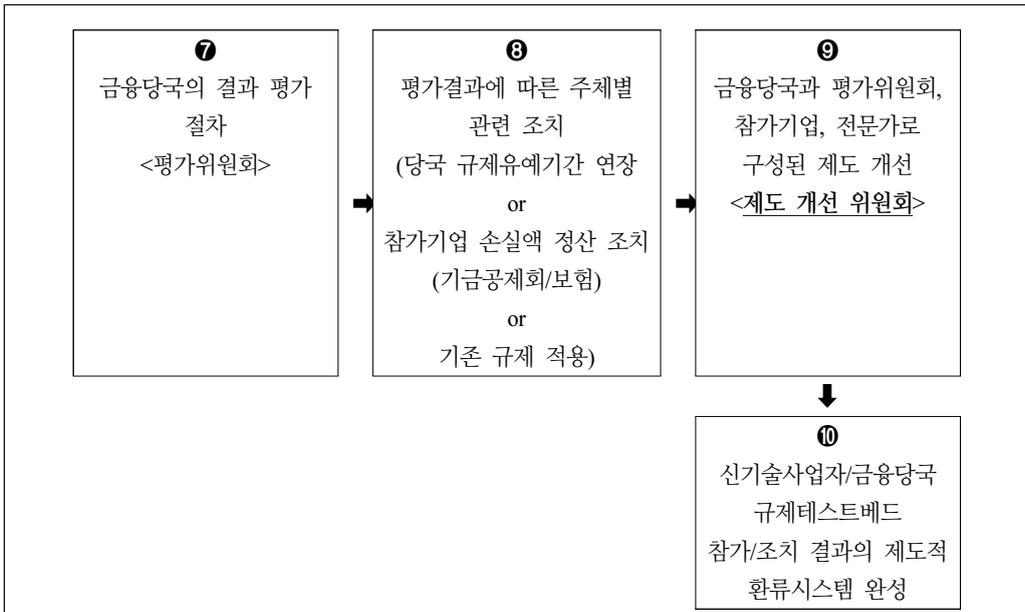
④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형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되,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서 최종 심의·의결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각 구성원 유형별로는 금융당국 규제담당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추천직으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44]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절차(제도개선위원회)



3)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한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 필요성

현재까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제도 운영 사례나 관련 금융감독 조치들은 현행 관련 법규의 틀 내에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비조치의견서 제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그 상세한 법적 지위나 적용범위에 대한 법률차원의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서 법적 명확성이나 안정성이 확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점<sup>284)</sup>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284) 김병덕, 『국내 금융환경을 감안한 비조치의견서 제도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원, 124~127면; 김

따라서,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제도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제도에 적용하는 다양한 금융감독 조치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서는 현재 도입하고 있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제도에 적용되는 조치들의 법적 근거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으나 실무적으로 그 도입의 필요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서는 아래에서 장을 바꾸어 논의하도록 한다.

## 제7절 소 결

본 연구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에 관한 수요조사에서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대한 인지 비율이 72%, 제도 실시의 찬성 비율이 91%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감독당국의 테스트베드 도입이 최근 신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규제개선 방안의 필요성 관련 논의와 핀테크분야 규제방식의 전환 등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과 부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재 금융위원회가 제도에 직접 적용하고 있는 비조치의견서나 지정대리인 제도 등에 대하여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인 바 있으며, 위탁테스트의 경우에는 핀테크업계 실무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56.7%)이 그 활용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다른 응답자 그룹에서는 그 활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서 향후 제도 운영상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은집·허은진, “비조치의견서제도에 대한 소고”, 『BFL』제75호, 2016.1, 84면; 김진철, “비공식적 행정행위로서의 No-action Letter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8, 322면.

한편, 영국의 개별지도(Individual Guidance) 개념과 유사한 유권해석이나 행정지도 등의 금융감독조치에 관하여서는 각각 그 활용도를 55%와 50%로 응답하고 있어서 향후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는 도입되지 않은 해외의 금융감독조치 즉, 인허가면제나 규제면제, 특례적용, 한정인가 등의 제도 도입 찬반에 대하여서는 각각 53%, 50%, 56%, 69%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은 정량조사 설문16)에 대한 응답 결과와 교차하여 분석이 가능할 것인데, ‘신금융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제도상 애로사항’을 물은데 대하여, 62%가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에 적용받는 규제가 여러 법에 중첩되어 있다’는 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현행 금융법 체계 내에서도 이러한 규제특례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론적 가능성 검토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Negative 규제방식에 대한 논의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테스트베드 참가 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에 기술력(83%), 운영능력(81%), 개발 인력(68%), 자본금 규모(54%), 업력(42%)의 순서로 응답하고 있는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참가 사업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영국 등의 국가에서 Regulatory Sandbox 제도 도입의 목적과 참가기업 선정 기준에 ‘혁신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에 대하여서는 50%의 응답자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선택하였으며, 47%가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안내를 38%가 테스트베드임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기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소비자의 중도탈퇴나 종료 시 금융소비자의 자산 환급계획 수립(25%)이나 금융당국의 진행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22%), 업체 내 내부통제 장치 마련(13%) 등의 응답률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호주의 제도 운용 사례에서와 같이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전담 분쟁해결절차의 체계적인 수립, 설명의무 요건화 등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하여서는 응답자의 67%가 찬성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53.7%는 규제유예 기간 연장을, 50.7%는 참여기업의 독점권을 일정기간 부여를 선택하여 향후 우리나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용에 적용할 미도입조치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참여기업의 손실 지원 의견은 34.3%, 참여기업의 관련 규제 제/개정 절차에 대한 의견 반영기회 보장도 28.4%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참여기업의 의견 반영 기회에 대하여서는 전문가그룹이 43.8%, 핀테크 실무자 그룹이 34.8%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기업의 사업종료시 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으로는 ‘사업운영의 투명성’ 항목이 85%로 가장 높고, ‘사업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의 편익정도’ 항목이 84%, ‘금융시장 발전 등 국민 경제 기여 정도’ 78%, ‘사업의 수익성’, ‘자본의 적정성’, ‘인적 물적 자원 투입 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 기업 선정에 대한 국내외의 판단 기준이나 선정 요건과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금융시장 발전 등 국민 경제 기여 정도’에 대한 응답률도 상당히 높은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정량조사 결과에 대하여 핀테크업계 실무자들과 FGI 방식으로 가진 정성조사에서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효용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를 설계할 것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즉, 각 단계별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참가신청 기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문제있는 기업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가 아닌 ‘새로운 금융방독방식 적용을 통한 금융감독 시범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신기술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정량/정성 조사 과정에서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5장

#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제1절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

제2절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 제5장

#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 제1절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

### 1.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의의와 법적 지위의 한계

#### (1) 현행 금융규제 관련 법률의 문제

현재 금융 관련 법령은 대체로 규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위반 시 일반적인 민사·형사상 처벌에 더하여 행정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 위험을 부담하며, 특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개발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최근 금융산업에 ICT 기술이 결합되어 급진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금융산업 및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이 이러한 변화를 모두 예상하여 규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규제 필요성이 발생할 때 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개정하여 규제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나, 그 내용이 복잡하여 법령위반 여부를 일반인뿐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나 법률 전문가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sup>285)</sup>

#### (2)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활용

특정한 행위를 하려는 국민에 대하여 정부의 법률상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285) 김은집·히은진, ‘비조치의견서제도에 대한 소고’, “BFL” 제75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1, 71면.

여 그 판단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해당 국민은 정부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목적이 되는 행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문의하고 당해 기관으로부터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다.<sup>286)</sup> 이러한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현행 법령에 따른 규제가 불명확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에 대하여 비조치의견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한계

#### 1) 법률상 근거 부재

현재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금융위원회 고시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이하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별다른 위임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에는 영업행위에 적용할 법령 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와 법령 등의 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비조치의견서 제도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해당 제도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무효로 판단할 위험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례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임시허가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싶으나 현재 금융 관련 규제와 유사하게 매우 복잡한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법률

286) 김병덕,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제도의 국내 활성화 방안’, “주간 금융브리핑”, 한국금융연구원 24권 40호, 2015, 4면.

에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거나 그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나 상품의 판매의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렵게 되고,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였음에도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존의 규제로 인하여 사업 출시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임시허가 제도이다.<sup>287)</sup> 이러한 임시허가 제도는 그 취지 및 방식 측면에서 비조치의견서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임시허가제도는 특별법상 그 근거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 고시(『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에 그 제도적 근거를 가지는 비조치의견서와는 차이를 가진다.

신속처리절차는 신규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절차이다. 신규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각종 허가, 승인, 등록, 인가, 검증 등을 받지 못하거나 허가 등의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규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면서 신속처리절차가 개시된다(제36조).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속처리를 신청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같은 조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거나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간주된 경우,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37조 1항).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제37조 3항).

## 2) 법적 효력의 문제

금융감독원장의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 회신은 금융감독원장의 공식입장으로 효력을 갖게 되며, 사전심사결과 일단 적법한 것으로

287) 박관훈, ‘핀테크 관련 국내법제의 현황과 과제’, 『강원법학』 제49권, 2016. 10, 272면.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은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다(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제11조 제1항). 그러나 비조치의견 회신으로 인해 신청인의 다른 법적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비조치의견 회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동조 제2항).

-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
-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규칙내용을 비추어 판단해 볼 때, 비조치의견서의 실효성과 법적 효력과 및 그 구속력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위 조항은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의 재량을 넓게 인정한다. 특히 사유 중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의 경우 금융환경과 ICT 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정변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없이 재량만으로 그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인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위 법령에 별도의 근거 없이 금융위원회 고시에 의하여 비조치의견서에 부여된 효력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력이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등 제3자 및 법원을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하다. 이러한 비조치의견서의 효력의 문제는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를 근거로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 및 금융 서비스 및 상품 소비자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본 제도 자체의 유용성 및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규제테스트베드

제도의 주요 기제로서의 기능성, 실효성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sup>288)</sup> 그 효력과 관련하여 비조치의견서는 그 성질이 사전심사청구제도인 바,<sup>289)</sup> 행정법상 확약에 해당하고,<sup>290)</sup> 판례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외적 효력이나 처분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자신의 의견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sup>291)</sup>

규제테스트베드제도는 그 취지상 본질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범위의 규제 완화 또는 적용 면제라는 법적 지위의 설정을 요구하고, 제도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그 기간과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시범사업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가 없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입법적 조치 없이, 테스트베드제도를 현행 비조치의견서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와 같은 비조치의견서의 법적 한계를 그대로 이어가게 되며, 향후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의 실효성과 제도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 2. 지정대리인 제도

### (1) 지정대리인 제도의 의의

지정대리인 제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사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 대해서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하여 핀테크기술 기업의 경우 신규 인허가 없이도 직접 시범사업을 할 수 있 금융시스템 등 사업설비가 완비된 기관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288) 구자현 外, 앞의 보고서, 194~195면.

289)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은 ‘금융감독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규칙’이 개정된 것으로서 해당 규칙명의 변경으로 판단해 보아도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그 성질상 사전심사청구제도임을 알 수 있다.

290) 김은집·허은진, 앞의 논문, 77면.

291)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

## (2) 지정대리인 제도의 문제점

### 1) 현행 지정대리인제도의 한계

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업무위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2000년에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이 제정되었는데, 본 규정은 2005년 7월 개정을 통하여 17가지의 업무위탁금지 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하고, 업무위탁시 보고의무를 부과하였다.

해당 규정은 신규 금융사업자가 시범사업을 지정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대부분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 제도 하에서는 지정대리인 위탁제도가 그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업무위탁이 되었더라도 인사, 총무 등 금융업과 무관한 후선업무 위탁까지도 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지정대리인의 업무위탁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행 법률 규정 내에서는 금융 규제테스트베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 2) 업무위탁규정 개정 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업무위탁규정 하에서는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의 시범사업을 위한 지정대리인 제도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2017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22호로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한 바 있다. 동 개정안은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위탁 범위 확대 필요성 증대에 따른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규정 개정안 제3조의3).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규정의 내용으로는 우선,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위탁 사항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정대리인에 대해서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며, 다만 위탁업무의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지정대리인 지정에 대하여 금융위원회<sup>292)</sup>는 ① 영업 지역, ② 서비스의 혁신성, ③ 소비자 편익, ④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금융사업자는 자신이 수행하고자하는 신기술업체가 향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때 행정청의 별도의 인가 없이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시범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3. 지정위탁 제도

#### (1) 지정위탁 제도의 의의

지정위탁 제도란 현행법체계하에서 금융법령상 영업인가등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인가등을 받은 적법한 금융기관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명의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제도<sup>293)</sup>로서 기본적인 취지는 지정대리인 제도와 유사하다.

#### (2) 지정위탁 제도의 문제점

지정위탁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시범사업과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한 금융회사는 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사후 구상청구 가능하다. 지정위탁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대체로 대규모의 금융거래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신규 금융사업자에 부담시키는 것은 해당 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위탁 제도 방식은 일률적이고 형식에 구속되는 제도적 방식이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시범사업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292) 금융위·금감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정대리인심의회에 권한을 위임한다.

293) 구자현 外, 앞의 보고서, 195~196면.

미비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sup>294)</sup> 또한 운영방식 및 취지가 거의 유사한 지정대리인 제도가 입법예고<sup>295)</sup>와 같이 개정된다면, 제도의 완결성이 비교적 약한 지정위탁 제도의 이용 실익은 더욱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4. 법령해석(유권해석)

##### (1)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상 법령해석의 의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은 비조치의견서와 더불어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해당 운영규칙상 ‘법령해석’이란 사안에 대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 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3호), 법령해석에 대해서 요청절차·신청서식을 비조치의견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다만 운영규칙에서는 비조치의견서에 대해서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요청대상 및 ‘사후에 회신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법령해석의 경우 법령·규정 등에 대한 일반적 해석기준이나 판단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반면, 비조치의견서는 법규해석과 함께 특정행위에 대한 비조치의견을 표명한다는 개념상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sup>296)</sup>

또한 법령해석은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회신하는 것으로 하면서, 법령해석 요청대상이 금융감독원 소관 세칙사항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이첩하도록 하고, 검사·제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의견조회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나아가 법령해석 관련 일정한 사항의 경우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설치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7조 제1항).

294) 구자현 외, 위의 보고서, 196면.

29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22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7.5.8., 금융위원회.

296) 김은집·하은진, ‘비조치의견서제도에 대한 소고’, “BFL” 제75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1, 76면.

## (2) 법령해석의 규제테스트베드 제도 적용 가능성

### 1) 규제테스트베드 제도에 대한 적용가능성

#### 가. 법령해석을 통한 규제면제 및 완화 사례

금융 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과 금융감독원장의 비조치의견서 양자 모두 큰 틀에서 행정해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조치로서 비조치의견서 제도와 더불어 법령해석 역시 그 활용성 충분하다. 실제 금융 규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하여 출자를 허용한 사례가 있으며,<sup>297)</sup>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없거나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연락처에 저장된 전화번호만 있으면 송금이 가능한 ‘토스’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그 혁신성이 금융소비자의 편익에 크게 기여하고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와 함께 해당 서비스가 현행 금융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여 규제를 면제한 사례가 있다.<sup>298)</sup>

#### 나. 법령해석의 한계

일반적으로 법령해석은 특정 법규정의 일반적 해석이나 법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비조치의견서는 특정 법규정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특정 행위가 해당 법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하지 않거나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법령해석보다 더욱 강한 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299)</sup> 따라서 비조치의견서가 새로운 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

29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유권해석 추진’, 2015. 5. 4. 참고

298) “간편송금도 처음엔 불법”...규제 건어야 핀테크 산다, 디지털 타임스, 2017.7.18.,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11902100858800001](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11902100858800001) 2017.10.31. 최종검색)

299) 김은집·허은진, 위의 논문, 79면.

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행위가 기존 법령으로는 그 적법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행정해석 보다 유용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규 금융사업자가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취할 수 있음에도 법령해석을 선택할 실익은 적다고 본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법령해석은 법규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이를 토대로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 여부를 밝히는 데에 그치는 반면, 비조치의견서는 더 나아가 제재 여부에 대한 감독 당국의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때문에 법적 불안정성 또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sup>300)</sup> 실제 운영규칙에서도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달리 규정하며 권한·절차 등은 달리 규정하고 있어 그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일반적으로도 양자가 구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금융위원회에서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는 법령해석 보다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더 유익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비조치의견서 제도 또한 비조치의견에 이르기 위한 기본전제로서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대한 측면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형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그 효과가 현실적으로 유사하게 될 것이며, 양자의 신청서 양식 또한 현행 운영규칙상으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구분이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는 반론이 있다.<sup>301)</sup>

## 5. 행정지도

### (1) 행정지도의 의미

행정지도란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서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

30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개혁 추진 이후 비조치의견서 및 유권해석 첫 사례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BC카드 현장 방문 결과’, 2015. 4. 8.

301) 김은집·허은진, 앞의 논문, 79면.

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행정청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데 특징이 있고, 사실상의 강제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자체만으로 직접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 보며,<sup>302)</sup> 판례도 원칙적으로 행정지도의 처분성을 부정한다.<sup>303)</sup>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도 이러한 행정지도에 관한 개념과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한미FTA 협정문</b>
제13장 [금융서비스] 의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제4절[투명성]
<b>(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apter Thirteen [Financial Services] Annex 13-B[Specific Commitments] (Section D: Transparency))</b>
미합중국은 특히 금융감독원(FSS)의 행정지도에 대한 운영지침( <i>the Operational Rule on Administrative Guidance</i> ) <sup>304)</sup> 의 채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 <i>the no-action letter mechanism</i> )의 도입에 주목하면서, 투명성 확대 및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진행중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행정지도를 내리던 기존의 관행을 지속한다.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은 제공된 모든 구두 행정지도를 서면으로 하고 공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다. 이전에 내려진 행정지도를 재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이해당사자에게 그 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외국과의 협정문에 우리나라 금융분야에 대한 투명성 이행방안과 관련하여 행정지도의 관행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

302)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7, 461면.

30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9099 판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899 판결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395 판결

304) 2007년 7월 20일 「행정지도 운영규칙」은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으로 제정되었으나, 2016년 12월 1일 개정된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3호)에서는 (별표)52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 이 행정지도 실시’ 및 ‘금융위원회 감독행정작용의 실시’ 등과 같은 사항을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고 있는 것은 행정지도가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에서 가지는 지위와 의미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규제테스트베드에 대한 적용 가능성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를 행정지도를 통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치인 비조치의견서 제도와의 차이를 통해 그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지도는 그 정의상 행정기관이 상대방인 사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 데 반해, 비조치의견서는 사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감독당국이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지도와는 개념상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일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로 ‘행정지도 운영규칙’이 별도로 제정되어 행정지도는 동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운영규칙 제4조 4호)을 고려하면, 비조치의견서와의 차이는 명확하다.

예를 들어, 적법한 금융기관이 또는 적법한 금융기관의 명의로(즉, 대리 시범사업자)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부여된 법해석 및 집행·감독행정 재량권한을 유연하게 행사하여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식과 같은 유형에서 행정지도가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에서 그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sup>305)</sup> 다만, 그 행정지도는 그 본질상 사인의 요청이 아닌 행정청 일방의 행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으로, 여러 분야에서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핀테크의 특징에 비추어 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모든 분야를 행정청이 행정지도로서 관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즉, 비조치의견서 등과 같은 현재 채택된 행정조치로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지도는 그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본다.

305) 구자현 外, 앞의 보고서, 184-185면.

## 6. 미도입 행정조치의 법적 문제점

현재 국내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법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조치부터 채택되고 있는바, 이들 조치에는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비조치의견서가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보다 안정적인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위의 세 가지 조치 외에 다양한 행정조치(한정인가, 특례 적용, 규제면제, 인허가면제 등)의 도입가능성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조치들은 특별히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하지 않고 행정청의 재량으로 가능한 행위들로서 도입이 가능할 경우 입법까지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관할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제도 대응이 가능하다.

해당 방식의 적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정인가, 특례 적용, 규제면제, 인허가면제를 통하여 실제 가능한 운영방식을 유형화하여 세분하고 각 방식에 따른 타당성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 규제테스트베드제도에 적용할 금융감독조치에는 선행연구(KDI 보고서)에서 크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임이 제시된 바 있다.<sup>306)</sup>

### (1) 금융감독조치 유형

#### 1)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범사업자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허가 (한정인가)

해당 행위는 사업자를 새로운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거나 또는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로서 특허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특허의 법적 성질 상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 사업자에 대하여 권리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과, 자격 요건 등 법률상 제반 요건을 구비하는 것과 같이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특허는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 완화의 취지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는 데에 있었

306) 이하 방식들은 구자현 外, 앞의 보고서, 179면.

던 바,<sup>307)</sup> 이와 같이 특허의 성격을 가지는 허가는 규제면제 및 완화라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에 상충하는 조치로서 작용할 수 있다.

### 2) 특별 인가 또는 등록절차를 통해 사업자에게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권리를 설정 (특별인가)

해당 조치는 별도의 인가 및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권리 설정 행위 역시 위의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법적 성질을 특허로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이 관련 행정청의 조치만으로 수행이 어렵다.

### 3)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상의 인가·등록 요건 면제 (인허가 면제)

해당 조치는 현행 금융 관련 법제의 적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시키는 조치로서 금융규제당국의 규제감독권한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면제 조치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핀테크 진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모든 수요를 예외로서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또한 법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면제 행위는 전형적인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는 법률을 통해서만 하도록 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 4) 금융규제법상 시범사업대상의 영업행위를 관할 영업행위로 간주하지 않음 (규제면제)

이 행위는 (3)과 유사하게 법령 적용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방식을 차용할 경우 금융당국이

307) 법제처, 앞의 심사기준, 116면.

모든 시범사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므로, 금융규제의 목적과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sup>308)</sup>

#### 5)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신고하여 시범사업을 수행(규제유예)

신고란 사인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통지하는 행위로서 법령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통지행위가 의무로 되어 있는 작용을 말한다.<sup>309)</sup> 신고행위 자체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며,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고는 크게 일정 요건을 갖춘 신고가 행정기관에 도달하는 것 자체로서 신고의무의 이행 효과를 발생시키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여야 신고가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된다. 최근 이른바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허가의 대상이었던 행위의 상당수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있다.<sup>310)</sup>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의 취지가 기존 금융규제의 완화에 있다는 점에서 따라 해당 방식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으며, 호주의 ASIC 역시 규제샌드박스를 위하여 해당 방식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sup>311)</sup> 다만, 해당 행위에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고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없이는 수행이 어렵다.

#### 6) 대리 시범사업자 등으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시범사업을 지원(특례 적용)

해당 방식은 신규 금융사업자 본인이 아닌 적법한 금융기관 또는 적법한 금융기관의 명의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부여된 법해석 및 집행·감독행정 재량 권한을 유연하게 행사하여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선 사례들이 사업자 요건

308) 구자현 外, 앞의 보고서, 180면.

309)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2. 397면.

310)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13, 138쪽

311) 구자현 外, 앞의 보고서, 180면.

등의 충족을 그 전제로 한 것과는 달리 기존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현행 법체계하에서 수행가능하다.

그러나 핀테크는 그 특성상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자라면 제한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해당 행위의 경우 금융규제법상 금융기관으로 대상 사업자를 제한하다는 한계가 있다.<sup>312)</sup> 또한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 도입이라는 규제테스트베드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볼 때 거대자본을 가진 소수의 금융기관의 진입은 오히려 경쟁 시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벤처의 성격이 강하고 사업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시범사업에서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을 금융기관이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과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7) 공법상 계약으로 체결

별다른 법령상 제·개정 없이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당국과 사업자가 쌍방의 의사합치를 통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이른바 공법적 계약을 통한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선행연구(KDI 보고서)에서는 시도된 바 있다.<sup>313)</sup>

### 가. 공법상 계약의 특징

우선 공법상 계약은 입법의 불비로 인하여 행정행위가 불가능하여 현실적인 공익 실현이 어려울 경우에 보조적 조치로서 행정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법률상 근거가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절차·집행 등이 어려운 경우 탄력적인 행정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공법상 계약은 국민의 행정 참여도를 제고시키고 상대방의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행정처리가 가능하므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312) 구자현 外, 위의 보고서, 180면.

313) 공법상 계약에 대한 내용은 박군성, 행정법론(상), 2017, 박영사, 478면 이하 정리.

이러한 공법상 계약은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인 행정행위와 달리 비권력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주체와 상대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별다른 법률상 근거 없이도 합의만으로 체결이 가능하다. 다만, 공법상 계약이 실효성을 갖는 부분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은 상대방과 합의를 통하여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나.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 내에서의 공법상 계약 적용 가능성

위에서 언급한 특징에 따라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당국과 사업자 간의 공법상 계약으로서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의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sup>314)</sup>가 있다. 그러나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의 취지가 혁신적 금융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규제면제라는 점에서 볼 때,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사업이나 규제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서비스의 경우는 해당 제도가 불필요하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실정법에 우선하는 일반 사법과는 달리, 행정청과의 합의가 과연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될 수 있다.

법률우위원칙과 관련하여서도 현행 금융규제법은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영업행위의 목적 등에 따른 규제적용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입법상 조치없이 단순히 공법상 계약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률우위원칙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sup>315)</sup>

## 7.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방향

신규 금융 사업자에 대하여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금융감독청의 보충적 행정조치는 별다른 입법 조치 없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314) 구자현 外, 앞의 보고서, 180~183면.

315) 구자현 外, 위의 보고서, 182면.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방식을 취하더라도 결국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행정행위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가진다. 따라서 해당 방식 외에 기존 법률의 개정 및 새로운 법률의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1) 기존 금융규제 관련 법령 개정

### 1) 기존 금융규제 관련 법령 개정의 의미

금융규제테스트베드는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 사업 또는 기술이 무엇인가에 따라 관련 현행법 중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과 같이 장애로 작용하거나 도입을 위한 근거(기존 금융기관의 협력 또는 금융망과의 연계 등) 마련이 필요하다. 모든 규제에 대한 포괄적 완화 및 면제를 규정하여 예상치 못한 규제공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특별법 제정보다 보다 각각의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은 규제공백을 예방할 수 있고 각 법률의 입법목적에 맞춘 개정을 통하여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 2) 개정 입법의 현실적 한계

현행 금융업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해당 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가, 허가, 등록 등을 규정한 경우 관련 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인가, 허가, 등록 등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 등은 금융업법에서 정한 인가, 허가, 등록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공계약 등을 체결할 수도 없으며 관련 테스트로 말미암아 발생한 법령의 위반이나 책임 등을 면책되지 않는다. 결국 관련 금융서비스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테스트를 위하여 관련 현행 법률을 모두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법률의 일률적 개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또한 신규 금융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혀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출시된 경우 필요에 의하여 또다시 개정이 이루어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빈번한 법률 개정은 법적 안전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를 오히려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상충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만약 모든 법률이 개정되어 규제완화 및 면제 규정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개정 법률들은 특별법이 아니므로, 다른 소관부처의 법률과 충돌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완화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행 금융 관련 법률을 제도의 취지에 맞춰 모두 개정하는 것은 개정작업의 어려움과 더불어 다른 법률상의 규제까지 완화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2)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1) 특별법 제정의 의미

이러한 정의와 효과를 토대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특징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익을 제공하여, 금융시장에는 새로운 기술력을 가진 사업자가 경쟁과 혁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기술 기반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시를 원하는 사업자가 인허가 등 규제당국의 적법한 승인을 얻기 전에 또는 규제준수의 부담이나 규제의 집행 및 행정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한시적으로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성, 위험성 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안전지대를 제공한다.<sup>316)</sup>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제도적 관점에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는 금융규제당국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새로운 영업행위를 정해진 기간 동안 한정된 수의 소비자와 투자자를 상대로 적법하게 시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316) 구자현 外, 앞의 보고서, 176-176면.

강학상 특정인을 위하여 권리 기타 법률상의 자격을 설정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특허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 행위는 권한 부여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요하는 바,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으로서 특별법 제정방안 내지 현행 관련 법률들의 개정안 마련의 방법이 있겠다.

## 2)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규제테스트베드 제도의 법제화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새로운 분야의 입법 수요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법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내용을 설정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는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하고자 하는 요구에 따른 것이나, 현재의 복잡한 금융 규제 체계 내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으로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위한 규제완화 또는 면제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특별법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의회 통과까지의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특별법체제로 운영될 경우 법적 안정성 및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정착 및 활성화 할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제도를 위하여서는 기존의 논의와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기초로 판단컨대,<sup>317)</sup>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내용]

- 신규 금융서비스를 도입하기 적합한 금융서비스 규제테스트베드 적용범위 및 적용기간
- 적용대상(예컨대, 인가 등의 생략을 대신하는 신고, 한시적 적용대상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 등) - 혁신성 요건 도입 고려
- 관련 금융기관의 협력과 금융전산망의 연계에 따른 책임 등 규정

317) 구자현 外, 위의 보고서, 208면.

-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 참가기업 선정 기준 및 고객 수 제한 조치 내지 테스트 금액 제한(호주의 사례 참고)
- 소비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전규제적 요소(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환불방법 고지, 분쟁조정절차 고지 및 중요정보 공시 의무와 최선이익의무(best interest duty), 소송가액 총액 1백만 달러 상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 의무, 테스트 종료 후 12개월 동안 보상조치 의무 존속 등)
- 전담 분쟁해결기관 도입 필요성 검토(호주의 IDR, EDR 참고)
- 규제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하여 현재 관련업권에 대한 규제를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영국과 같이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실시(금융당국, 혁신기업, 전문가, 소비자가 함께 입법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제환류체계’ 구축

### 3)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 대상 범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규에 따른 금융권 규제방식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지적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따라서, 지적 대상이 되는 해당 규제는 특별법 제정시 혁신성을 가진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구현될 때 유사수신행위가 되어 불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당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융산업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 허용, 예외 규제’ 방식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규정(소위 네거티브리스트)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입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금융권 규제 법규가 ‘법률’만 치더라도 50여개를 넘어가는 현실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 방식의 입법작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업역에 익숙한 현실에서 개정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작업을 위주로 원칙적인 규정을 우선 도입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테스트베드 운용을 통한 ‘규제환류체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련 금융법규의 개선 사항을 산·관·학·소비자가 함께 동참하여 추출하고,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2절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 1. 조연적 금융감독의 활용 가능성

영국은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 제도 도입과 함께 금융감독 상 다양한 시범적 감독방식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개별지도(individual guidance)와 같은 조연적 금융감독방식이나 규제면제(waiver)와 같은 특례적용방식이 그것이다. 특히, 영국의 개별지도(individual guidance)는 “테스트 수행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테스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sup>318)</sup>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개별지도 제도는 우리나라의 유권해석과 그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많으며,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제도<sup>319)</sup>, 행정지도 등 우리 금융당국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감독방식들의 보충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고시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과 국무총리훈령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에서도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와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318) 구자현 외, 앞의 보고서, 140면.

319) 비조치의견서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서는 기존의 다양한 논의들을 통하여 행정법상 ‘확약’이라는 해석과 ‘행정지도’라는 해석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김진철, “비공식적 행정행위로서의 No-action Letter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2008, 322~323면; 한국행정연구원, 『사전심사청구제도의 확대적용 방안: No-Action Letters를 중심으로』, 2007.6., 5면; 김병덕·이순호·윤혜선, 『국내 금융환경을 감안한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16.298~127면 등), 본 보고서에서는 비조치의견서의 법적 성격 자체에 대한 논의 보다는 보충적 금융감독조직으로서의 금융감독 방식의 활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로 한다.

다만, 이러한 금융감독조치는 기존의 금융법제나 상위법규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영국이나 호주, 말레이시아 등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샌드박스 내에서 테스트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에 대해 은행이 비즈니스모델이나 솔루션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또는 핀테크 회사에 대해 지침 및 조언을 제공하는 “비공식조정”(Informal Steer)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금융당국 외에도 직접적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은행의 “비공식조정”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멘토링이나 민간협의체 차원의 지원과 유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에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미도입 금융감독 조치의 제도 도입방안

### (1) 한정 인가

“한정 인가”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법규상의 인가요건 중에서 규제테스트베드 내에서의 솔루션 테스트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한정인가(tailored authorization)를 부여하여 규제테스트베드 범위 내에서 해당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선택적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 핀테크 관련 한정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 사례를 들 수 있겠다. 즉,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서만 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사례에서 부관 형식으로 영업방식에 대한 제한을 가한 바 있다.

향후, 금융규제안전공간 제도의 운용 발전 현황에 따라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영업범위 관련 제한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동안 인가를 해주는 한시인가의 형태 도입도 기대된다.

## (2) 특례적용

특례 적용은 해당 업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면제(waiver) 방식과 달리 특정 금융회사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금융규제를 면제하거나 변경하여 일부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 금융당국은 특례적용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국제금융 관련 법규 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 (3) 규제면제

규제 면제는 영국과 같이 FCA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해당기업이 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CA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 특정 규제를 유예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규제 면제(waiver) 제도를 의미한다. 특정기업의 특정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혁신성을 가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춘 모든 업체에게 관련 규제면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금융 법체계가 Negative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특정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법률 수권 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 (4) 인허가면제

인허가 면제는 일부 금융서비스나 상품판매 등에 대하여 현행 법규상 적용되는 인허가 없이 서비스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이러한 인허가면제제도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3. 특별법 제정 입법례

핀테크기술의 발전에 따라 금융규제테스트베드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입법례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상 임시허가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싶으나 현재 금융 관련 규제와 유사하게 매우 복잡한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거나 그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나 상품의 판매의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렵게 된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였음에도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존의 규제로 인하여 사업 출시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임시허가 제도이다.<sup>320)</sup> 이러한 임시허가 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및 면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 자체로 규제테스트 베드 제도의 특별법 제정에 중요한 입법적 참고가 될 수 있다.

동법에 대한 각 규정별 논의는 앞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다음 [표 67]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중에서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수행을 위하여 차용이 필요한 규정들의 조문 제목과 주요 내용만을 정리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표 67]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수행에 관한 입법례 규정

도입 취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사점
신기술 분야 성장	<p><b>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b></p> <p>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사회전반에 정보통신</p>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분야 신기술과

320) 박관훈, ‘핀테크 관련 국내법제의 현황과 과제’, “강원법학” 제49권, 2016. 10, 272면.

도입 취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사점
동력 확보	<p>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lt;개정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과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li> <li>2.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li> <li>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 솔루션 등에 대한 정의 및 특례 적용의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p>
	<p><b>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b></p> <p>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거나 허가등의 필요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li> <li>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li> </ol>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여부</p>	<p>기존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공백의 경우, 또는 기존에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과도한 중첩적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에 대하여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하거나, 간소화된 절차를 통하여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할 필요성</p>

도입 취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사점
	<p>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해당 신청인은 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p> <p>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특별 인가	<p><b>제37조(임시허가)</b></p> <p>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속처리를 신청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같은 조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거나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간주된 경우,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p>	특별인가 제도의 도입 및 규제유예, 규제면제 등의 다양한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 필요

도입 취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사점
	<p>는 경우에는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해당 이용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성격이나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⑥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⑦ 임시허가의 영향을 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도입 취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사점
	<p>⑧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b></p> <p>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li> <li>2.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li> <li>3. 제37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특별인가의 취소에 관한 요건 명확화(조건부 인가로서의 성격)</p>

#### 4.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참가기업 선정요건 구체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시 업체에 대한 준비성 판단요건에 대한 척도 방식의 설문에서는 기술력 요건(83%)과 운영능력 요건(8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인력 요건도 68%으로 집계되었다. 상대적으로 자본금 규모 요건은 54%, 업력 요건은 42% 순으로 조사되어 혁신성을 가장 주요한 요소로 하는 핀테크기업들의 경우 기술력과 운영능력, 개발인력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정요건 마련에는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 요건으로 (i) 목적 적합성과 ii) 진정한 혁신, iii) 고객효용, iv) 샌드박스 참가에 대한 테스트 필요성, v) 적용대상 규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리스크 최소화 노력 등)<sup>321)</sup>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진정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의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한다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기업의 선정시에 고려하여야 할 요건의 중요성 순서는 ‘[소비자 혜택] 금융소비자에게 어떠한 직간접적 수혜를 제공하는지’(56%), ‘[서비스 혁신성] 기존의 상용화된 서비스에 비해 충분히 혁신성을 지니는지’(48%), ‘[테스트 필요성] 새로운 금융상품을 종전의 규제 틀에서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지’(33%), ‘[준비성] 신청기업이 실제 상황에서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25%), ‘[금융비용 절감] 전체적인 금융 비용이 절감되는지’(21%), ‘[영업지역] 자국 금융시장 내에서 주된 활동을 목표로 하는지’(7%)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5.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이번 연구의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정량조사 결과 및 정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제테스트베드 참여 업체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분쟁처리절차의 안내 등이 소비자보호의 가장 주요한 이슈로서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은 영국과 호주의 사례와 이번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① 일정범위의 고객에 대하여서만 위험성을 고지한 후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②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보호 조치 및 보상 규정을 둘 수 있으며, ③ 별도의 민원처리 절차(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통한 분쟁해결, ④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 조치와 이를 위한 자력의 구비, ⑤ 고유의 분쟁해결제도 구축 여부, ⑥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제도에 대한 협력기제 구축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21) 금융투자협회, “英 Regulatory Sandbox의 도입 현황 및 시사점”, 8면.

그리고, 호주의 경우 최소보상액이 소송가액 기준 총액이 1백만 달러(8억6천만원 상당) 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테스트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run off cover)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보상제도와 관련한 세부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더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테스트베드 사업임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참여금융소비자가 중간에 탈퇴하거나 솔루션 운영의 종료시에 금융소비자의 자산이 공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사전적 요건으로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서 업체 내에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해당 솔루션의 운영 체계에 업체 내부적으로 자율적 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제적합성 판단 업무와 기술운용 및 개발 인력 간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다.

## 6. 금융감독 시범사업 관련 제도 개선의 환류 체계

이번 연구의 수요조사에서는 핀테크기술기업 등의 규제테스트베드 참여주체와 금융당국 간 의사소통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진행모니터링 기제와 제도 시행 담당부서의 감독 기능 강화를 통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테스트베드 참가기간 종료 후, 평가결과가 좋은 참여업체에 대하여서는 규제유예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참여기업이 향후 관련 규제의 제·개정 절차에 일정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28.4%)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참여업체의 테스트기간 동안의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서는 테스트베드 평가 항목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사업의 혁신

성이나 금융소비자의 편익(각 84%)과 사업운영의 투명성(85%), 금융시장 발전 등 국민 경제 기여도(78%), 자본의 적정성(42%), 인적·물적 자원 투입 정도(39%) 순서로 집계된 조사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정/운영/평가/제도개선에 필요한 각각의 독립적·객관적인 심의·의결 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투명한 제도 운영을 통하여 각 과정별 판단의 독립성을 해당 기구에 부여하고, 관련 솔루션의 테스트베드 사안별로 참가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와 금융감독방식 적용상의 규제상 한계 및 법제 개정 사항을 객관적으로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기존 법률의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의 방식으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앞서 제시한 ① 신기술 발전의 동력 확보나 ② 특별인가, 규제유예(기간 연장 포함), 규제면제, 개별특례적용 등 각각의 특례 규정 도입 외에도 각 운용 절차에 필요한 ③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④ 각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조직의 구성 방안, 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⑥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 ⑦ 손실 발생에 대한 소비자보호 조치로서의 배상보험 가입 의무, ⑧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기업과 참가소비자, 전문가 등이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입법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다양한 규정의 채택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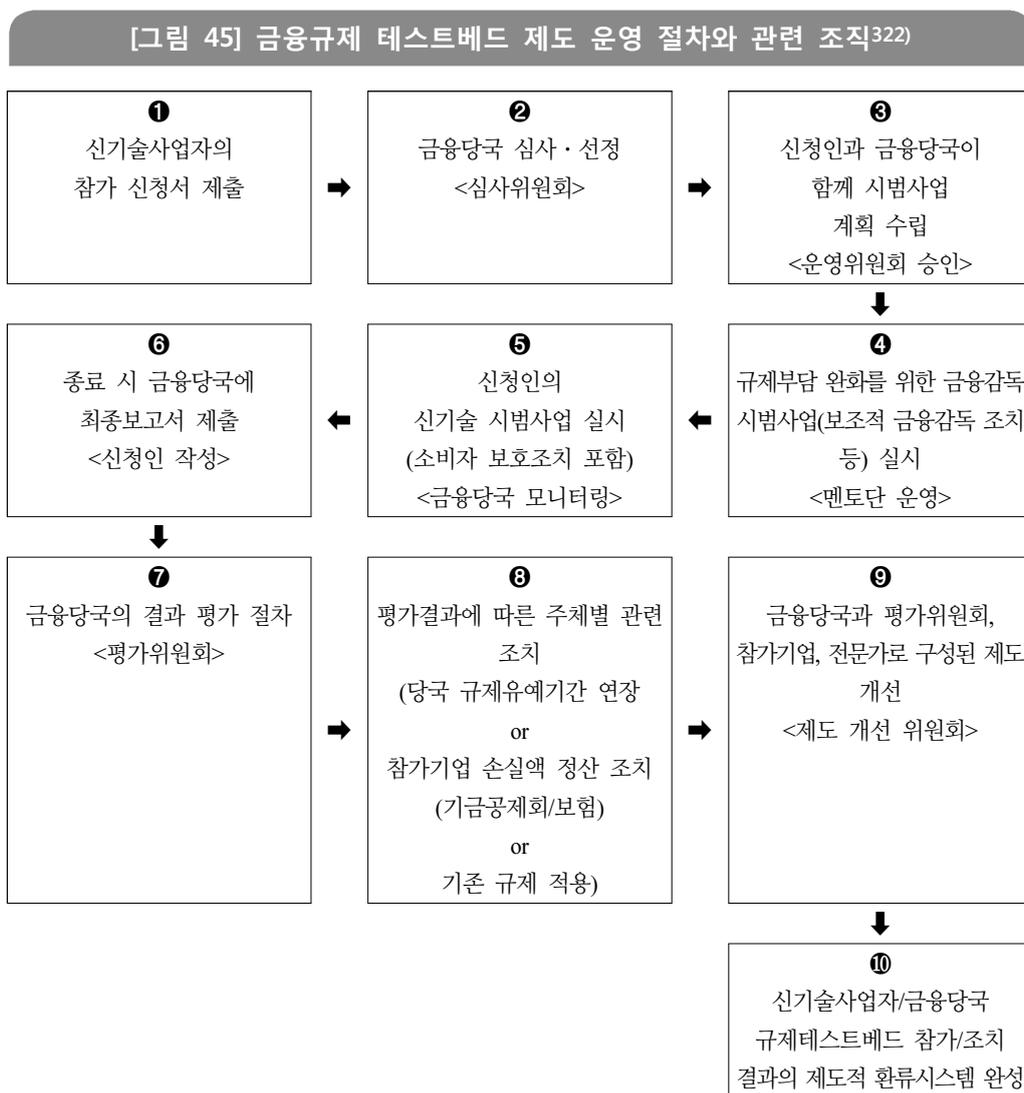
다음의 [표 68]는 제3장에서 제시한 각 단계별 제도 운용 절차 구상안을 해외사례 분석과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관련 조직과 기대효과 등을 추가하여 발전시킨 내용이다. 즉, 각 단계별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각 단계별 심사/평가에 따른 승인 및 감독 등의 절차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적 노력이 절실하다.

[표 68]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단계별 운용 절차에 따른 기대효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단계별 운용 절차 및 제도 환류체계의 완성			
단계	수행 내용	독립성/ 전문성 확보	기대 효과
1	신기술사업자의 참가 신청서 제출		핀테크산업 발전
2	금융당국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참가기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를 통하여 객관성 확보
3	신청인과 금융당국이 함께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신기술기업과 금융당국이 솔루션 구현에 따른 위 험성을 공유할 수 있으며, 테스트종료 후 출구전략 및 규제개선 입법안 마련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이 실질적으로 수렴
	[운영위원회]의 승인	[운영위원회]	객관적/전문적 평가를 통하여 금융당국의 책임은 완 화되고, 신청기업은 공정한 평가 기회를 가지게 됨
4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감독시범사업 (보조적 금융감독 조치 등) 실시	[멘토단] 운영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과정에서 각 핀테크기술별로 적합한 금융감독조치 등에 대한 멘토단의 자문의 견 수렴으로 참가기업의 규제부담 완화
5	신청인의 신기술 시범사업 실시(소비자 보호조치 포함) -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시범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금융당국과의 지속적인 교감을 이룸으로써 금융당국의 모니터 링이 ‘규제’로서가 아니라 ‘안전’과 ‘규제개선 대 상 검토’의 측면에서 기능. 분쟁해결제도는 호주 와 같이 IDR과 EDR 방식을 함께 고려.
6	종료시 금융당국에 최종보고서 제출		평가기준을 반영한 최종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과 표준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단계별 운용 절차 및 제도 환류체계의 완성				
단계	수행 내용		독립성/ 전문성 확보	기대 효과
7	금융당국의 결과 평가 절차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후속조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
8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감독 당국의 관련 조치	규제 유예 기간 연장		규제유예 제도의 도입시 규제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요건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참가기업 입장에서는 테스트베드 적극 참가의 유인책으로 작용 가능
		참가 기업 손실액 정산 조치	[기금] or [공제회] or [배상책임 보험]	소비자안전조치의 일환으로 공제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참가기업으로 전가되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나아가, 산업발전 관련 자원들을 활용하여 정책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참가기업의 손실에 대한 일정 금액 보조도 고려할 수 있음(요건 충족시)
		기준 규제 적용		테스트베드에서 안정적인 성공을 거둔 경우 현행 법률상의 규제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규제테스트베드 졸업 기업에게는 정부 R&D 사업 참여에 대한 일정한 우대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 참가 유도 가능
9	금융당국과 평가위원회, 참가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 개선		[제도 개선 위원회]	금융당국과 평가위원회, 참가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테스트베드 참가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입법안을 수립
10	신기술사업자/금융 당국 간 제도적 환류시스템 완성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단]	선정과정부터 평가, 제도개선 단계까지 신청기업과 금융당국의 꾸준한 교감을 확보하고, 전문성/객관성을 갖춘 각 운영조직의 멘토링과 평가를 받음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

이러한 제도환류 체계를 구축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운영절차와 해당 절차별 운영기구는 다음 [그림 45]과 같다.



322) 본 체계도는 2016년의 KDI 보고서(구자현 외, 『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220면 이하의 운영 흐름도를 기초로, 2017년 한국법제연구원과 K리서치에서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방식으로 수행한 본 연구의 수요조사를 거쳐 필자가 테스트베드 참가기업에 대한 평가 후속조치 및 관련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환류체계 단계 등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6장 결론



## 제6장

## 결론

이번 연구는 본 연구자가 2015년 작성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수시과제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과정에서 밝힌 ‘원칙중심의 규제’ 등의 규제방식으로서의 전환이 우리나라 금융법 체계나 금융감독 체계 내에서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영국에서 “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보면서 구상한 ‘핀테크분야 규제특례’의 일환으로 구상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Positive 방식의 규제체계나 사전규제 방식의 입법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기 위한 법전문가들의 노력도 계속 이어져 왔다. 특히, 2016년부터는 일명 규제프리존으로 불리는 경제특구구성 시범지역 개념의 “규제특례지역”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각 특구법에 대하여서도 재조명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미국의 No Action Letter와 같이 행정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일부 감독방식의 적용방식에서 나아가 영국의 Regulatory Sandbox 제도와 같이 특정 산업분야에 수범객체의 자격요건별로 다양한 방식의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체계에 대하여서는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대부분의 법률이 사전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방식의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계속해서 법리적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한계라는 결과는 비조치의견서나 규제체계 개선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바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4차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하고 Negative 규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관련 법률이 개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물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입법 작업에 피로감을 더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영국이 운용하고 있는 Regulatory Sandbox 제도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그 금융감독상의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감독’상의 책임에만 몰두하기 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선순환적·자율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한 목적과 정당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 관련 모든 법률의 입법 목적에서 동일하게 확보되고 있다.

#### 은행법

제 1 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험업법

제 1 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

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과 같이 정보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이 넘치는 현실 속에서, 기존의 금융법체계만을 답습하거나 관성화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각 금융 관련 법률이 추구하고 있는 ‘국민경제 발전’이나 ‘금융시장 안정’, ‘건전한 육성’ 등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자면, 최근 우리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는 행정청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성실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금융당국 주도의 입법론적 논의를 지속함으로써 현행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의 법적 근거 규정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 검토 대상에는 각 제도 운용 단계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객관적이면서도 상호교감이 가능한 의견수렴 체계를 포함하도록 하여,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 참고문헌

### I. 국내문헌

- 김인식, “아시아 각국 핀테크 규제안전공간 운영의 내용과 그 시사점”, 『금융규제테스트 베드 및 보조적 금융감독 조치에 관한 법제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제2차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7.10.
- 노형식, “규제 안전공간 도입 해외사례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연구원, 2016.12
- 구자현 외, 『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KDI, 2016.9.
- 김병덕, “규제 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의 글로벌 도입 추세와 시사점”, 금융연구원, 2016.7
- 김병덕 · 이순호 · 윤혜선, 『국내 금융환경을 감안한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16.2.
- 김은집 · 허은진, “비조치의견서제도에 대한 소고”, 『BFA』 제75호, 2016.1.
- 금융투자협회, “英 Regulatory Sandbox의 도입 현황 및 시사점”, 2016.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6.
- 김병덕, “영국 금융감독청의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 설치 및 시사점”, 금융연구원, 2015.12.
- 김명아,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11.30.

- 이성복,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관련 주요쟁점”, 『자본시장 Weekly』(2015-27호), 자본시장연구원, 2015.07.14.
- 김종현, “핀테크가 국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KRX MARKET』(2015 여름호), 한국거래소, 2015.07.
- 서영미, “국내외 P2P대출중개업 관련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금융투자협회, 2015.08.05.
- 민병길, “핀테크 동향과 시사점”, 경기연구원, 2015.02.11.
- 박혜진 · 이성빈 · 황석규, “핀테크, 변화의 서막인가? 착잔 속의 태풍인가?”, 『Industry Issue Report』, 교보증권, 2015.02.04.
- 김종우 · 박진형 · 신근호 · 이선애 · 최광현, “은행과 인터넷 애널이 함께 본 핀테크”, 『Industry Issue』, 2015.01.21.
- 조영기,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기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09.30.
- 김병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의 법률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03.
- 구본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금융연구원, 2008.08.
- 노형식,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따른 과제와 전망”, 『월간 금융』, 전국은행연합회, 2008.08.
- 김보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과 과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3호), 금융결제원, 2008.07.
- 김진철, “비공식적 행정행위로서의 No-action Letter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2008.
- 조영기,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기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09.30.

한국행정연구원, 『사전심사청구제도의 확대적용 방안: No-Action Letters를 중심으로』, 2007.6.

## II. 국외문헌

ASIC, “Further measures to facilitate 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Consultation Paper 260』, 2016.6.

\* ASIC :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ASIC, (RG257)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August 2017.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Nizam Ismail, “Regulatory Sandboxes for FinTech Startups - Not just Child's Play”, linkedin, 2015.9.21.

FCA, “A Review of the regulatory regime for crowdfunding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sable securities by other medi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eb. 2015.

FCA, 『Regulatory Sandbox』, ibid

\* FCA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U.K.)

FCA, “FG 15/4: Social Media and Customer Communications, -The FCA’s supervisory approach to financial promotions in social media”, FCA, March 2015.

Julia Black, “Forms and Paradoxes of Principles Based Regulation”, 『LSE Law, Society and Economy Working PaPers 13/2008』,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aw Department, 2008.

### III. 참고자료

#### - 보도자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 현황 및 1차 권고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10.11.

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출범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  
안 마련”, 2017. 3. 2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정  
착을 위한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4차 산업혁명 대응 금융분야  
T/F 제1차 회의 안건)), 2017.3.20.

금융위원회,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 2017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  
회 전체회의, 2017.1.18.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 추진 방향』, 2016.3.8.

금융위원회,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 2015.5.18.

금융위원회,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5.6.

금융위원회,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 결과-, 2015.1.27.

기획재정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  
조치 계획”, 2014.03.27.

#### - 기 사

한국경제, “금융혁신 신상품 시험하는 ‘규제 샌드박스’ 하반기 도입, 한국경제 2016년  
3월 8일자 기사([http://news.donus.com/  
article/view/economy/20160308/AKR20160308183300002](http://news.donus.com/article/view/economy/20160308/AKR20160308183300002))

- 이투데이, “금감원, 규제프리존 · 외국인통합계좌 도입한다”, etoday 2016년 2월 29일자  
기사(<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96551>)
- 머니투데이 2015.1.2. “반성한 금융당국, 핀테크 족쇄 풀 수 있을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22500242690089&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 아시아경제 2015.2.26. “[핀테크골든타임] ‘금융기술 대못’부터 빼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22611011859844>)
- 이데일리 2015.3.6. “[IFC 2015 상하이]진웅섭 금감원장 “핀테크 산업 적극적으로 지원””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2355046609300696&DCD=A00102&OutLnkChk=Y>)
- 세계일보 2015.3.17. “[SEGYE\_핀테크세미나: 협업] “핀테크 콘트롤타워 운영해야””  
(<http://www.segye.com/newsView/20150317003553>)
- 아시아투데이 2015.5.14. “[핀테크가 미래다] 국내 금융시장에도 ‘핀테크 열풍’ 상륙”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513010007114>)
- 프레스리안 2015.11.9. “한국의 핀테크 산업, 이대로는 망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인  
프라와 생태계가 조성돼 있지 않은 핀테크 산업”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009&ref=nav\\_search](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009&ref=nav_search))
- 전자신문 2016.4.4. “[좌담회]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제와 발전방안”  
(<http://www.etnews.com/20160404000240>)
- 중앙시사매거진 2016.11.23. “비트코인 시대, 어떻게 준비할까”  
(<http://jmagazine.joins.com/forbes/view/314361>)
- CCTV뉴스 2016.12.13. “핀테크 시장 활성화, ‘규제 · 보안’ 난제…타개책은?”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36>)

- 이코노미뉴스 2017.1.9. “내 손 안의 금융세상, 인터넷전문은행이 불러올 미래”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8624>)
- 데일리한국 2017.5.25.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풀어야 핀테크 발전”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705/dh20170525155820138100.htm>)
- 머니투데이 2017.6.1. “신산업 기업 2곳 중 1곳 "규제 때문에 사업차질 경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0110491878007&outlink=1&ref=htp%3A%2F%2Fsearch.naver.com>)
- 한국경제 2017.06.01. “신산업 분야 기업 절반 “규제로 사업 차질””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0157371?nv=o>)
- 동아일보 2017.06.08. “비트코인, 신산업-공공성 측면서 논의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70608/84762514/1>)
- 세계일보 2017.06.25. “개인 해외송금 시장 둘러싼 은행과 핀테크업체간 ‘기울어진 운  
동장’ 논란”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24000841>)
- 아주경제 2017.06.26. “가상화폐 시장 커가는데…손 놓고 있는 금융당국”  
(<http://www.ajunews.com/view/20170626134500163>)
- 아이뉴스24 2017.07.03. “가상화폐 가이드라인?...‘광풍’ 부담되는 금융당국”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32681&g\\_menu=022400](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32681&g_menu=022400))
- 한국일보 2017.07.04. “중국은 노점상도 핀테크 쓰는데”  
(<http://www.hankookilbo.com/v/3af8b1ddc5b14a98804c8f14681ee032>)

전자신문 2017.07.05. “핀테크업체, 백만원 이상 해외송금 시 이름·계좌 정보제공...강화된 제도에 업계 당혹”

(<http://www.etnews.com/20170705000196>)

중도일보 2017.10.10. “특허청 “핀테크 기술로 각자 내기가 대세””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1009010001154>)

파이낸셜뉴스 2017.10.15. “日 핀테크 위해 새판 짬다”

(<http://www.fnnews.com/news/201710151731550868>)

NEWS1뉴스 2015.2.9. “사금융 키우는 핀테크...P2P대출 ‘8퍼센트’의 딜레마”

(<http://news1.kr/articles/?2085079>)

이투데이 2015.6.11. “P2P대출 대부업 취급 ... 업계 “새로운 업종으로 분류해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41643>)

디지털데일리 2015.7.3. “[스페셜 리포트] 클라우드 펀딩, ‘핀테크 관심주’로 뜬다”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32100>)

파이낸셜뉴스 2015.7.8. “P2P대출기업, 대부업 꼬리표에 상장 발목”

(<http://www.fnnews.com/news/201507081806480918>)

이투데이 2015.11.13. “금융研 “P2P대출 규제 도입, 이용자 신뢰 확보로 산업 키울 것””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34154>)

서울경제 2016.6.2. “P2P금융-대부업계 끝내 충돌...핀테크 외치더니 손놓은 당국”

(<http://www.sedaily.com/NewsView/1KXFNJL01G>)

IT조선 2017.3.22.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과도한 P2P 규제는 오히려 핀테크 정신 훼손””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32328>)

- 데일리그리드 2017.06.01. “P2P대출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에 분주해진 업계”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52968>)
- 지디넷코리아 2017.06.11. “P2P대출 1조원 규모로 성장…규제는 역주행”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70609175941&type=det&re=](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70609175941&type=det&re=))
- 중앙일보 2017.07.07. “P2P 투자수익에 세금 27.5%, 복권보다 높다니 …”  
(<http://news.joins.com/article/21736044>)
- 머니투데이 2015.11.18. “국회에 발목잡힌 핀테크”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1809057628550&ref=http%3A%2F%2Fsearch.naver.com>)
- 한국금융신문 2016.11.21. “빅데이터, 법률로 개인정보 보호범위 정해야”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66611>)
- 테크M 2017.3.26. “논란 여전한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열쇠 될까?”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3804](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3804))
- 녹색성장 2017.06.05. “[4차산업 시대 한국의 현주소④] 규제에 꽂 막힌 ‘핀테크’…“제대로 벤치마킹부터 해야””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9>)
- 한국금융신문 2017.06.12. “핀테크 혁신 위한 규제 환경 마련 필요”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182735>)
- 데일리안 2017.06.14. “핀테크 경쟁력 향상 해법은?...한경연 “네거티브 규제전환 필수””  
(<http://www.dailian.co.kr/news/view/639835>)
- 서울신문 2017.07.05. “금융 활성화 3박자… 풀고 막고 넓혀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05021008&wlog\\_tag3=daum](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05021008&wlog_tag3=daum))

서울경제 2017.07.11.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둘 다 잡으려면 규제 완화·기술 투자해야”

(<http://www.sedaily.com/NewsView/1OIFNDSMGY>)

연합뉴스 2017.08.04. G20 “핀테크 확산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대비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4/0200000000AKR20170804087700002.HTML?input=1195m>)

디지털타임스 2017.09.19. “핀테크 산업, 고객 경험 최우선 기존 금융기관과 협업해야 주목”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92002100458033002&ref=naver](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92002100458033002&ref=naver))

세계일보 2017.09.20. “과도한 금융규제가 핀테크 성장 걸림돌”

(<http://www.segye.com/newsView/20170920004668>)

연합인포맥스 2017.10.12. “규제에 쓰러지는 中 핀테크 기업…자금조달 반토막·수익 악화”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5674>)

조선비즈 2017.10.12. “핀테크 산업 꽃피운다…“당국 인허가 없이 금융서비스 실험 가능””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1/2017101101809.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1/2017101101809.html))

국민일보 2017.10.14. “디지털금융 강조했지만…한국 핀테크 이용률 32%에 그쳐, 20개국 중 11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22176&code=61141111&cp=nv>)

전자뉴스 etnews 2017.10.15. “[사설]중국의 핀테크 시장 질주 바라만 볼 것인가”

(<http://www.etnews.com/20171015000056>)

아시아경제 2015.1.26. “이학상 대표 “다음카카오·티몬 손잡고 보험 핀테크 판 열겠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261032525207>)

KINEWS 2015.2.9. “규제에 막힌 핀테크... 더 큰 문제는 ‘흠어진 규제’”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885>)

MIDAS 2015년 2월호 “핀테크, 세계 금융판도 뒤흔든다②”

([http://www.yonhapmidas.com/article/150207214742\\_980428](http://www.yonhapmidas.com/article/150207214742_980428))

동아일보 2015.6.10. “[사설]‘핀테크 위해 銀産분리 완화’ 역설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http://news.donga.com/3/all/20150610/71758568/1>)

한국경제 2016.4.5. “벤처·테스코은행 나왔는데...한국 인터넷은행은 ‘33년 규제’에 발목”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40591891?nv=o>)

한국경제 2017.4.11. “은산분리 규제 속에선 글로벌 금융혁명 선도 못해”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41119111?nv=o>)

서울경제 2017.5.30. “금리 경쟁력 앞세워 3040 고객 유치 성공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혁신’ 신호탄 쏘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G4GFED3B>)

내일신문 2017.5.4. “[금융시장에 로보어드바이저 열풍 | ② 한 단계 도약하는 국내 RA (로보어드바이저)시장] 사람없이 로봇이 투자자문·자산관리 ... 5월중 상용화”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6402](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6402))

데일리한국 2017.07.27. “인터넷은행 성장 여부 ... ‘은산분리 완화’에 달렸다”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707/dh20170727152734138100.htm>)

시사저널이코노미 2017.09.21. “핀테크 투자 물리는 한국 등 동아시아가 미래금융 주도”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4206>)

조세금융신문 2017.10.09. “급가속 하는 핀테크...금융-ICT 산업 간 M&A 6년간 두 배 증가”(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9002)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국  
회



## 부 록. 설문지

### 금융감독 시범사업 관련 수요 및 현황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금융감독 시범사업 관련 수요 및 현황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설계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관련 법제 개선사항 도출 및 연구의 용도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진지한 의견은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관련 법제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정보 및 모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활용되며,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한국법제연구원

주관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수행기관	케이리서치앤컨설팅
주관담당자	김명아 연구위원 TEL : 044-861-0445 E-mail : kma@klri.re.kr	조사담당자	이숙영 과장 TEL : 02-780-9972 E-mail : lovemood777@naver.com

\* 해당항목에 “v”자 표시, 또는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소속			
연락처				직위			
구분	01.전문가	02.업계	03.소비자				
세부업종 (업계만 응답)	01.은행	02.인터넷전문은행	03.저축은행	04.대부업자			
	05.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06.금융투자업자	07.신탁업자			
	08.보험사	09.핀테크 업체	10.기타 ( )				

### 응답시 유의 사항

1.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응답해 주시고, 질문 앞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2.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보기번호 중 한 개만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시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응답이 없을 경우 ‘기타’ 를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설문 배경

IT·융합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 금융 서비스에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intech는 지급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투자, 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안착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의 정합성 충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제 제도를 새로운 금융서비스 부문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규제 제도를 변경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충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규제 제도와 금융감독 적용방식을 변경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을 2017년 3월 20일 발표하였습니다.

본 설문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관계자 입법수요 및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을 파악함에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인지여부] 귀하는 위에서 설명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상세히 알고 있다.
②	개념과 필요성 정도만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은 있다.
④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른다.
⑤	관심 없다.

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 찬반] 귀하는 위에서 설명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에 대해 찬성 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정책 중 아래의 보기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마다 표시해 주세요. (보기 설명은 설문지 용례집 참조)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활용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활용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다
①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1	2	3	4	5
②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1	2	3	4	5
③ 지정대리인 자격부여	1	2	3	4	5

4. [보충적 금융감독조치 활용가능성]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보충적 금융감독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의 보충적 금융감독조치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마다 표시해 주세요.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활용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활용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다
① 행정지도	1	2	3	4	5
② 유권해석	1	2	3	4	5

5. [미도입 제도 찬반] 현재 활용되고 있는“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이외에도 현행 금융업법 체계와 맞지 않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 당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후 추진해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도입 제도의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각 항목마다 표시해 주세요.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① 한정인가: 전체 인가 요건 중 테스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만 충족하면 한 시인가를 부여하여 영업수행	1	2	3	4	5
② 특례적용: 특정 금융회사에 대해 신규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금융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변경 적용	1	2	3	4	5
③ 규제 면제: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혁신의 경우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자에게 관련 규제 적용 면제 가능	1	2	3	4	5
④ 인허가 면제: 일부 금융상품 관련 자문 서비스 및 투자 중계서비스에 대해 정식인가 없이 서비스테스트 허용	1	2	3	4	5



9. [테스트베드 운영상 문제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를 골라주세요.

①	위험관리 계획
②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 요건의 합리성
③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 방식의 공정성
④	자산손실에 대한 보상 장치
⑤	금융소비자 민원 처리
⑥	개인정보보호
⑦	기타( )

10.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 애로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위 세 가지 정책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애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를 골라주세요.

①	기존의 금융업자들이 테스트베드 업체에 대한 협업 없이는 테스트 자체가 어려움
②	시행 업체가 특정 기업에 한정되어 업역 전반에 대한 서비스 혁신에 기여하지 못함
③	테스트베드 종료 후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업역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 높음
④	테스트베드 참가 기업의 기술 유출 및 혁신성 상실 우려
⑤	기타( )

11. [법령 개정 및 제정 찬반] 현재 금융위원회가 도입중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현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외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금융업법 체계에 부합하는 법령 개정 및 특별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한다.
②	특별법을 제정한다.
③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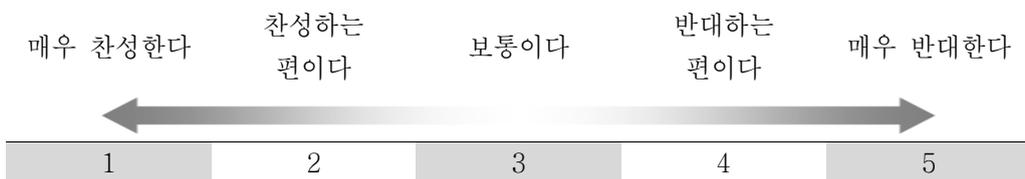
12. [테스트베드 종료시 문제 대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간탈퇴 및 종료 후 환급 계획
②	금융당국과의 의사소통 방안
③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모니터링
④	참여기업 평가 및 테스트베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⑤	기타( )

13. [테스트베드 종료시 업체의 우려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참가 종료 후 참여기업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를 골라주세요.

①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가 유출될 우려
②	기존 금융회사와의 위탁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③	테스트베드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였을 때 혁신성을 잃어버릴 우려
④	테스트베드 후 후발 기업들의 무임승차 관련
⑤	시범사업 종료 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시 발생하는 손실
⑥	기타( )

14.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찬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참여할 경우, 참여 기업의 비용문제 및 후발주자의 무임승차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지요?





16. [신 금융서비스 활성화 애로점]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핀테크 등 온라인 기반 금융 서비스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를 골라주세요.

①	신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
②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에 적용받는 규제가 여러 법에 중첩되어 있다
③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가 매우 적다
④	신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
⑤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외의 규제가 너무 많다
⑥	기타( )

17. [금융규제 개선 관련 자유의견]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설문 목적과 답례품제공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수집목적 달성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는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답례품을 증정할 수 없습니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보고 2017-10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

2017년 10월 29일 印刷

2017년 10월 31일 發行

發行人 이 익 현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

값 11,000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795-2 93360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